

제25권 1호 2016

통일정책연구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 통일한국의 정부관료체제 구축방안

ISSN 1229-6112

제25권 1호 2016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통일정책연구

본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연 2회 발간됩니다.

본서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행인 : 최진욱
편집인 : 김진하
등록일 : 1992년 8월 19일
등록번호 : 서울 사02048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일 : 2016년 6월 30일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TEL : 02)2023-8209, 2023-8000
FAX : 02)2023-8298
Homepage : <http://www.kinu.or.kr>
E-mail : kinups@kinu.or.kr

© 통일연구원 2016

편집위원장 : 김진하

편집위원 : 김수암
박영자
박주화
이기태
이상신
조정아
홍제환 (가나다 순)

외부편집위원 : 고성준 (제주대학교)
김영재 (청주대학교)
김용호 (인하대학교)
김재기 (전남대학교)
김태일 (영남대학교)
김호섭 (중앙대학교)

편집간사 : 박청문

가격 : 10,000원
ISSN 1229-6112

파본은 바뀐 드립니다.

■ 기획논문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 김재천	1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 김흥규	25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 문성묵	59

■ 일반논문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시열·최나빈	87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 이자영·김현아	117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 송철호·강문영·신용태	145
통일한국의 정부관료체제 구축방안 / 이준호·양현모	179



■ Special Articles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and the End of Strategic Patience:

Tracing the US Policy Change toward the North Korea *Jae-Chun Kim*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and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HAAD Debates

Heung-Kyu Kim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Its Foreign Policy

Seong-Mook Moon

■ General Articles

A Study on Measures to Secure Bargaining Power for Balanced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Yeol Kim and Na-Bin Choi

The Effect of Military's Psychological Factors on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Refugee

Ja-Young Lee & Hyun-Ah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Smartphone Uti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Chul-Ho Song, Moon-Young Kang and Yong-Tae Shin

A Study of Establishing the Government's Bureaucratic System of a Reunified Korea

Jun-Ho Lee and Hyun-Mo Yang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김 재 천*

- | | |
|--------------------------------|---------------------------------|
| I. 서론 | IV. 미중관계와 미국의 대북정책 |
| II. 전략적 인내 노선에서 선화:
두 갈래 흐름 | V. 미국관 병행론의 미래와 대북제재의
구조적 한계 |
| III. 미국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의 미래 | VI. 정책적 함의 |

국문요약

4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알려진 미국의 소극적 대북한 정책에는 완전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략적 인내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방지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미국 내 목소리는 크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북한정권의 붕괴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지는 기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을 평화협정 논의의 '선조건(precondition)'에서 논의의 '일부(part)'로 재포장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지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경쟁하는

강대국들은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전략이익의 균형(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이 유지되어온 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이익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예방이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 고려사항이다. 미중관계 관리를 고려해야 하는 미국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처리 방안을 매개로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 핵실험, 미국 대한반도 정책, 미중관계, 평화협정, 대북제재

* 서강대학교 교수

I. 서론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2월 29일 ‘윤달합의(Leap Day Agreement)’로 알려진 북미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좌초된 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통칭되는 소극적 대북 정책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이어진 2월 7일 탄도미사일 실험발사로 인해 미국의 조야에서는 북한 문제를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사실상의 무정책으로 방관해 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4차 핵실험 이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상당히 고도화 되었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북한의 핵 억지 능력에 대한 의지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적 인내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가 결여되어 있고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적잖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 ‘비전략적 방기(non-strategic abandonment)’에 가까웠다. 전략적 인내의 무정책으로 일관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해온 인사들도 제기해 왔는데, 일례로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대북특사를 역임한 보스워스(Stephen Bosworth)는 1994년 제네바 핵합의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갈루치(Robert Gallucci) 전 국무부 차관보와 공동으로 기고한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게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시간만 벌게(buy time)’ 해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의 대북대화라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doing nothing)’ 보다는 좋은 정책이며 따라서 대북대화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¹ 본고는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대응에 대한 논의를 개진해 보려고 한다.

II. 전략적 인내 노선에서 선회: 두 갈래 흐름

2016년 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노선에서 완전히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 실전 능력이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¹ *The New York Times*, October 27, 2013.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에서 개진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2월 12일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공조하는 동시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여 3월 3일 유엔 안보리가 역대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대북제재안 2270호를 채택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략적 인내 노선을 선화하여 북한 핵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미국 내 기류는 크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북한정권의 붕괴 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흐름이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주류(mainstream)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평화협정 논의의 선조건(precondition)에서 논의의 일부(a part)로 재포장(repackaging)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우선 불러내자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갈래의 기류가 아주 상반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투트랙(two track)을 형성하며 흘러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재 포장론’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비핵화를 달성해야한다는 주류담론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 첫 번째 흐름: 정권교체 수단으로의 대북제재?

핵·미사일 실험 직후 미국의 조야(朝野)에서는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보다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일례로 로드(Winston Lord)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북한정권 교체의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² 리비어(Evans Revere)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핵·미사일 실험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끝장이 났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미국의 정책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언급했다. 매닝(Robert Manning)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² Chosun.com, March 19, 2016.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롬버그(Alan Romberg) 스티imson 센터(Stimson Center)의 선임연구원, 부시(Richard Bush)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 소장, 문(Katherine Moon)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등도 유사한 주장을 개진했다.³ 어니스트(Josh Earnest)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는데⁴ 결국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과 생존을 위협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켜야만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하기 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는 북한과의 협상이 중간단계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베넷(Bennett) 랜드연구소(Rand Cooperation) 연구원은 “미국 정부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했으며 “미국은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평화협정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우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술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에는 선불리 나서서 안 되고 만약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원한다면 전제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속에 미국은 단독 대북제재에 나섰고, 다자제재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아울러 한국과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 했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고강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제재·사드·한미일 삼각공조는 미국의 대북 강경 압박정책의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두 번째 흐름: 미국판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 등장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대북정책에서 감지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미국판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은 중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미묘한 변화

³ 『연합뉴스』, 2016년 2월 28일.

⁴ *The Washington Post*, March 16, 2016.

⁵ 『연합뉴스』, 2016년 2월 28일.

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정책변화가 발생했다면 그 변화의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판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은 월스트리트저널의 2월 21자 기사로 불거져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월 4차 핵실험 불과 며칠 전에 북한에게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제안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평화협정 논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비핵화를 철회했고 (dropping its longstanding condition),” 비핵화가 “단지 평화협정 논의의 일부분 (simply a part of the talk)”이 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decline)”했기 때문에 양측이 일정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⁶ 월스트리트저널에 문제의 기사가 게재된 다음 날인 2월 22일 커비(John Kirby)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차 핵실험 전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고 해명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비핵화가 “평화협정 논의의 일부(part of any such discussion)”가 되어야 한다고 반응했으나,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반응을 거절했기 때문(North rejected our response)”이다.⁷

커비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오랫동안 강조했던 비핵화[원칙]과 일치한다(consistent with our longstanding focus on denuclearization)”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선 조건으로 제시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커비의 단어 선택(wording)만 놓고 본다면 비핵화가 논의의 ‘선조건(precondition)’에서 ‘일부(part)’로 한 발 후퇴했음을 엿볼 수 있다. 평화협정 논의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구론’이었다. 하지만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평화협정 논의에 관한 입장이 비핵화 ‘입구론’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으로 선회하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2월 26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정확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국무부[커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위한 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⁸ 차는 이러한 변화를 “판세뒤집기(flipping the script)”라고 표현했으며, 현 상황을 미국의 대북정책 “형판(template)이 점진적

⁶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1, 2016.

⁷ *Reuter*, February 22, 2016.

⁸ 『중앙일보』, 2016년 2월 26일.

이지만 상당한 정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케리(John Kerry) 미 국무부 장관이 2월 2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동한 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기자회견에서 케리는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를 협의하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⁹

커비는 3월 3일 “국무장관이 왕이 부장을 만났을 때 말한 것처럼, 일종의 병행 프로세스(parallel process)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다… 병행 논의에는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커비는 “비핵화 문제가 첫 번째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변한 것은 없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커비의 발언에도 비핵화의 진전이 평화협정 논의 개시의 전제조건이라는 이전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이다.¹⁰

미국의 미묘한 입장변화는 비핵화 평화협정 논의뿐만 아니라 사드배치에 있어서도 감지되고 있다. 2월 23일 왕이와의 회담 후 케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다면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¹¹ 케리의 발언 이틀 후인 2월 25일 해리스(Harry Harris) 태평양 사령관(Commander of US Pacific Command)은 하원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를 협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¹²

케리와 해리스의 발언에 의거해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주저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케리와 해리스의 발언과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주한미군 사령관(Commander of Combined Forces Command)이 작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었으므로 사드 한반도 배치

⁹ 『중앙일보』, 2016년 2월 29일. “... it(North Korea) can actually ultimately have a pea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f it will come to the table and negotiate the denuclearization.”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검색일: 2016.4.12.).

¹⁰ 『매일경제』, 2016년 3월 28일. “[W]e haven’t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sort of be some sort of *parallel process* here. But... there has to be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and work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to get there.” <<http://www.state.gov/r/pa/prs/dpb/2016/03/253948.htm>> (검색일: 2016.4.12.).

¹¹ “We are not hungry or anxious or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deploy THAAD... if we can get to denuclearization, there’s no need to deploy THAAD.”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검색일: 2016.4.12.).

¹² “The decision to discuss it is not necessarily a decision to do it, not yet.” <<http://www.defense.gov/News/News-Transcripts/Transcript-View/Article/673426/department-of-defense-press-briefing-by-adm-harris-in-the-pentagon-briefing-room>> (검색일: 2016.4.18.).

는 필수적”이라고 한 발언 사이에는 사뭇 온도차이가 느껴지고, 미국의 입장이 ‘사드 강행론’에서 ‘사드 속도조절론’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되기도 했다.¹³

케리와 해리스의 사드에 관한 언급 이후 한국언론에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평화 체제 논의와 사드배치에 일정 양보를 해준 대가로 중국의 유엔제재 동참을 유도 했다는 ‘미중 빅딜설’과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 소외론’이 불거져 나왔다.¹⁴ 사드가 “한반도의 안보가 아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카드라는 정황”이라는 평가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연상시키는 결탁을 했다는 평가도 등장했다.¹⁵ 물론 블링큰(Tony Blinken) 국무부 부장관이 6차 핵안보정상회의 직 전인 3월 29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한다면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체제의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사드 미중 빅딜설을 무마하려고 했다.¹⁶

블링큰은 아울러 중국에게 사드가 “순전히 방어용(purely defensive)이고 왜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중국은 이러한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에 앞서 3월 11일 리퍼트(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는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비핵화가 1순위라고 했으며, 사드는 협상카드가 아니라며 중국과의 빅딜설을 부인했다.¹⁷ 미국판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 사드 속도조절론, 미중 빅딜설, 한국 소외설 등 일련의 ‘설’이 불거져 나오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¹³ <<http://edition.cnn.com/2016/02/07/asia/us-south-korea-thaad-missile-defense/>> (검색일: 2016.4.18.).

¹⁴ 『동아일보』, 2016년 2월 27일.

¹⁵ 『한국일보』, 2016년 2월 26일.

¹⁶ “We’ve also been very clear with Beijing that…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take these actions and to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 long as it’s not stopped and reversed… we’ve been very, very clear that we will have to do it.”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6/03/30/26/0301000000AEN20160330000251315F.html>> (검색일: 2016.4.20.).

¹⁷ <<http://english.yonhapnews.co.kr/news/2016/03/12/0200000000AEN20160312003600315.html>> (검색일: 2016.4.20.).

Ⅲ. 미국판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의 미래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기는 요원해 보이며 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미국판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은 “아직은 학술적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¹⁸ 대화국면이 도래해 병행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더라도 미국 내 대북 협상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행론은 금방 소멸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소위 ‘뉴욕채널’을 통해 평화협정에 관한 접촉을 계속해 왔던 점, 특히 4차 핵실험 바로 전에도 이러한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점, 강대강(強對強) 국면이 지속되면서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감, 그리고 중국의 병행론과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판 병행론이 만만찮은 동력을 가지고 재부상하여 추진될 수도 있다. 과연 지난 25년간 지속되어 온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의 형편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판 병행론이 등장한 배경과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 미중 외교장관 회담용: 미국이 병행론을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의 단기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병행론을 왕이-케리 회담 전에 고의로 언론에 흘려 회담의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미국은 왕이가 외교장관 회담에서 병행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도 병행론을 이미 북한과 논의한 바가 있음을 선제적으로 중국에 흘림으로써 회담의 분위기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고 회담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 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중국이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변화를 이미 감지했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병행론을 선제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공식화 했다는 해석도 제기되었다.²⁰

유엔제재 중국동참 유인용: 위의 해석과 비슷하나 다소 다른 시각인데, 미국이

¹⁸ 『중앙일보』, 2016년 2월 26일.

¹⁹ 이성현,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 동기와 미중관계에 대한 고찰,” 『세종논평』, 제314호 (2016) 참고.

²⁰ 이종석,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배경·역사·전망·대응방향,” 『정책브리핑』, no. 2016-10 (2016) 참고.

유엔제재안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론을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의 제재참여와 병행론을 연계처리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병행론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중 외교장관회담용이나 중국동참유인용으로 사용했다면, 핵 실험 바로 전에 북한과 접촉을 가진 미국이 비핵화 선조건을 완화하여 평화협정 논의의 일부로 다룰 수 있다고 제안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 보인다.

북한의 쿠바화를 위한 서막?: 이란과의 핵협정,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한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임기 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초석을 놓아 긍정적 레거시를 남기려고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 내에 북한과 괄목할 만한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후임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머(Hammer)와 스테이크(Stake)론: 미국의 대북정책의 흐름이 ‘당근과 채찍’의 틀에서 ‘전략적 인내’의 단계를 지나 이제 ‘해머와 스테이크’론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 분석에 의하면 미국은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사드, 참수작전의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해머로 내리치고, 동시에 비핵화 조건을 완화한 평화협정의 스테이크를 보여 주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병행론의 등장을 반드시 미국의 대북한 압박정책의 약화로만 볼 수 없고, 압박정책과 병행론이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병행론 등장의 배경에는 북핵문제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압박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협상의 틀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평화협정이라는 스테이크를 북한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강력한 대북제재의 유지를 위해 병행론을 줄곧 주장해 온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도 중국만큼 현 강대강 국면이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²¹ 북한과 크게 거래하라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론은 북한이 NPT를 탈퇴해 2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한 2003년에도 난관을 돌파할 방안으로 제기가 되었다. Michael Mochizuki and Mike O'Hanlon, *Crisis on the Korea Peninsula*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2003).

IV. 미중관계와 미국의 대북정책

1. 한반도의 미중 ‘전략이익의 균형(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

미중관계의 경쟁적 측면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대중국 정책의 교두보와 같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역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중간의 ‘전략이익의 균형(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이 유지되어 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들은 전략이익이 침해하게 대립해 있고 전략이익의 균형이 유지되어 온 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비근한 예로 냉전당시 유럽은 미국과 구소련의 전략이익이 가장 팽팽하게 대립했던 지역이었지만 전략이익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 미소 경쟁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유럽을 구소련의 완충지대로 인정했고, 구소련 역시 서유럽을 미국의 완충지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양국이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서로의 완충지대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서로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묵시적인 합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²² 오히려 냉전당시 미소 군사충돌은 전략이익이 침해하게 대립하지도 않고 전략이익의 균형이 부재했던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와 같은 ‘주변부(periphery)’에서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발생했다.²³

냉전당시 유럽을 대상으로 한 미소간의 경쟁이 역설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동북아를 대상으로 한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한반도의 ‘전략이익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중국의 대미정책의 종속변수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역시 미국의 대중정책의 종속변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양강(bipolar)체제’가 국지적 분쟁이 강대국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은 일찍이 신현실주의 이론의 태두 월츠

²² Steve Phillips, *The Cold War: Conflict in Europe and Asia* (Oxford: Heinemann 2001), pp. 4~45.

²³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때 스탈린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미소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치슨(Acheson)’선언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된 정황 그리고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김일성의 도발을 승인했던 것이다. 스탈린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이익을 과소평가했다고도 할 수 있다.

(Kenneth Waltz)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²⁴ 양강구도가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동맹의 임무로 인한 ‘연루(chainganging)’나 ‘책임전가(buckpassing)’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²⁵ 보다 구체적으로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과 스나이더(Jack Snyder)는 제1차 세계대전은 동맹임무의 연루 메커니즘으로 인해 국지전이 강대국의 전면전으로 확전된 경우이고, 제2차 세계대전은 동맹의 책임 전가로 인해 부상하는 위협을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한다.²⁶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로 대표되는 ‘공세적 현실주의’ 학파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의도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로 인해 미중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²⁷ 하지만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시각을 견지하는 현실주의 학자들은 중국의 의도를 ‘방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개진하고 있다.²⁸

분쟁예방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interdependence)의 증가가 가지고 있는 설명력과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상호의존도라는 자유주의 변수가 미중관계를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타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미국의 재균형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balance)나 봉쇄(contain)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정당한 국익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국 견제와 봉쇄만으로는 재균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취득하려고 노력해 왔고, 이로 인해 재균형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당한 국가 이익과 입장을 존중하며 군사, 정치, 경제,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 “다층

²⁴ Kenneth N.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American Academy of Arts & Sciences*, Vol. 93, No. 3 (Summer, 1964), pp. 881~909.

²⁵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veland Print, 2010).

²⁶ Thomas J. Christensen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Spring 1990), pp. 137~168.

²⁷ 공세적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중국부상의 국제안보적 의미를 분석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을 참고. John J. Mearsheimer,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 (2016).

²⁸ 미중관계를 낙관적으로 분석하는 현실주의 시각은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의 다음 논문 에 잘 정리되어 있다. A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Autumn 2005), pp. 24~29. 공세적 현실주의의 시각은 다음을 참고.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Company: Updated Edition, 2014).

적(multi-layered)”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²⁹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보호와 증진이라는 재균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율적(disciplined)이지만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때로는 중국을 ‘길들이려는’ 모습은 보여 왔지만 미중관계를 과도하게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지양해 왔다. 중국에 대해서 무역불공정과 환율조작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의 제1 교역국가와의 경제관계가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것이고 대중정책의 우선순위의 일 것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중국의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 중국의 분쟁에 실질적인 개입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내분쟁으로 인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마찰은 예방하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³⁰ 하지만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북의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정책을 밀어 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케리와 왕이의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영향권(sphere of interest)을 양분하고 한반도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듯 [하고]… 임기 말 강대국간 이익 교환이라는 쉬운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도 ‘전략이익의 균형’ 유지의 관성을 보이는 미중관계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³¹

2. 안정희구 성향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황의 안정적 관리’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도 우선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여 ‘연루의 위험(fear of entrapment)’을 최소화 하고 전략이익 균형을 현상 유지를 선호해 온 측면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 안정희구 성향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후 한국의 대북

²⁹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6031710151143.pdf> (검색일: 2016.4.22.).

³⁰ <<file:///C:/Users/SEC/Downloads/CRS%20Report%20on%20US%20Pol%20toward%20N.K.pdf>> (검색일: 2016.4.01.).

³¹ 이정철, “평화체제의 입구론과 비핵화 팻말론,” (창비주간논평, 2016. 3. 9.) <<http://weekly.changbi.com/?p=6862&cat=5>>.

보복계획을 미국이 만류한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게이츠(Robert Gates) 전 국방장관 회고록 『임무(Duty)』에 의하면 2010년 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이명박 정부가 “공중공격(aircraft)”과 “포격(artillery)”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보복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보복계획(plans of retaliation)”을 말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계획이 “과도하게 공격적(disproportionately aggressive)”이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보복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게이츠 자신을 포함해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Hilary Clinton) 국무장관, 멀린(Michael Mullen) 합장의장까지 모두 발 벗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조지워싱턴 핵항모’를 출격시켜 서해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의 대규모 보복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었고, 대규모 군사보복 원안 대신 연평도 공격을 감행한 북한의 “진지(batteries)”를 포격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절충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역시 북한에게 여러 통로로 상황을 악화 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³² 일찍이 모겐소(Hans Morgenthau)는 『국가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에서 강대국들이 약소국과의 동맹임무로 인해 국지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적극 반대했었다.³³ 게이츠 회고록에 소개된 일화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한반도의 긴장악화를 ‘연루의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악화의 방지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한다면, 현재의 강대국 국면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은 평화협정을 매개로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데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국은 유엔회의 참석차 2월 21일 뉴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북한과의 협상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고 5차 핵실험의 징후를 보일 때도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블링큰 부 장관은 한국의 외교부 제1차관과 일본의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4월 19일 회동하

³² “We were worried the exchanges could escalate dangerously. The president, Clinton, Mullen, and I were all on the phone often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Chinese were also weighing in with the North’s leaders to wind down the situation” Robert M. Gates, *Duty* (New York: Vintage Books, 2014), p. 497.

³³ Louis B. Zimmer, *The Vietnam War Debate: Hans J. Morgenthau and the Attempt to Halt the Drift into Disaster* (Lexington Books, 2011).

며 한·미·일의 물샷틈없는 공조로 북한을 압박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9일 정레브리핑에서 그동안 대북압박을 강화했지만 북한에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강화를 위한 조치차원에서 사드배치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 블링큰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6월 1일 미국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일단 압박을 지속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반도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상황을 미봉책으로 봉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대북제재 2270호와 미국의 단독제재가 역대 최강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표 1>과 <표 2> 참조).

<표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주요 내용 비교

	2013년 결의 2094호	2016년 결의 2270호
제재대상 지정	- 단체 2개 및 개인 3명 추가	-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경제 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이 포함됨을 명확화
해운항공 운송	- 자국 영토 내 금지 품목 적재 의심 북한 행·발 또는 북한 국민이 중개 및 알선한 화물검색 의무화 - 공해상 선박이 기국 동의에도 검색 거부 시 해당 선박의 자국 입항 거부 의무	- 자국영토 내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 북한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예외: 민생목적) - 북한 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 금지(예외: 민생 목적) -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예외: 비상 착륙)
수출통제	- 특정 금지 품목 8개 추가 - WMD 관련 catch-all 촉구 - 사치품 예시목록 지정 - catch-all 품목 및 급수 품목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금지	-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한 물품 목록 확대 생물·화학무기 수출 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

	2013년 결의 2094호	2016년 결의 2270호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대상자 대리인·하수인 자산 동결 - WMD 기여 가능한 금융서비스, 벌크, 캐시를 포함한 자산 재원 이전 금지 의무화 - WMD 기여 가능한 대북 공적 금융지원 금지 의무화 - WMD 기여 가능한 회원국 내 북한 은행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D관련 북한 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 재원 이전 금지(예외: 외교공관, 인도적 활동) -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 활동 종료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은행 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 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예외: 인도지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유엔 활동 등) -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

자료: 『연합뉴스』, 2016년 3월 3일

<표 2> 美 대북제재 법안(H.R.757) 주요 내용

H.R.757 주요 내용	
주요 제재 범위 및 대상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 부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등으로 확대 할 수도 있음
	핵연료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 제재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 검토,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

자료: 『연합뉴스』, 2016년 2월 19일

하지만 제재는 수위가 아무리 역대최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행(enforcement)이 핵심인데, 과연 미국이 미중관계가 파탄날 수 있는 제재의 이행을 강행할지도 미지수이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법안의 통과로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제재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제 실행여부 결정에는 미중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란을 대상으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데에는 미중관계라는 요인이 그리 심각한 고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수도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미중관계의 종속변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늘 남겨 놓고 있어야 할 것이다.

V. 미국판 병행론의 미래와 대북제재의 구조적 한계

1. 북한의 전략과 병행론

미국판 병행론은 공식화되기도 전에 미국 조야에 팽배한 대북협상 비관론 때문에 금방 소멸될 수 있다. 미국의 병행론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러셀(Daniel Russel)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월 4일 한미문제연구소(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CAS)가 워싱턴에서 주관한 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 3대 조건으로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핵 활동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킬 것을 제안했다.³⁴ 러셀의 발언은 비핵화가 미국의 확고한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전히 비핵화가 협상의 선 조건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병행론에 대한 미국과 한국 내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한·미공조를 의식해야 하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병행론을 선뜻 추진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행론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뉴욕채널’을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의제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온 역사가 있다. 뉴욕채널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북미관계가 최저점에 있을 때도 가동된 정황이 있다. 김정일

³⁴ “North Korea freezing all its nuclear activities, credible declaration of the North’s past activities and IAEA inspection of its nuclear sites as a first step” <<http://www.state.gov/p/eap/rls/rm/2016/04/255492.htm>> (검색일: 2016년 4월 23일).

사망 후 2011년 12월에도 북미는 실무접촉을 통해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했었고, 2013년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북미간의 뉴욕채널은 가동되었었다. 평화협정은 뉴욕채널의 단골메뉴였는데,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원칙 때문에 아무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2006년 부시 대통령도 한국전쟁 종료가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저울질 한 적이 있다. 4차 핵실험 이전뿐이 아니라 이후에도 2월 22일 북미간에 뉴욕채널이 가동된 정황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었고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정황을 기사화 했다.³⁵ 뉴스위크는 구체적으로 북미간의 뉴욕채널이 4차 핵실험이후 바로 베를린에서 가동되었으며, 이 회담에서 북한은 적대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한다.³⁶ 만약 북미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안은 선 비핵화 조건이 완화된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쿠바와의 관계개선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북한에게도 유사한 정책트랙을 시도할 수도 있다. 북미간의 실질적 관계개선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더라도, 다음 정부에게 관계개선의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변수를 감안한다면 병행론은 미국에게 바로 용도 폐기할 수 있는 정책옵션이 아니다. 중국은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인지하고 있고 미중관계의 큰 틀을 고려해야 하는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병행론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비핵화와 맞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행론만으로는 결국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바, 단지 평화협정을 얻기 위해 핵 국가의 지위를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은 주한미군(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일미군) 철수와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핵 포기의 조건’이 아닌 ‘핵실험 중지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병행론을 만지작거리며 북한과의 협상의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지만

³⁵ 『연합뉴스』, 2016년 2월 24일.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1, 2016.

³⁶ *Newsweek*, March 31, 2016.

북한은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강변하는 북한은 핵 포기 의사는 전혀 없고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결국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것인데, 4차 핵실험 전 미국의 병행론 제안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뉴스위크에 의하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북미간의 접촉에서도 북한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한다.³⁷

2. 대북제재의 구조적 한계

역대 최강인 대북제재가 소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제재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규모, 실행의 강도 등을 놓고 한·미·중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통한 북한 핵 포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이 제재로 인해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아픔을 느껴야 비핵화를 위한 협상장으로 나올 텐데, 북한의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제재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지도 못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사드, 한·미·일 삼각동맹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일 레버리지는 있으나 미중관계를 고려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게 사용할 지렛대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나마 사드 역시 케리-왕이 회담이후 사드 속도조절론을 무마하려는 미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중간의 거래품목으로 전략한 형국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이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신호를 보내고도 있다. 중국 역시 북한에게 더 이상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으로 안보리 2270호를 엄중히 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4월 29일 베이징에서 회동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³⁸ 6월 1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리수용 부

³⁷ “Pyongyang was prepared to stop testing nuclear weapons for a year. In exchange,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have to suspend their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Ibid.*, March 31, 2016.

³⁸ 『연합뉴스』, 2016년 4월 30일.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관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함과 동시에 냉정한 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6자회담의 5자는 북한과의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동의하고는 있지만, 과연 북한의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일까? 즉, 제재의 실효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아마도 중국은 매우 관용적인 기준을, 한국은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露呈)할 가능성이 높다.

VI. 정책적 함의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미국은 한국과 공조를 맞추며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상 병행논의가 가능함을 시사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의 핵협상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여러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협상이나 대화라는 말이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북한과 4차 핵실험 전(前)과 후(後)에 뉴욕채널을 가동해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선조건(precondition)이 아니라 일부분(part)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북한과 협상도 고려하고 있고 협상국면에 대비하는 듯한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3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6자 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한 당근이 없고,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제재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질문에, “우리 정책은 정권교체가 아니고(our policy is not a regime change), 제재가 목적(end)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means)”이며 “엄격한 외교(through disciplined diplomacy)를 통해” 이러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³⁹ 물론 리퍼트 대사는 선불리 북한의 평화공세에 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을 미국의 공식적 입장으로 간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국면에 대비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소위 출구전략이 부재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연 한국이 병행론에 대한 미국의 진의는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판 병행론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가 선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 북한과 크게

³⁹ 『연합뉴스』, 2016년 3월 13일.

거래하라는 ‘스테인크와 해머’ 주장은 2006년 북한 핵 위기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을 때 제기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과연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고조된 현 시점에서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적잖은 구조적 한계를 띠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한·미·중 3국의 협의 채널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5자회담 수용 불가 입장에서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론에 관한 논의라면 양자든 3자든 5자든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일단 한·미·중 대표가 만나서 병행론을 매개로 먼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중이 만나 제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강도를 조율하며 실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한국은 2014년 6자회담 환경조성을 위해 탐색적 대화에 나섰던 경험이 있다. 한국은 한미간의 의견조율과 동시에 한·미·중 협의채널 가동을 타진해야 하고 제재와 제재국면 이후를 위한 코리아 포물러 2.0을 제시해야 한다. 어쨌거나 협상국면이 도래한다면 출구론에서 병행론으로 재포장된 평화협정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텐데 한국도 한국판 평화체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평화협정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협상국면에서 정전체제 당사국인 한국이 선 비핵화 조건만을 내세우며 평화체제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처리에 관용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차제에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 접수: 5월 2일 ■ 심사: 5월 16일 ■ 채택: 5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Gates, Robert M. *Duty*. New York: Vintage Books, 2014.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Company: Updated Edition, 2014.
- Mochizuki, Michael and Mike O'Hanlon. *Crisis on the Korea Peninsula*.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2003.
- Phillips, Steve. *The Cold War: Conflict in Europe and Asia*. Oxford: Heinemann, 2001.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veland Print, 2010.
- Zimmer, Louis B.. *The Vietnam War Debate: Hans J. Morgenthau and the Attempt to Halt the Drift into Disaster*. Lexington Books, 2011.

2. 논문

- 이성현.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 동기와 미중관계에 대한 고찰.” 『세종논평』. 제314호, 2016.
- 이종석.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배경·역사·전망·대응방향.” 『정책브리핑』. no. 2016-10, 2016.
- Christensen, Thomas J.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1990.
- Friedberg, Aaron L..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2005.
- Mearsheimer, John J..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 2016.
- Waltz, Kenneth N..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American Academy of Arts & Sciences*, Vol. 93, No. 3, 1964.

3. 기타 자료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국일보』.
- 이정철, “평화체제의 입구론과 비핵화 팻말론.” (창비주간논평, 2016. 3. 9.)

- Alastair Gale and Carol E. Lee. "U.S. Agreed to North Korea Peace Talks Before Latest Nuclear Test." *The Wall Street Journal*, 2016.
- Carol Morello. "U.S. tightens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weapons tests." *The Washington Post*, 2016.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ile:///C:/Users/SEC/Downloads/CRS%20Report%20on%20US%20Pol%20toward%20NK.pdf>.
- Jonathan Broder. "Dear Barack Obama, Kim Jong Un Wants To Talk." *Newsweek*, 2016.
- K J Kwon and Paula Hancocks. "South Korea, U.S. to discuss THAAD missile defense plan." CNN, 2016.
- Megan Cassella and Doina Chiacu. "U.S. rejected North Korea Peace Talks Offer Before Last Nuclear Test: State Department." *Reuters*, 2016.
- Research Library. <<http://johnmearsheimer.uchicago.edu/pdfs/A0051.pdf>>.
- Stephen Bosworth and Robert L. Gallucci. "Reason to Talk to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2013.
- The East Asia Institute (EAI).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6031710151143.pdf>.
-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
-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Abstract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and the End of Strategic Patience:

Tracing the US Policy Change toward the North Korea

Jae-Chun Kim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at proved the North's nuclear weapons were readily deployable and within the range of reaching the American soils,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clearly steered off the course of 'strategic patience', non-policy of ignoring North's nuclear threats. The official policy of the US after the 4th test is to denuclearize the North by imposing the toughest sanctions ever that would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North Korea including regime change. At the same time, there is evidenc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prepared to drop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s precondition to discuss peace treaty with the North and to repackage the peace treaty deal with denuclearization as part of such discussion. Great powers in rivalry tend to preserve status quo in regions where there exist '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 One of the priorities of the U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is to prevent military confrontations that could entrap the US into unwanted conflicts. The US may well use the repackaged peace treaty deal to stabilize the situation in Korea if the current crisis spirals out of control.

Key Words: North Korea Nuclear Weapons;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US-China Relations; Peace Treaty;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김 홍 규**

- I. 서론
- II. 사드 문제의 기원
- III. 4차 북핵 실험과 2차 사드논쟁의 시작
- IV. 사드 논란이후 국제관계
- VI.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가 이번 4차 북핵 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불거진 배경,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대, 이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간 한반도 문제는 21세기 미중 복합적인 전략 관계에서 협력의 상징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추후 중국과 보다 경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사드 도입의 이슈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추후 북핵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전략 협력 안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깰 사드의 한국 내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다시 미중 간 갈등이 발화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주제어: 사드, 미중 전략경쟁, 북핵 실험, 한중 관계, 북중 관계

I. 서론

사드(THAAD)라고 불리는 종말 고고도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Theater Missile Defense: TMD)

* 이 글은 필자가 2015년 4월 16일 최재천 국회의원실 주최 사드 관련 세미나, 2016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사드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 발전시킨 것이다.
**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에서 고층 방어에 해당하는데, 탄도미사일의 비행단계(추진, 중간, 종말)중 종말단계인 고(高)고도의 대기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¹ 이 글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가 이번 4차 북핵 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불거진 배경,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대, 이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드를 둘러싼 한미-중러 간의 갈등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진행된 1월 6일부터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대북제재에 미국 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까지 약 50여 일의 시간을 소진하였다. 이 논쟁과정에서 한국 측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중국 중심적인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이해하거나 실제 그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중국은 사소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² 이 논쟁은 실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경직성을 노출시키고, 한중 관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의 이러한 주장들 역시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인 해석과 편견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에서 중국을 배제한 사고나 외교는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은 이웃국가이고, 중국의 영향력은 이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흔히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전체 GDP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30%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규모는 우리 GDP와 거의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의 수준은 북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또 하나 고려할 요소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경제의 구분이 이미

¹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0460&cid=40942&categoryId=31746>> (검색일: 2016.4.20.).

² 이와 같은 관점을 잘 정리한 글은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 편향,” 『전략연구』, 제23권 제1호 (2016년 3월); 박근재,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제23권 제1호 (2016년 3월);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국가전략』, 제21권 2호 (2015).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드체계 한반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은 최재천 의원 세미나 자료집, 『사드 모순』, 2015.4.16.; 김진항, “사드 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정육식, “사드, 북한미사일 막을 수 있나,”; 하주희,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고봉준, “21세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동맹 전략,” 『변화하는 한반도의 국방과 외교정책의 새로운 모색』,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6).

정책적으로는 무너졌다는 점이다.

향후, 한국의 경제적·안보적 생존에 미치는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왜 사드의 한국 배치에 그리 격렬히 반응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응한 방식이 합당했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성질의 분석은 아직 충분한 근거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 상당 부분을 추론, 인터뷰, 정황자료, 필자의 전문적 이해의 수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다. 최근 단일 외교사안 가운데 사드문제만큼 중국의 대외전략과 중미 관계의 변화,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드 관련 정책과 이를 둘러싼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정책의 변화,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중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정책 수립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크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와 4차 핵실험 이후 시기로 대별이 된다. 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이었다. 이 시기 우리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중 어느 일방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문제 처리나 2014~15년 동안 일었던 국내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이 기조를 잘 유지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도입 검토 발언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맹미·견중·압북(盟美·牽中·壓北)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가능하다. 2016년 사드 배치 논쟁은 그만큼 한국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안겨주었다.

4차 북핵 실험이후 한국의 외교는 대중 외교 측면에서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부담의 측면으로 보자면, 중국은 한국이 기존의 연미화중 기조에서 이탈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대미 편승외교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시진핑 외교의 특성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응할 방안을 이미 마련했을 개연성이 다대하다. 기회의 측면은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중국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고, 장차 일대일로 정책의 초점이 한반도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나 동남아, 남중국해 등지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제고시킨 것이다.

현재 한중 관계는 낙관도 비관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변 4차 북핵 실험 정국에서 한중 관계는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국내
 적인 해석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한
 중 관계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이 사드 문
 제의 근원이 북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UN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핵 국면에서 한중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드
 문제 논쟁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주공(主攻)은 미국을 겨냥하여 지속
 적으로 문제제기하였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신냉전
 의 도래를 원하지 않으며, 한국의 상실은 시진핑 외교의 큰 손실일 것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전략적 고민을 이해하고 사드 문제를 미중 사이의 갈등 국면으로 가
 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이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중이 전략적 타협
 국면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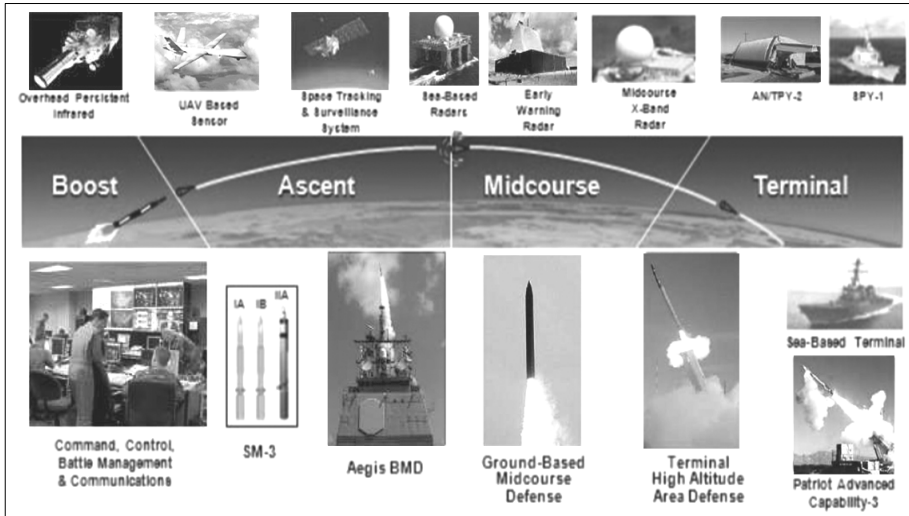
II. 사드 문제의 기원

1. 사드의 개발 배경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1972년에 상호 방어무기체계의 구축을 포기하는 반
 (反)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협정(Anti-Ballistic Treaty)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냉
 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각기 두 군데만 방어를 허용하였고, 이를 방어할 미사일 숫자
 도 100기 이내로 제한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무한정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방어
 가 어려운 군비경쟁의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³
 미국은 1991년 탈냉전의 상황에서도 이를 계승하기로 하였고, 1997년 구소련 소
 속의 4개국과도 이를 계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단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힘과 역량을 확신한 부시 Jr. 대통령은 2002년 이 조약의 해체를 선언하였다. 어떠
 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완벽히 방어할 체계를 구축한다면 상대에 대해
 결정적인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2년 11월 프라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³ ABM 조약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Anti-Ballistic_Missile_Treaty>
 (검색일: 2016.4.20.).

<그림 1> 미국의 다층 방어미사일 시스템



출처: 미국 국방부. 현재는 아카이브로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나옴. <<http://search.daum.net/search?w=img&q=%EC%82%AC%EB%93%9C%20%EC%9A%94%EA%B2%A9%EB%AF%B8%EC%82%AC%EC%9D%BC%20%EC%B2%B4%EA%B3%84&docid=33b-jlQlQfU3e0xRbT&DA=IIM>>에서 재인용.

미국은 상공을 격자망식으로 구획 짓고 이를 연결시키는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다층에서 요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대기권 밖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그 하부에서 요격하는 사드, 그리고 저층 방어용인 Pac-3등이 결합한다면 미국은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2차 보복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적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의 도입은 기존의 SM-3와 Pac-3의 간극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방어체계이다. 사드는 지상 이동 및 공중 수송이 용이하고,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1차 요격 후 확인하고, 다시 2차 요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1987년에 중층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이후 사드의 개발을 미국의 전구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핵심계획중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방어체계가 생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바로 미국이 2002년 ABM(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조약의 해체를 선언한 것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미국 부시 Jr. 행정부는 사드를 생산하여 다층방어망 구축을 추진하였고, 2007년에 이르러서 사드 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미 육군은 생산 이듬해인 2008년 5월 사드를 배치하기 시작해 2015년 까지 총 5대의 사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드는 각기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6량의 발사차량과 지상 레이더, 전투관리, 지휘, 통제, 통신, 정보체계(BM/C3I)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 요격고도는 대체로 40~150km로 상층부 대기권과 대기권 밖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고도이며,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인 AN/TPY-2형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고, 미사일의 방어 반경은 약 200km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이는 이미 배치된 종말 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triot)가 불과 30km 고도까지 방어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중층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국내 1차 사드 논쟁의 시작

국내에서 사드 배치논쟁이 시작된 것은 2013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2014년경부터 소형화한 북한 핵무기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이나 ‘무수단’에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하여 김무성, 원유철, 나경원 의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 국내 영향력이 큰 보수 유력 인사들이 이를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배치를 지지하고 나섰다.⁵

한미 간에 사드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2008년 당시 이명박-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스 회담이후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강하게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사드의 생산과 배치를 추진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실제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로의 편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당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도입 문제는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모임에서 미국 당국에

⁴ 미국 사드체계의 발전에 대한 분석은 朱風雲, “美國陸軍反導利器: “薩德”系統發展,” 『軍事文摘』 (2016.4.), pp. 32~35.

⁵ 이에 대한 신문보도는 <http://www.ytn.co.kr/_ln/0101_201503251955149159>;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84298_19842.html>; <http://news.donga.com/Issue/List_00010000000013?p=151&ynd=&m=>> (검색일: 2016.4.21.).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도입하도록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재차 부각되었다. 한국 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이 크게 흥미를 끈 것은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거듭함으로써, 한국 측의 우려가 커졌다는 배경이 존재했다. 기존의 PAC-2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핵 미사일 방어에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동시에 일본이 2013년 9월 교토에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미일의 압력이 더 가중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의 기존 입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드 체계의 도입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낮아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를 구축하여 도발 징후가 있을 시 이를 단기간에 무력화하는 킬체인으로 그 위협을 상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판단의 이면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수단 중 현실적으로 위협한 것은 서울 북방에 위치한 다연장포이며,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 스킵드 미사일은 그 비행고도가 낮아 사드로는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은 다층 방어수단을 연구 중이라 공개하였다. KAMD 체계에 요격고도 100~500km 이상인 고고도의 방어체계인 SM-3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재차 발생하였다. 김 장관은 다음날 이를 부인하였고, 상대적으로 중고도인 사드 체계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⁶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삼국 협력의 대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문제를 언급하여 이 부문에서 한국에 재차 압력을 행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개정된 EPAA(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를 통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독일에 지휘통제체계를 위치시키고, 터키에 사드, 2015년 루마니아에는 지상 기반 SM-3를 배치하여 남유럽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2018년 폴란드에도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여 동유럽을 포함하는 방어체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 명분으로는 이란의 점증하는 핵무장과 미사일의 위협을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방어 체계 구축을 우선 시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강한 반발로 이 계획

⁶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6574/1>> (검색일: 2016.4.15.).

의 실행을 결국 연기하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게 되자 그 명분과 더불어 배치 계획은 무기한 연기상태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동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⁷ 미국 측 군부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측에 사드 도입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사드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집중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CNKI와 복단대 도서관의 목록을 검사한 결과, 사드 체계에 관련된 분석 글은 2013년에는 부재했지만, 2014년 4편, 2015년 32편, 2016년 52편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글들에서 중국 측은 미중의 전략경쟁 차원에서 사드의 배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⁸ 한국에서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계 구축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2012년 일본에 AN/TRY-2라는 X 밴드 레이더 배치를 시작으로 한국에도 이 체계를 확장하여 배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 사드배치가 비단 한국에 끝나지 않고 일본, 필리핀, 심지어 대만에까지 배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⁹

2010년대 들어 재정 감축을 해야 하는 미국 정부나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런 미사일 방어망을 전 지구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막대한 부담이었다. 적어도 한 포대 당 배치비용이 1조원에 달하여, 그 운용비까지 더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도 존재하며, 향후 막대한 비용을 동맹국이나 배치 지역에 부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트럼프(Donald Trump)는 동맹국의 추가 방위비용 분담 강화를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최근까지 미사일 방어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해 왔으며, 미국의 보수층과 방산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시스템의 구축에 들어가는 고비용으로 인해 미군은 2015년 현재 당초 예정보다 낮은 수준인 5대를 일단 구매하였다.

⁷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兵器知識』 4期(2016), p. 55.

⁸ 최근의 대표적인 글들로는 王俊生, “新時期發展中韓安全合作的意義, 障礙與方向,” 『東北亞學刊』 第1期, (2016.01); 獨孤九段, “美韓的薩德反導系統, 對中國威脅到底有多大,” 『中國經濟周刊』 (2016.2.22); 劉江永,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東北亞論壇』 第3期(2016.04); 張良, 美軍半島“舞劍,” 意在構築“亞太反導網,” 『生命與災害』 (2016.3); 金龍, “朝核危機, 中國不出賣朋友也絕不護短,” 『東北之窗』, 2016/3A.

⁹ 鄒治波, “美國謀求在韓部署“薩德”系統的戰略意涵,” 『當代世界』 (2016.4), p. 26.

3.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입장 견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고도 10~1,000km의 하층, 중층, 상층의 전체 과정 방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KAMD는 50km 정도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 체계라 할 수 있다. 현 방어 체계의 단점은 북한의 미사일이 음속의 5~8배로 낙하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요격할 시간이 수 초 밖에 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낮고, 요격 영역이 제한적이며, 북한이 중고도에서 자탄을 분리하여 공격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할 경우, 북한 미사일을 중고도와 저고도에서 중첩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더 고고도인 SM-3보다는 사드 도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동이 가능한 해상발사 요격체계인 SM-3가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지상발사 요격체계인 사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로 사드배치 문제에 접근하였다. 국방부는 예상되는 중국 측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 역시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의 군부와 국방부 인사들은 사드를 한국에 도입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다.¹⁰ 2014년 9월 로버트 워크((Robert Work)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의 배치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에는 존 커비(John Kirby)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사흘 뒤 한국과 공식 협의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미 합참의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아시아담당 부국장(공군 준장)은 최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미일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마틴 뎀프시(Martin Dempsey) 미 합참의장이 2015년 3월 26~28일 방한 중 (최윤희 합참의장과)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¹¹ 스틸웰은 “사드가 지역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한국 안보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해 미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 역시 2015년 5월 18일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으로

¹⁰ <<http://news.donga.com/Issue/List/00010000000013/3/00010000000013/20150323/70264822/1>> (검색일: 2016.4.15.).

¹¹ 미국의 소리(VOA) 방송 2015년 3월 22일자 보도.

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드 체계를 비롯해 다른 수단들에 대해 언급하였다.¹²

박근혜 정부하에서 한국 당국은 미국과 엇박자가 나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공식 협의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여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취했다. AN/TPY-2 레이더 대신 탐지거리가 600~800km 정도인 TBR 레이더로 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사드 미사일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고정형이고, 그 방향이 북쪽을 향하는 것이라 중국을 탐지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하였다.¹³

사드 미사일 자체도 중국이 위협될 만한 유효거리나 고도도 아니며, 작전 범위가 동아시아가 아니라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은 사드 배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¹⁴

4.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도입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그것은 중러를 겨냥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2016년 4월 29일 중국 왕이 부장은 러시아의 로브로프(Sergey Lavrov) 외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단호한 태도로 제시하였다.¹⁵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해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한국의 방어수요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장을 더욱 촉발시키고, 역내 전략균형을 파괴한다. 유관 국가들은(한국을 포함: 필자 강조) 중국과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과 정당한 주장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¹² <<http://news.joins.com/article/17932571>> (검색일: 2015.10.16.).

¹³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0415278298330&type=2&sec=finance&pDepth2=Qdiplomacy>> (검색일: 2016.4.15.).

¹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1815440156236>> (검색일: 2016.2.15.).

¹⁵ <<http://www.fmprc.gov.cn/web/wjzbzd/t1359733.shtml>> (검색일: 2016.4.25.).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을 띠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는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문제시하는 것은 사드 미사일보다는 미국이 운용할 X-Band 레이더 체계였다. 이는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 2,000km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어, 서해안 쪽에 배치되는 경우,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 톈진, 다롄은 물론이고, 우루무치와 라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의 주요 도시 주변의 군사시설과 대륙간 탄도탄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초기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중국은 사드를 한국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필요에 따라 대중국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국이 억제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이다. 일단 사드 체계가 한국에 도입되면 한국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그 운용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미국의 EPAA판 동아시아 체계의 확대를 돕거나, 편입되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 도입과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중심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교토에 X-Band 레이더를 설치하고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알려진 2013년 9월 23일 논평을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북한 핵 방지와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거나 집단 협력을 펼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글로벌 전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¹⁷

중국은 시진핑의 방한 직전인 지난 2015년 5월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내 미사일 방어체제논쟁이 재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중국 군부의 대표적인 매파인 인취(尹卓) 전 해군 제독은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국의 선제 핵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¹⁸

한국 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측 역시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미러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갈등과 긴장이

¹⁶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p. 55.

¹⁷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079427.shtml> (검색일: 2016. 4.15.).

¹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2021.html> (검색일: 2016. 4.12.).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증폭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외교부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 전개 지역의 추가 확대와 그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태전개는 불가피하게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배치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왔다. 2015년 3월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 도입이 지역 내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군사 정치적 상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러시아 외교부 역시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¹⁹ 이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과 주 러시아 한국대사는 다 같이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드 도입은 우리 정부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5. 1차 사드논쟁의 정리

국내에서 보수적인 성향이나 안보라인의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격의 범위와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사드체계의 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사대주의의 소산이라는 대단히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주장들도 널리 개진되었다.²⁰ 심지어는 미국의 사드 도입의 요구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정부보다 더 걱정하는 참으로 민망한 충고”로 크게 환영하였다.²¹

한국 국방부는 2015년 5월 29일 대변인을 통해 미군내의 사드 체계 도입은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 및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형 사드급 요격미사일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고 공표하여 사드 논쟁을 일단 불식시켰다.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새로운 KAMD체계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고도

¹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42300265&code=910302> (검색일: 2016.2.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48>> (검색일: 2016.4.15.).

²⁰ <<http://news.donga.com/Issue/List/00010000000013/3/00010000000013/20150313/70118694/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3955.html> (검색일: 2016.4.12.).

²¹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61201033037191002>> (검색일: 2016.2.15.).

60km이상 요격), PAC-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구성되며, 2022년까지 이를 실전 배치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한국은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답변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사드 배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정책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논쟁이 일단락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은 여전히 유지하였다.²²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에 입각한 중견국가 외교의 일단을 잘 보여주었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4차 북핵 실험과 2차 사드논쟁의 시작

1.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적 선택

북중 관계는 ‘북중 우호조약(1961)’에 따라 ‘군사 동맹’ 성격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점차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중이다.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관계는 중소의 대북 내정개입(1956), 문화대혁명 초기(1966~1969) 시기, 한중수교(1992) 시기 이후, 상호 간의 불신이 가장 극대화되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모란봉 악단이 북경을 친선 방문하고 있던 2015년 12월 10일에 북한이 수소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당분간 추가적인 도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측을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모란봉 악단 철수사태(2015.12.12)이후, 중국은 모란봉 악단의 재방문 추진 등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 2016년 1월 6일 북한은 돌연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또한 2016년 2월 2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판공실 주임이 방북한 당일, ‘광명성 4호’ 위성으로 명명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계획을 공표하고 결국 이를 2월 7일 실시하였다.

북한은 핵실험 직전 미국 측과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비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측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 전통 우방이었던 중국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당분간은 미국이나 한국이

²²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139300001.HTML?input=1179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35830&code=61111911&cp=du>> (검색일: 2016.2.15.).

새로운 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역시 내부 경제사 회 환경의 악화로 외부적인 개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 주어진 “연휴기간” 동안 일단 핵무장을 완성하고 실전배치하여 자신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²³

북한은 중국의 이해와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국을 배려하고 있지 않고 독자적인 이해에 입각해 결정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집권하자마자 핵문제는 더 이상 6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미중변수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논리로 핵개발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미 강대국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게 상당히 곤혹스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산 질서를 수호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할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는 희망과 더불어 북한 불안정과 붕괴시 초래할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는 북핵 실험 바로 다음날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 인터넷 망인 국관전연통신(國關前沿通訊)에서 발표한 시진핑(習近平) 시기 새로이 분화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여섯 가지 다른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²⁴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주류는 ‘현상유지’자들이었으나²⁵ 이제 점차 ‘제한적 제재강화론’자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 포기론이나 강력한 제재시행을 주장하는 무리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극소수만이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 더구나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를 보자면 중국 대 한반도 정책의 기반이 변화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해석해도 될 듯하다. 북한은 중국 외교에 있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특수 지위를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²⁶

²³ 장튀성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부 주임 역시 필자의 견해에 공감, 2016년 4월 26일 인터뷰.

²⁴ <<http://www.dooo.cc/2016/01/40356.shtml>> (검색일: 2016.4.15.).

²⁵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전략사고를 세 부류로 정리한 글은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

²⁶ 북중 관계의 수식어로 여전히 사용되는 ‘전통적’이란 개념은 더 이상 특수 용어가 아닌 과거 사회주의를 공유한 국가들인 알바니아, 베트남, 체코와 같은 국가들에게도 붙여지는 일반명사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개념에 대한 연구는 김홍규, “중국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9) 참고.

<표1>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

범주	수량	주요 지지자
무조건적인 북한 지지	1	리둔치우
북한 포기	5	자오추, 덩위윈, 왕홍광
현상유지	26	루안중저, 평광취엔, 류장용, 타오원자오
제한적 제재강화	21	스인홍, 주펑, 선당리, 웨리타이
강력한 제재 시행	6	장렌구이, 자칭귀, 리카이성, 왕하이판
정치 현실주의적 접근	11	옌쉐통, 진창이, 위앤쉐저, 왕이웨이
관리 위주 혹은 무시	불명	일대일로 추진하는 자유주의자

출처: 시진핑 집권기인 2013~2016년 3월 현재까지 한반도 관련 저술과 중국의 전통적인 전문가들 총 70인 에다가 일대일로 추진자들의 사유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임.

시진핑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면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도록 중국 조야에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구성하면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할 마지노선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²⁷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기존의 당 대 당의 특수관계를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 보다 노력하게 되었다.

2. 북핵 실험 직후 한국의 정책

정부의 3NOs 정책 표명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한국 내 사드배치 문제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돌연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대북 제재 이슈는 한동안 뒤로 밀리고, 오히려 사드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한미·중러 간에 신경전과 알력이 증폭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사드문제는 거의 당파성을 띠게 되었다. 대체로 정부여당은 강력히 찬성하고, 야당이나 재야는 반대의 입장에 서면서 객관적 성찰보다는 마치 도그마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사드 배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중국에게는 이것이 아마도 공개

²⁷ 필자의 2016년 2월 19일 북경 인터뷰.

적인 압력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이는 동유럽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동유럽에 미국이 미사일 방공망을 구축하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사드배치 명분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 경험은 한국 사드배치의 근원인 북한의 핵무장을 중국이 적극 나서서 억지하고 제거해야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계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국의 미온적인 북핵 대처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중국의 협력만 있으면 북한은 굴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었다.²⁸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박근혜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본질문제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이 반발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드 문제를 왜 이리 빨리 제기했는지에 대한 다음 몇 가지 가설이 필요하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특히 시진핑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간 한국 측의 많은 노력과 중국 측의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언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핵 실험 국면에서 중국 지도부의 침묵과 소통부재는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신은 북한의 위성발사 직후 2월 5일 박근혜-시진핑과의 통화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²⁹ 둘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북한이 김정일 시기부터 추진해 온 한반도 무력통일을 위한 3일 대전(大戰) 통일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인식이다.³⁰ 그리고 이를 실행할 시점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중국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불신 역시 깔려 있다. 셋째, 중국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도 작용한다. 한국전쟁의 경험, 냉전적인 사유, 북핵문제 대응과정에서 중국에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 최근 중국의 한국의 경제 생존 공간 무(無)배려, 해양경제회정 회담에서 보여준 중국의 경직된 태도 등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강화시켰다. 넷째, 최근 한미동맹 약화와 동맹방기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일본이 주축이 된 대중 경사론이 미국의 조야에 설득력을 얻고, 최근 2016년 발간된 미국 CSIS 리포트에서 암시한 바처럼³¹ 미일동맹의 강화 추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약화 우려는

²⁸ 이러한 논리는 민간 전문가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데, 그 한 예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7/2015062700085.html> (검색일: 2016.4.14.).

²⁹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5>> (검색일: 2016.2.15.).

³⁰ 이 북한의 무력통일 전략은 황장엽의 망명시 공개한 것으로 한국의 보수적인 안보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이러한 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 의한 카스라-태프트밀약(1905), 애치슨라인의 설정(1950)의 악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위협이 이처럼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력의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닌 대북 정보력 운용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정보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한국 외교안보 정책라인의 인적구성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미동맹 중심의 사고와 이해관계 구성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인적구성, 여기에 북한 붕괴론은 전제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담지자, (국수적) 민족주의자들이 결합하여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 사이에 한미동맹 가치에 대한 사유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공통점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사고가 존재한다. 일곱째, 또 주목할 논점은 4월 총선 활용론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북풍의 활용은 보수정당에게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단, 사드문제는 북풍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 엘리트들의 인식과 경제계나 일반인들의 이해관계 사이에 괴리 가능성 존재한다. 여덟째 고려는 한국의 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화한 후, 미국의 전략핵 반입 등을 설득할 공간을 확대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현 국면을 주도하는 집단들도 다양한 이해를 지니고,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외양적으로는 청와대 안보라인에서 주도하고 있는 듯하나, 더욱 가장 강한 목소리는 상위의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보수민족주의자, 보수 원로 그룹에서 제기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월 25일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군사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그런(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상황 관리 노력도 병행하였다. 갈등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중국과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방부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사드 시스템의 제한적인 역할, 한미동맹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

³¹ Michael Green, Kathleen Hicks, Mark Cancian,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SIS (January, 2016).

회 연설에서 다시 사드 도입 및 강력한 대북정책의 추동지를 드러내었다.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하고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임을 암시하였다. 최근 남북 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북핵·미사일 실험 국면에서 한국이 취한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 대중(中) 민족주의 태도, 사드의 조기 도입 정책은 일단,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케리-왕이 간의 북핵 제재에 대한 합의와 미국의 사드 관련 유연한 태도 채택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절박감과 위기의식은 이번 4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 동인이며 이는 이번 UN 결의안 2270호로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사드배치를 조속히 추진하며, 핵우산 확장 및 (가능하다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한국을 미·일·한 삼각안보협력 체제에 편입시키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초래한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각에는 이러한 한국의 강경책이 박근혜 정부의 국내 총선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안보그룹이 지니는 문제의식은 이를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핵무장화 추진 논의가 점화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은 결국 핵무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보수를 넘어서서 진보 진영에서도 설득력을 얻는 추세이다. 아직 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안보지원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한국의 여론은 급격히 이에 경사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비용에 대한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 조차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3. 중국의 북핵 실험과 사드에 대한 대응

중국은 2016년 1월 6일 북한 핵실험 당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³² 그 내용은 3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외교부

³² 성명 전문 <<http://www.fmprc.gov.cn/web/zyxw/t1329851.shtml>> (검색일: 2016.4.15.).

성명과 거의 유사하다. 3차와 마찬가지로 핵확산을 방지(防止)한다는 보다 행동 지향적인 언명(1~2차 실험직후에는 핵확산을 반대(反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측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대응해야한다는 구절이 빠져, 중국 역시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중국은 미래에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여 북한이 의도하는 바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2016년 1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과 서로 소통을 유지할 것을 희망하면서 동시에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안정과 평화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다 중요하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도 생략할 수 없다고 제한을 두었다.³³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희망하는 한국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는 3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은 2013년 3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는 기존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대북 접근과는 다른 과감한 대북 압박전략을 주도하여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 당혹하게 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그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는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³⁴ 시 주석의 신중한 행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요인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국면에서 정책 결정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를 미중 관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였다.³⁵ 두 번째, 한국 내 사드 도입문제가 제기되자 시진핑 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이 의제를 같이 조율하려 했을 개연성이 크다. 즉, 북핵 제재 및 사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 하였다. 세 번째,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강화움직임을 고려하였다. 네 번째, 중국의 경제문제와 사회 불안정 문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중국 내 군부개혁이 중요한 변수였다. 군부개혁으로 인해 군부 내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양보를 하거나 미온적으

³³ <<http://www.fmprc.gov.cn/web/wjbzhd/t1330516.shtml>> (검색일: 2016.4.15.).

³⁴ 이는 시 주석이 박대통령에게도 한 언급이며, 필자가 2015년 중국의 다양한 안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³⁵ 畢穎達, “深化中韓戰略合作夥伴關係的空間, 挑戰及應對,” 『東北亞論壇』 2015年 02期; 仇發華, “新時期中國朝鮮半島戰略調整的變化, 動因與趨勢,” 『國際關係研究』 2014年 06期.

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시 주석은 상기의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북핵 실험 발생 초기국면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회피하였다. 쉽사리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군부개혁 상황과 관련한 문제는 시진핑 자신의 권력 향배와도 관련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중국 군부와 안보라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선에서 북핵 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 제기하여,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 자체보다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차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³⁶ 더구나 미국의 북핵정책은 미국의 전략이익을 위한 현상유지와 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북한의 제재와 고립, 핵개발의 억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³⁷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중 전략관계의 구도에서 인식하고 대응한다는 중국 외교정책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였다.

한국 측은 이번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 사드 도입문제를 본격 제기하면서, 미국의 영향력과 힘을 빌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끌어내려 하였다. 중국은 북핵 실험 발생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문제 제기와 한민국 국방장관의 사드 수용검토 발언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한 편승전략을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택했다고 해석했을 것이다. 북핵 실험이후 한국의 대응을 중국이 설정한 중국 국가이익의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설정한 마지노선은 미중 간의 북핵 제재 협상에서 잘 드러나는 데 첫째, 제재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 내 사드 도입은 불가하다. 셋째,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뤼웬(羅援) 전 군사과학원 소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³⁸ 첫째, 압록강을 넘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넘어오는 상황은 불가, 한반도의 안정 유지 둘째, 중국의 국가 안전이해 고려 셋째,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 억제 및 핵 포기시 충분한 보상의 실

³⁶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관영매체들은 북핵 실험 직후 북핵보다는 미국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http://www.guancha.cn/politics/2016_01_07_347317.shtml>; <http://www.guancha.cn/america/2016_01_08_347327.shtml>;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1/8338885.html>> (검색일: 2016.4.15.).

³⁷ <http://news.ifeng.com/a/20160108/46987307_0.shtml> (검색일: 2016.4.15.).

³⁸ 羅援, “中國在半島的安全關切應得到各方重視,” 『軍事文摘』2016年 4期.

시 넷째, 제재를 실시하되 과도한 제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직후이다.³⁹ 중국은 1.5트랙 차원에서도 향후 한국의 사드 도입은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신호로 인식하고, 한중간 신뢰를 엄중히 손상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대가를 반드시 한국이 치러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였다.⁴⁰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6년 1월 29일,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그 어떤 국가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중국은 2월 7일 사드의 한국 내 배치관련 한미 간 협의 결정이 알려지자 즉시,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다만, 한국과의 갈등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몰아가지는 않겠다는 원칙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발간한 사드 관련 중국의 문건들을 보면, 한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비판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대체로 인정하고 한국의 입장을 가급적 중립적으로 전달하려하면서도, 중국의 국가이익의 침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과거에는 북핵 실험의 근본 원인을 미국의 대북위협에서 찾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동시에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⁴¹ 북한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차이를 활용하여 계속 핵개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흥미롭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는 5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 외교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동시에 미국에 대해 군사적·외교적인 측면에서 병행하여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우선 환구시보는 한국의 사드배치가 현실화되면 상응한 군사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여, 최초로 군사행동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2월 12일 왕이 부장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

³⁹ <http://www.ytn.co.kr/_ln/0101_201601262158307071> (검색일: 2016.4.15.).

⁴⁰ 2016년 1월 23일 개최된 제2차 아주대 한중정책학술회의 중국 측으로 참석한 왕이성 중국군사과학원 아태부 주임과 장튀성 중국국제전략기금회 학술부 주임이 일관되게 강조한 내용이다. 동시에 환구시보(環球時報), 2016.1.27 사설 참고.

⁴¹ 환구시보의 북핵실험 당일 인민대 진찬룡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서 엿보이며 후에 중국 정부 역시 유사한 입장을 개진.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1/8327218.html> (검색일: 2016.4.15.).

고, 한반도 정세를 명분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는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뜻이 유방에 있다(項莊舞劍 意在沛公, 司馬昭之心 路人階知)”라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미국이 사드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미국 측에 한국에 사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번 사드 논쟁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존중해줄 것이란 신뢰는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을 중국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경일 것이다. 다만, 중국 역시 북핵문제로 인해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불원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과 갈등 관계로 전환하는 것 역시 억제하려 노력 중이다. 단,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해 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측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의 원칙에는 찬성하고, 북한에 대한 “용단 폭격론” 대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사안에 대한 “정밀타격(제재)론”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해결책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북미대화 재개 등 현 경색국면의 탈출구를 제공해줘야 중국 역시 대북 설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내 사드에 대한 입장은 비교적 단일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국 내에서도 사드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의 차이점도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라인은 보다 유연한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안보라인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추귀홍(邱國洪) 대사의 2월 23일 사드 도입이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발언도 아마 이러한 압력을 받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⁴²

중국이 사드에 대한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면에는 크게 다음 일곱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냉전적인 사고에 입각해 한국에 미군과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다. 따라서 실제 사드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둘째, 한미동맹의 이원책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국가 외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거점국가로서 한국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을 억지하면서 한

⁴²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3/0200000000AKR2016022315290001.HTML?input=1179m>> (검색일: 2016.5.3.).

국의 보다 중립적인 태도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군사기술적 위협 때문이다. 백두산 배후에 위치한 중국 미사일 부대에 대한 사드 레이더의 운용을 우려한다.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이고, 유사시 대중용 레이더로 신속히 전환이 가능하며 사드 레이더는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는 1기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2기~3기가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사드 레이더가 더 배치된다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⁴³ 넷째, 미중 전략 경쟁에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대중 및 대러 전략에 있으며 미국은 기존 동맹들을 이러한 목적에 활용하려 노력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전략균형의 훼손이다. 강대국 간에는 일정한 전략 균형의 상태가 존재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 미국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존재해 왔던 미묘한 전략 균형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중립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켜 군비경쟁, 갈등 악화의 수순을 밟게 되리라는 것이다.⁴⁴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돌파하기 위한 미사일의 수량 증가, 대응하는 무기체계의 배치, 전략 무기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⁴⁵ 여섯째, 사드는 중국의 일본이나 서태평양상의 미국 영토 도서들을 방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일본과 서태평양상의 미국 도서들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 부대는 동북부에 다수 배치되어 있다. 또 양안 지역에서 군사 충돌시, 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로 주한미군을 제어할 수단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의 군부 개혁이 진행 중에 있고, 군사력 건설 중에 있다. 사드 문제는 군부의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관심과 군사비 증액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시진핑 역시 중국 군부나 안보라인의 견해와 이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아마도 역순 요인으로 중요했을 것이다.

⁴³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p. 56. 그리고 첫 1기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음 기부터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⁴⁴ 최중건 교수 시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2336.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9071.html>> (검색일: 2016.5.3.).

⁴⁵ 중국의 잠수함 발사 SLBM 초기 탐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劉江永,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p. 9.

IV. 사드 논란이후 국제관계

북핵 실험과 사드관련 대립국면에서 드러난 현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은 한국이 희망하는 북한과 5자의 구도는 아니며, 그렇다고 언론이 추정하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양자 세력구도도 아니었다. 현재는 과거와 차별되게 한·미·일, 중러, 북한의 3각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관건은 중러를 어느 쪽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북핵 실험이 진행된 후 거의 한달 여 만인 3월 2일 유엔 결의안 2270호 채택으로 일단, 전례 없이 강한 북한 제재국면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이 주장한 바대로 미중은 이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추후 협상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합의한 점이다. 동시에 중국의 주장대로 민생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제한적인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후 한미의 사드 도입 논의, 한중 간 깊어진 불신 등 변수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 제재의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북핵 실험 국면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국면과 분리시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북한 제재이슈는 미중 전략 경쟁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중국은 보다 광의의 그리고 장기 전략적인 맥락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 UN 제재 결의안 2270호가 결국 미중 간의 전략적 타협의 차원에서 다뤄진 것은, 향후 한국 외교에 다시 어려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다.

1. 한중 관계

시진핑 시기 중국은 자신의 이해에 반해 한국이 주도적인 전략적 선택에 의해 자신에 적대적인 정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반드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정치문화에 부합하고, 동시에 시진핑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함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해를 침해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가 분명한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 외교정책은 한국이 감내할 비용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하고 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경제보복이다.⁴⁶ 이는 저강도이면서, 즉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면서도 한국이 취약한 부분을 활용할 것이다. 그 예로 첫 번째는 경제부문이다. 지난 현대차의 충칭공장 인가 지연의 경우처럼 의도적이던 아니던 협의 처리의 지연, 연기, 취소, 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묘히 나타날 것이다.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가 큰 영역이 표적이 될 개연성이 크다. 중국 방한 관광객 수의 급감도 예상할 수 있는 대응이다.

두 번째는 사회정서적 대응이다. SNS상의 한국 비난 허용이나, 한중간의 갈등 이미지 유포 허용, 왜곡된 이미지의 유포, 한국 드라마나 문화 활동의 억제 등 한국에 대한 대중정서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인 형식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무차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군사적인 보복도 가능하다. 그 예로는 방공식별구역의 무력화와 기존 한중 해상경계의 무시, 이어도 방면에 중국 해안경비정 진입 등이 그 리스트에 있다. 중국이 취할 행동은 한반도 근해에서 군사연습도 있다. 재난구호나 기타 해적 활동 퇴치, 혹은 정례적인 군사연습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점차 그 근접도와 민감도를 높여 갈 것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 북한을 압박할 때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사시 한국 내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군사적 타격방안 설정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고 압박할 수 있다. 단, 현재 중국 군부는 대개혁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후 5년 간은 실제 무력충돌이나 작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일 것이다.

환구시보는 이미 2월 16일자 사설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시 북중 변경지대에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 배치시키고 군비경쟁과 대치를 강화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서 한국은 강대국의 경쟁에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들어 가장 강한 경고를 말한 바 있다. 동시에 유럽의 경험을 들어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위협까지 하였다.

중국이 꺼내들 다음 카드는 북한 카드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북중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다. 필요한 경우, 러시아와 공동

⁴⁶ 최지영·김홍규,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 아주대 China Watching 제14호 (2016.4).

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낮은 차원의 대북 군사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단, 현재 중국이 UN 제재 준수와 북한 미사일 및 핵개발에 들어가는 물품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나, 아마도 상황 악화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한중 간 전반적인 대립과 충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다자무대나 현안에 대한 중국의 사보타주가 진행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중국은 2014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 국책기관 합동 전략 대화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단행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⁷

단, 현재 중국의 전략이나 태도로 볼 때, 북핵문제로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동북아에 신 냉전구도의 형성을 희망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전을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상기 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를 먼저 감안한 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장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대립국면을 초래하기보다는 일단 관망과 관찰을 위주로 하고,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추후 행동을 취할 명분을 쌓을 것이다.

다만,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강화될 추세에 있고, 사드 문제로 인해 향후 미중이 갈등할 경우, 한국 역시 연루되면서 중국과 갈등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로서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리 저장도의 제재라도 중국의 보복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과 갈등 시 반드시 출혈을 감당할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최상의 방법은 갈등하지 않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상호 눈높이를 맞춰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다.

2. 북중 관계

당분간 냉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는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일단은 고강도 대립정책 이후, 중국의 한반도 딜레마를 활용하면서, 대대적인 대중 유화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유인할 개연성이 다대하다.

⁴⁷ 당시 참석자의 전언.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28일 최선희 6자회담 부대표를 중국에, 29일 박명국 외교부 부상을 러시아로 보내 북핵 실험 정국 이후 파생된 한중, 미중 균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북 제재 수준의 가늠 및 완화, 북한 입장의 전달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2월 2일 북핵 협상대표인 우다웨이를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 측과 탐색 대화를 시도하였다. 단, 북한은 미사일 발사공개로 현 국면이 여전히 고강도 대립국면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다시 막대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응을 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므로 당분간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이나 환구시보의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단, 북한은 단기적으로 이에 호응할 개연성이 적어 중국에 지속적인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할 것이고 한중 관계 역시 그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

북한은 사드관련 한중 및 미중의 갈등 국면을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다. 신냉전의 도래가 북한의 생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우군의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동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신냉전 구도로 진입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된 국면을 희망하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양국관계 개선의 동력을 여전히 존재한다. 시진핑이 완전히 권력을 공고화하는 제19차 당대회(2017.10)까지 중국의 대북 정책의 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 노력하면서도 대체로 다소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많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대북 정책을 놓고 많은 고심과 논쟁이 더 가열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현 미국 중심의 북핵 대응 구도에서 중국 중심의 북핵 대응구도로 바꾸려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는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키 나가면서 중국의 안보 전략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면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중국 책임론만 부각되는 구도이다.⁴⁸ 시진핑은 이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북중

⁴⁸ 김홍규, “북핵 공정의 시작인가,” 『국민일보』 2016년 6월 6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55947&code=11171395&cp=du>> (검색일: 2016.6.8.).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 관련 양보를 받아내고, 현 제재와 대립구도를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의 5월 31일 방중은 아마 이러한 중국의 대담한 전략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주요한 시도일 수 있다. 이는 북중 관계 개선이 옵션이 아니라 상수가 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추세로 보자면, 중기적으로 그리고 제3의 대안으로 중국판 ‘전략적 인내정책’을 한반도에 대해 적용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관심 역시 한반도 보다는 국내문제가 주관심이고, 점차 일대일로 전략의 전개에 따라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가능하면 관리위주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외적인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3. 미중 관계

중국과 미국은 21세기 들어 협력과 경쟁이 결합한 복합적인 경합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에 제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내용 중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데 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경제, 핵 비확산, 기후변화, 테러, 환경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 우주 영역 등지에서는 경쟁과 알력이 협력의 측면보다 두드러진다. 미중 간의 강대국 관계가 기묘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핵확산 방지와 지역 안정이란 측면에서 미중은 공동으로 협력하면서도 북핵 위기와 연관된 북한 문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⁴⁹ 즉,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간에 합의의 영역인지 아니면 경쟁의 영역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반도 문제는 향후 미중 전략 경쟁관계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남을 것 같다.

이제까지 오바마-시진핑의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는 항상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 이러한 합의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를 잠정 연

⁴⁹ 이를 중국 측은 한반도에서의 전략호동(戰略互動)이란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陳宗權, “朝核問題上中美戰略互動關係的轉型,” 『社會科學』, 2014年 10期.

기하는 데 미중은 상호 묵시적으로 동의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2016년 3월 31일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 참석을 위한 전술적인 양보였는지 아니면 보다 본질적으로 미중 전략협력의 차원에서 다뤄졌는지가 아직 불확실하다.

최근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미국은 한국 내 사드의 배치는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향후 더 강화해 나갈 의지를 사드 문제를 통해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후 한반도 문제가 결코 한국이 희망하는 데로 미중의 전략 협력 안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전략적 관계의 정황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협력위주에서 경쟁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던 간에 미중의 시각에서는 전략적 경쟁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에 전략적 균형을 깰 사드의 한국 내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다시 미중 간 갈등이 발화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설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V. 결론

한국 외교는 21세기의 한반도 및 국제 환경의 본질에 대한 이해, 향후 어떻게 한국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원칙과 비전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 의미의 안보와 포괄적 의미의 안보 사이의 명민한 사고가 요망된다. 21세기 국제관계는 전통적 안보 문제로 망하는 나라보다, 경제로 파산할 나라가 나올 개연성이 더 큰 것도 현실이다.⁵⁰ 현재 한중 관계는 안보 및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엄준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신은 확대되고, 경제 협력은 급속히 줄어들고, 안보에서는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는 갈림길에 놓여 있고,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병존하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은 전에 비할 데 없이 중요한

⁵⁰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가 2015. 4. 8일 국립외교원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

관건적인 시기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향후 중국의 부상 및 변화하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 경제-안보 연계상황에 대한 이해, 여기서 빵과 대포의 황금비율에 대한 고민이 보다 진지하게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북핵 실험을 계기로 적극 제기하고 나온 한국 내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국익에 합당하고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비전에 부합하는 것인가? 북한의 실제 위협 평가, 사드 배치의 합당성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매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이점과 비용(기회비용 포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드 논란과 배치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엄중한 이슈란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미중 관계의 본질이 변하는 지를 판단하는 시급성이 되고 있다. 미중은 남중국해에서는 격렬히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호 위기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이제 미중 간 갈등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만큼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 전제되었던 협력의 영역만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드 논쟁이 암시하는 바다.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드 문제가 한·미·중 대립의 사안이 아닌 적어도 타협, 더 나아가 협력의 사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원칙에 있어서 미·중·한 간의 소통과 전략적 이해 맞추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미중이 우선적으로 전략 대화를 통해 다루도록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한국도 이 문제가 지나치게 대중국 견제용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미중 대립이 아닌 협력 사안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불가피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중국의 이해를 가능한 한 배려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정책결정시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중국의 대응조치를 먼저 감안한 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북한은 이미 사드문제로 미중, 한중, 한러 간 관계를 갈등상황으로 만들면서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즐기고 있다. 배치 이후에도 엄청난 고비용은 발생하게 하면서도 실제 북한을 위협하지는 못해 북한이 결국 선택권을 갖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사드 논란의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여건을 형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합당한 한미동맹’의 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가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한정’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하고 합의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지니는 부가적인 기능인 지역안정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역동맹화’ 하는 것은 동맹의 이익을 초과할 우려가 다대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동맹을 최대한 동원하여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사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판단의 근거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한미 관계에 동상이몽과 불협화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성동격서(聲東擊西)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고, 득보다 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개연성이 다대하다.

최근 사드논란에서 보여준 미중 관계의 흐름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정도 희생하더라도 최대한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그 시급석이 될 것이다. 중국은 적어도 그리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강대국 정치, 북한의 농간, 신 냉전질서의 도래, 탐욕스런 국제 자본의 탐닉대상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 접수: 5월 2일 ■ 심사: 5월 16일 ■ 채택: 5월 31일

참고문헌

1. 논문

- 고봉준. “21세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동맹 전략.” 『변화하는 한반도의 국방과 외교정책의 새로운 모색』.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6).
- 김진향. “사드 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 김홍규. “중국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9).
- 미국의 소리(VOA) 방송. 2015년 3월 22일.
- 박근재.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합의.” 『전략연구』. 제23권 제5호

(2016).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 편향.” 『전략연구』. 제23권 제5호 (2016).

_____.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국가전략』. 제21권 2호 (2015).

정옥식. “사드, 북한미사일 막을 수 있다.”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최재천. “세미나 자료집.” 『사드 모순』. 2015.4.16.

최지영·김홍규.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 『아주대 China Watching』. 제14호(2016. 04).

하주희.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仇發華. “新時期中國朝鮮半島戰略調整的變化, 動因與趨勢.” 『國際關係研究』. 2014年 06期.

金龍. “朝核危機, 中國不出賣朋友也絕不護短.” 『東北之窗』. 2016/3A.

獨孤九段. “美韓的薩德反導系統, 對中國威脅到底有多大.” 『中國經濟周刊』. (2016. 02. 22).

羅援. “中國在半島的安全關切應得到各方重視.” 『軍事文摘』. 2016年 4期.

王俊生. “新時期發展中韓安全合作的意義、障礙與方向.” 『東北亞學刊』. 第1期, (2016. 01).

劉江永.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東北亞論壇』. 第3期(2016. 04).

張良. 美軍半島“舞劍,” 意在構築“亞太反導網.” 『生命與災害』. (2016. 03).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兵器知識』. 4期 (2016).

朱風雲. “美國陸軍反導利器: “薩德”系統發展.” 『軍事文摘』. (2016. 04).

陳宗權. “朝核問題上中美戰略互動關係的轉型.” 『社會科學』. 2014年 10期.

鄒治波. “美國謀求在韓部署“薩德”系統的戰略意涵.” 『當代世界』. (2016. 04).

畢穎達. “深化中韓戰略合作夥伴關係的空間, 挑戰及應對.” 『東北亞論壇』. 2015年 02期.

Green, Michael. Kathleen Hicks, Mark Cancian,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SIS (January 2016).

Kim, Heungkyu.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

2. 기타자료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일뉴스』.

『한겨레신문』.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1/8327218.html.

<http://www.dooo.cc/2016/01/40356.shtml>.

<http://www.fmprc.gov.cn/web/wjbzhd/t1359733.shtml>.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079427.shtml.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48>.

Abstract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and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HAAD Debates

Heung-Kyu Kim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the issue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became brisk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It also seeks to analyze why China so vehemently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system onto the soil of South Korea and its consequenc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It almost took 50 days to reach consensus on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fter the nuclear test until Wang Yi, Chinese foreign minister, and John Kerry, U.S. Secretary of the State department, dramatically made agreements.

In the meantime, the Korea issue has been the symbol of the consensus-building efforts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However, the THAAD issue is likely to be a tipping point of changing the nature of the complex relationship. The U.S. revealed its intention to strengthen strategic competition against China in the future. This implication casts negative outlook for South Korea in which Korea issue would be handled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In this vein, China is much likely to take firm stance to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which allows the U.S. to have a strategic advantage in this region.

In this case, Korean peninsula turns into a space for the U.S.-China conflicts. In the coming future, South Korea may face a tremendous challenge in foreign policy, on the one hand, du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for the relationship with China.

Key Words: THAAD,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North Korea Nuclear Test, Sou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북한 핵개발 실태와 대외정책

문 성 목*

- I. 문제의 제기
- 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실태
- III. 북한의 대외정책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금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초강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접근방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코앞으로 다가온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 실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다. 그동안 핵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핵물질을 확보하였고,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수준은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탄두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커드,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확보했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남조선혁명노선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3대혁명역량 강화 노선 중에서 국제혁명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핵개발을 악용하고 있다. 자그들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위적 차원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연습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 관계는 물론, 대중, 대러, 대일관계 등 북한의 대외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인식을 반성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주제어: 북한 핵개발, 대외정책, 대북제재, 장거리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I. 문제의 제기

1.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2016년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시작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¹ 핵실험 직후 북한은 수소탄의 성공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나섰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진파 등의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수소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증폭핵분열탄 정도의 위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2월 7일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는 1998년 이후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역시 북한은 이를 우주개발의 대 성공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부각시켰다.

결국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을 보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왔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그동안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북한에게는 시간만 벌여준 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말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국제사회가 적극 공감하게 된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3월 3일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는 과거 세 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네 번째이다. 1945년 유엔 창설 이래 단일 국가를 향한 비군사 제재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절반 이상의 조항을 의무화(Decide)할 만큼 강도가 센 것이다.²

¹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1월 초부터 강행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금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확보를 위해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²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제재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과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해외 광물·무기·금융활동을 차단시켜 돈을 막고, 모든 물품의 운송을 감시하며,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과 물품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조봉현,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전략』, 통권 45, p. 22.

미국도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을 상하 양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6일 이에 서명함으로써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미국의 특정국가를 향한 제재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일본도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대북 송금을 차단하고 방북 인사의 일본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 역시 초강수의 대북제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을 두둔해 왔던 중국마저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정권 붕괴는 불원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기존 대북접근과 인식에 대한 새로운 결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화해협력 기조의 통일·대북정책이 과연 타당한 접근방법인 것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개성공단의 완전가동 중단이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가 나오기 전인 2월 11일 결단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개시 이후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와 같이 여겨진 상징적 존재였다. 공단의 취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 상황을 가져옴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기에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핵 실험과 네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도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중단되지 않았다. 2010년 3월과 11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포격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은 멈추지 않았다.³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정부는 완전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 제재조치를 결단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의 배경에는 결국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 통치자금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에 가장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중국 등의 호응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둘째, 대북심리전 재개이다. 대북심리전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서해충돌방지 문제를 의제로 개

³ 개성공단은 2013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잠정 폐쇄조치를 취함으로써 5개월 여간 중단된 일이 있으나, 북한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재개된 바 있다.

최하기로 한 회담 직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더욱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향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수단을 철거하는 문제도 의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기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4년 6월 15일부로 확성기방송이 중단되고, 이듬해 6월에는 확성기와 모든 수단이 철거된 바 있다. 그런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조치 당시 대북확성기를 설치하였지만, 방송은 재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직후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뼈아픈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5일 만에 즉각 방송중지를 경고하더니 10일 만에 우리 측을 향하여 포격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 최후통첩을 통해 중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24시간도 되지 않아 고위급회담을 제의해 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당시 이른 바 2+2회담을 통해 8·25합의가 도출되고 이 합의에 따라 대북확성기방송이 중단되었다.⁴ 하지만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우리 정부는 8·25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조치로 간주하고 동 합의에 따라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였다.⁵

셋째, 한미간 주한미군 사드배치문제 공식 협의를 개시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2014년 6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본국에 사드배치를 건의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⁶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른바 3NO 입장이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공식 요청도, 논의도, 결정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다가선 상황에서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이 앞선 것이다. 즉, 한중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그리고

⁴ 당초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7차 당대회 이후 부위원장으로 직함이 조정됨)는 국가안보실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김양건-김관진 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우리측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올 것을 요구하자 북한이 통일부장관도 나오라고 요구하여 황병서, 김양건-김관진, 홍용표(통일부장관) 간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⁵ 동 합의서 3항에는 비정상적인 사태(도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방송을 중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면 확성기방송을 재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조항이라 할 수 있다.

⁶ <<http://news.joins.com/article/19675813>> (검색일: 2016.4.29.).

한국 내 거주하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거주하는 자군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배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무용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판단도 한 것이다.

2. 북한의 도발행태와 의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험담을 내뱉고 있다. 거기에는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협박을 하고 나섰다. 북한은 3월 3일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직후, 300mm 신형 방사포 발사도발을 신호탄으로 스커드, 노동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진행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조치에 대해서는 자산몰수, 청산 등 극단적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는 서울과 남조선 해방작전 운운하면서 대남군사위협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심지어 핵탄두 모형 공개, 대기권 탄두 재진입 기술보유 주장, 미사일 고체연료 개발 장면 시연 등 핵·미사일 역량을 과시한 바도 있다. 김정은은 3월 15일 “핵탄두 발사실험과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4월 15일, 28일, 5월 31일 모두 네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월 23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사출 및 비행시험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도(red line)를 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무슨 이유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지 그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5월 초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김정은으로서 그의 업적을 과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7차 당 대회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의 최고업적으로 선전한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된 북한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을 든다면 지난 해 8·25합의 이후, 개최된 남북대화 결과에 대한 실망 및 대남압박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도발직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확성기방송 재개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그 목적은 일단 달성했다. 이와 함께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터 가시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25 합의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제1차 남북차관급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이에 실망하고 더 이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⁷

아울러,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무모한 도발을 선택한 데는, 그동안 북한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이번에 자기들이 핵·미사일 도발을 한다 해도 국제사회가 그리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나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방패막이를 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개시된 이후 나타난 북한의 행태의 특징과 그 속내를 살펴본다면, 첫째,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진 상황전개에 직면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제재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과 함께 도피로는 없는지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완화 내지는 무마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조치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거침 없이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둘째, 초강수 반응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300mm 신형방사포를 비롯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과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그 어떤 압박도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셋째,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위 70일 전투 및 제2의 고난의 행군, 자강력(自強力) 제일주의 및 수뇌부 결사옹위를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없도록 다잡는 조치에 매진하고 있다.⁸

⁷ 2015년 12월 11일~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차관급당국회담이 차기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회담 당시 북한 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북한은 이를 자기들의 경제적 실익 확보의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⁸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고 군자리 정신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아프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과 이은 3명의 집단탈북은 그 전조가 아닌가 판단된다.

3. 연구범위 및 중점,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 핵개발 실태와 북한의 대외정책이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금년 초 북 핵·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실태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II장에서는 북핵·미사일 개발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탄두가 경량화, 소형화, 표준화 되었는지 여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특히, 2월 초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루어 본다. 더욱이 지난 해 5월과 12월, 그리고 금년 4월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전력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해 본다.

III장에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외정책의 근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북핵·미사일 도발과 북한의 대외정책의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북한은 핵개발에 어떤 의도(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외교정책은 현재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김정은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에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인지, 여부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들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하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계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히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이 글 또한 북핵·미사일 관련 여러 논의에 대한 정리 수준이라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만, 북핵 관련 대외정책에 무게를 두어 분석해 본다.

IV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상기 일련의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의 반성, 향후 평화통일의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실태

1. 핵개발 일지

북한의 핵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개발

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당시 비확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원자로 도입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 핵무기 개발에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85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인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고, 1992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남북 간에 먼저 개시된다. 1990년대 초 남북 총리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8차례 고위급회담을 이어갔다. 이 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2개의 문건에 합의하였다. 그 한 가지 문건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이며, 다른 한 개의 합의문건은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선언)이다.⁹ 이 모두 1991년 타결하여 1992년 발효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한 이 문건들을 북한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본합의서는 물론 비핵화공동선언도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휴지로 만들었다.

1차 핵 위기는 1993년 발생한다. 핵안전협정에 의거 1992년 IAEA가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사찰한 결과, 북한의 보고내용과 중요한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이에 IAEA는 북한을 향해 강제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1993년 급기야 NPT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협상의 당사자가 남북에서 미북으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드디어 성립된 것이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이른 바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AF)를 타결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을 동결하는 조건하에 미국은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경수호가 완공되는 동안 매년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2차 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강석주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제네바합의를 이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자, 국제사회는 그동안 남북 간, 미북 간의 북핵문제 해결이 한계에 도달하자 2003년

⁹ 북한은 비핵화선언을 타결하기 원한다면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먼저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노태우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이다. 이에 한미는 주한전술핵무기를 철수조치를 하였고, 이어 1991년 11월 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부재 선언을 한다. 이후 남북간 비핵화선언에 합의하였지만, 북한의 속임수에 당한 결과가 된 셈이다.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자회담을 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도달은 난관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해 9·19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동성명에 북핵 포기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성명의 이행을 앞두고 이른 바 방코 델타 아시아(Bank of Delta Asia: BDA) 사건이 발생한다.¹⁰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성명의 이행이 지연된다. 이후 2·13합의와 10·3합의 등을 통해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 보려 했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이어졌고, 2008년 이후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표 1>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유엔안보리 제재 일지(2006년 이후)

-
- 북한, 대포동 2호 발사(2006.7.5), 유엔 안보리 1695호 채택(7.15)
 - **1차 핵실험(2006.10.9)**, 유엔안보리 1718호 결의 채택
 - 북한,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해체(2008.6)
 - **2차 핵실험(2009.5.25.)**, 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 채택
 - 장거리미사일(은하 3호) 발사, 2분 15초 만에 추락(2012.4.13)
동년 12월에 재발사 성공, 안보리 2087호 결의 채택
 - **3차 핵실험 실시(2013.2.12)**, 유엔 대북제재 2094호 채택
 - 북한, 영변 5MW 원자로 재가동 선언
 - * **4차 핵실험(2016.1.6)**, 장거리 미사일 발사(2.7),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3.3)
-

위 표에서 보듯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가 채택되었지만, 2006년 이후 북한은 네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합의를 위반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가려는 일련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 마치 핵 포기를 시사하면서 은밀하게 핵개발을 진행해 온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속아 핵개발 시간과 반대급부를 제공한 결과가 된 것이다. 사실상 유엔의 대북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하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¹⁰ 방코델타아시아는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은행으로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창구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적 제재조치의 하나로 2005년 9월 이 은행을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북한 자금을 동결했다. 당시 동결된 금액은 약 2,500만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9·19성명의 이행이 지연된 사건이다.

2. 핵능력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공신력 있는 문건은 역시 국방부가 공식 출간한 국방백서라 할 것이다. 우선, 국방백서가 밝힌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¹¹ 그동안 북한은 네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경량화나, 소형화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영변 원자로에서 수차례의 핵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하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고농축우라늄의 보유량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탄두가 얼마나 소형화되고 경량화 되었는지, 표준화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 김정은은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모형을 전격 공개하였다.¹²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운반수단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소형화는 어떤 수준을 말하는가? 대략 탄두무게는 1톤 이하, 직경이 90cm 이하가 될 경우 소형화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북한은 이 정도의 소형화는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는 700kg 정도만 되어도 탑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소형화된 탄두는 우리를 직접 공격 가능한 사거리 수준의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의 보유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북한이 기 확보한 핵물질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부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북한이 공언한 대로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개시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핵탄두 제조를 위한 핵물질의 양이 꾸준히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¹¹ 국방부, 『2014 국방백서』, p. 12.

¹² 김정은이 핵탄두라고 주장하면서 지름 60cm 가량의 은색 원형 물체를 공개, 미국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는 200~300kg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우리 정보당국은 현 상황에서 위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 핵보유국의 소형화 수준은 미국 110kg, 러시아 255kg, 영국 350kg임. <<http://www.hankookilbo.com/v/2132d9d284b74c6cbc784d9a70c38132>> (검색일: 2016.4.3.).

<표-2> 북한의 핵물질 추정 보유량

구 분	내 용	핵물질	제조가능량	탄두제조(추정)
플루토늄	2009, 2013 핵실험 후 잔량	30~34kg	-	6~8개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2곳 운영시	무기급 농축 우라늄 240kg	22개	15~16개
	1곳 운영시	100kg	15개	10~11개

 자료: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¹³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은 수소탄 실험의 성공으로 주장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정보당국과 대부분의 핵문제 전문가들은 수소탄 실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3. 미사일 능력

북한 미사일 능력의 경우도 우선,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미사일 관련 기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¹⁴ 북한은 1970년대부터 중국의 도움을 받아 탄도미사일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우방인 이집트, 이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거리 300km의 SCUD-B, 사거리 500km의 SCUD-C를 작전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일본까지 도달 가능한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배치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는 대포동-1호, 2006년에 대포동-2호를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은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까지 6차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¹³ 이 자료는 연합뉴스 반종빈기자가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자료 인용 그래픽 기사를 재 정리한 것임.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60309000600044&input=1363m>> (검색일: 2016.4.3.).

¹⁴ 국방부, 앞의 책, p. 12.

<표-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경과¹⁵

횟수	발사일자	발사미사일	발사결과
1	1998.8.31	대포동1호(광명성1호 탑재)	발사실패(3단 분리 실패)
2	2006.7.5	대포동2호(위성탑재 미상)	발사실패(발사 40여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
3	2009.4.5	은하2호(광명성2호 위성 탑재)	발사실패(3단 분리 실패, 3,800km 비행)
4	2012.4.13	은하3호(광명성3호 위성 탑재)	발사실패(1단 분리 실패, 460km 비행 공중폭발)
5	2012.12.12	은하3호(광명성3호 2호기 탑재)	발사성공
6	2016.2.7	광명성(은하3호 개량형), (광명성4호 위성 탑재)	발사성공(엔진성능 향상, 로켓탑재증량 증가)

여기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연 탄두 재진입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정은은 지난 3월 15일 탄두 재진입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그 실험장면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⁶ 다만,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Scud)나 노동 등 단거리 미사일 탄두의 재진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역량에 있어 또 다른 한 가지 관심은 과연 북한이 미사일 연료 고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이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연료의 고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3월 29일에는 미사일 연료 고체화 실험 장면을 공개하면서 큰 발전이 있음을 과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현 실태를 보면, KN-01 등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SCUD 이상 미사일은 액체연료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 연료가 고체화로 전환 성공시,

¹⁵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207143649341>> 기사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검색일: 2016.4.2.).

¹⁶ 국방부 대변인은 재진입기술이라고 하면 탄소복합소재 기술, 삭마기술이나 종말유도기술을 의미, 이는 시험발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북한이 아직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 <<http://news.joins.com/article/19724672>> (검색일: 2016.4.2.).

기습효과 및 사거리 연장 가능성에 유의하여 대처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4월 23일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수중사출시험 장면을 공개하였다. 당시 함침은 사거리가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최소 사거리인 300km에 크게 못 미치기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해외 민간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¹⁷ 북한 SLBM 기술의 진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미 항공우주연구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John Schilling) 연구원은 이날 미 북한 전문웹사이트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SLBM이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전을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2020년경에는 실전 배치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도 북한이 3~4년 내 SLBM 전력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¹⁸

4. 평가 및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 핵·미사일 역량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협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① 핵물질 지속 확보, ② 소형화, 경량화 상당부분 달성, ③ 장거리 탄도 미사일 재진입기술 확보 노력 중, ④ 중장거리 미사일 고체연료화 시도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은 아직 미달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에게 직접 위협이 되는 단·중거리 미사일은 실전배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SLBM도 수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비책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김정은이 공언한 바대로 추가핵실험에 나설 것인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 창구에 복귀할 것인가?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은 국면전환용 대남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¹⁹

¹⁷ <<http://news.donga.com/3/all/20160427/77799574/1>> (검색일: 2016.4.30.).

¹⁸ <<http://www.frontiertimes.co.kr/news/htmls/2016/03/20160331120859.html>> (검색일: 2016.4.2.).

¹⁹ 현재로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선 중국이 북한의 주장을 옹호 두둔하고 있는 측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든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기존 주장의 반복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신으로 대화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III.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근간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핵관련 북한의 행태를 감안할 때, 소위 ‘남조선혁명 완수’를 위한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은 1964년 남조선혁명을 위한 소위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발표했다.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 내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정치적 역량과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역량이란 북한 인민들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혁명역량 강화”는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요약된다. 즉, 용공세력과 반정부 세력 이른 바 친북좌파운동의 투쟁을 고무 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혁명역량 강화란,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의 인민들과 유대 강화, 자본주의 국가 내 좌파 노동운동세력과 단결, 전 세계 반제평화애호세력(국제공산세력) 지원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산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그들의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이란 바로 이 국제혁명역량 강화전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²⁰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도 이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여진다. 즉,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대남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관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남적화전략목표 달성을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근간을 기초로 북한은 그동안 대외정책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²⁰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서울: 통일교육원, 2010), pp. 14~18.

2. 북핵 관련 대외관계 추이 및 전망

가. 남북관계는 당분간 복원 어려움

이 글에서는 대남관계도 북한의 대외정책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92년, 비핵화선언을 미끼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를 성사시켰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를 통해 핵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²¹

그동안 북한은 남북협상 과정에서 “핵문제는 남북 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논의를 회피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긴장의 근원인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불순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도구로 남남갈등 유도하였다. 심지어 북한 핵은 남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며 동족을 향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도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북한은 핵문제를 이용하여 대북지원 확보와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협상지렛대로 악용해 왔다. 7차 당대회 이후 대남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북중 관계 회복도 미지수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부터 북중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2년 북한은 미국과의 2·29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해 12월에 다시금 쏘았다. 그리고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중국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였다. 거

²¹ 당시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포함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과 수교를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관계였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상황에서 우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에 젖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핵화선언과 기본합의서를 타결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한미연합연습은 워스퍼리트연습 잠정 중단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 합의서 내용도 북한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의 정확한 속내를 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남북관계를 정치적 업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자세가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기에다 그해 12월에는 북중 관계의 가교역할을 해 왔던, 이른 바 중국통인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것도 북중 관계를 냉랭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2015년 10월, 북한의 노동당 7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관계 전환을 기대하였다. 그해 말인 12월 김정은이 아끼는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을 통해 관계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북한 측의 일방적인 철수 조치(12.15.)로 문턱에서 다시금 악재가 된 것이다. 거기에서 김정은은 중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모란봉악단의 철수가 계기가 되었다는 설을 제기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확인된 것은 아니다. 특히나 북한은 지난 2월 초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가 방북한 직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은 중국이 주재하는 6자회담 합의도 파기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미·북 양자차원의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개입하면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6자회담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기대마저 무산되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중국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지 요구도 무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막가파식 행보는 중국이 결코 북한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제 중국의 인내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견해가 일치한다. 따라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전면적이고, 적극적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²² 다만, 대북제재 일변도에는 반대 입장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 주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핵 개발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왜

²²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28일,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이웃으로서 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의 전면적 집행을 선언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부터 한반도 긴장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위해 거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hei.hankyung.com/hub01/201604293760I>> (검색일: 2016.4.29.).

그렇까? 북한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일까? 확인 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북핵문제 미진 시, 자기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그랬다는 식의 책임 전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²³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면, 우선, 6월 초 리수용의 방중이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여부이다. 시진핑주석은 리수용 일행을 접견하고 북중 전통적 우호관계를 과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관계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중국이 스스로 공언한 바대로 대북제재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이다. 그동안의 전례를 감안한다면 초반에는 실행하는 시늉만 내다가 유야무야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지 여부가 북중 관계를 갈음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6자회담 호응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북한의 입장은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²⁴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면전환을 목적으로 중국이 제시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논의 등 조건으로 회담에 복귀할지? 아니면 다른 모종의 딜(deal)을 시도할지 그 가능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 북미 관계

북한에게 미국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북한의 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다.²⁵ 북한은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 해결은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 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즉, 적대시 정책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것은 한

²³ 즉,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북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 경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임을 전가할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²⁴ 북한은 4월 30일 발표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9·19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됐다.”고 주장하면서, “핵은 자주이자 존엄이고 생명”이라며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북한입장을 감안 시 당분간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는 것이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2207&ref=A>> (검색일: 2016. 4.30.).

²⁵ 김일성이 6·25전쟁을 실패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대남적화전략을 위한 제2의 6·25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한미동맹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원수요.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국이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이 없기에 평화협정 당사자도 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²⁶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²⁷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무실화 조치가 이어졌다. 급기야 2013년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한이 잇단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군사적 긴장 고조,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서해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집요한 도발을 기도하면서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도 그 연장 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 그 어떤 평화협정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진정한 행동이 수반된 비핵화 조치가 대화의 선결조건이다. 아울러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논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 향방에 따라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향후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쿠바와도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란도 제재를 피해 핵을 포기하고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였다.²⁸

라. 북러 관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추후 북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중국에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에는 언급했

²⁶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에 참전하였고,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참전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이다. 이후 1954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제네바평화회의에 한국도 당사자로서 참석했고, 1996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네바 4자회담에서 당사국으로 참여하였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도 남과 북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동시에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이다.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서울: 통일부, 2005), 본문 인용.

²⁷ 그 이전에는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해왔다. 김일성의 생각이 바뀐 것은 1973년 미국과 월맹, 월남, 베트남이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주월 미군이 철수한 직후 공산월맹이 무력으로 자유월남을 공산화시킨 것이 자극제가 되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은 역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²⁸ 존 케리 국무장관은 금년 6월 초 북경에서 열린 제8차 미중전략경제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북핵 문제를 이란의 모델과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²⁹

러시아 입장에서조차 북한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의 동병상련의 결과일 수 있다. 거기에다 푸틴대통령의 시베리아를 포함한 동부지역 개발을 강조하는 생각과 연관되어 보인다. 중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지난 3월 3일에 합의된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채택과정에서 러시아는 끝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입장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른 바 북한에 대한 성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에서 러시아도 피해갈 수 없다. 지금의 북한이 존재하게 된 근본책임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뒷배를 보아준 나라도 러시아다. 따라서 러시아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의존도가 중국에 비해 그리 크지 않고, 러시아가 처한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마. 북일 관계

한때, 북한과 일본은 양자 간 필요에 따라 접촉이 전개되어왔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 한다. 아울러 한일, 미일관계의 간극을 벌여놓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아베의 공약대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다각적인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진다.³⁰

하지만 북 핵실험 등으로 지금은 중단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²⁹ 일본 교도통신은 4월 18일 복수의 일본 소식통을 인용, 지난 3월 경 북한 고위급 관리가 러시아를 방문, 외교 관계자들과 핵문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들의 전투능력을 경시하고 있다. 놀라게 될 것이다. 당대회 개최 전에 고도의 전투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고도의 전투능력’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5월 열리는 당 7차 대회에서 핵·미사일 보유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92>> (검색일: 2016.4.30.).

³⁰ 2015년 8월에는 북한과 일본간의 다각적인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북일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http://www.ytn.co.kr/_ln/0101_201508120504544454> (검색일: 2016.4.30.).

같이 일본은 금번 북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재개하였다. 결국,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이 바라는 바, 대일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 유엔 및 기타국가 관계

북한은 유엔을 자기들의 입장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³¹ 즉, 북핵 개발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방어하면서, 한미연합연습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당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을 방문하여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며,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³²

북한은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아프리카 등 친북 국가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³³ 벨기에 등 테러 발생 시에는 조의를 표명하는 등 마치 북한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이미지 선전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강력하다. 필리핀은 수빅만에 입항한 북한 선박 진태호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였고, EU도 별도의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북한 외교관을 추방시키고 이집트도 외교활동을 하지 않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였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을 선포하는 등 그동안 북한에 전통 우방국들도 북한과 등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해 유엔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로잡는 길이다.

³¹ 외무성 대변인, 4월 2일 한미연합연습 관련 유엔안보리 긴급이사회 소집 요구를 유엔이 외면했다고 비난,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주권 존중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고 안보리가 이를 외면하는 한 정당한 자위적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04/02/1801000000AKR20160402062500014.HTML>> (검색일: 2016.4.3.).

³² 북한 외무상이 매년 유엔의 정기회기인 9~10월이 아닌 기간에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 서명, 지속가능의제를 다루는 실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건재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과 제재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차 당대회 이후 리수용은 국제담당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³³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난 2월 라오스를 방문하여 추말리 시야손 대통령과 싸이나손 주석을 예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은 캄보디아의 훈센총리의 방북초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46757>> (검색일: 2016.4.30.).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북한의 핵물질 확보와 핵탄두 소형화 등 그 역량은 큰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점검하였다. 미사일의 경우도,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탄두 재진입기술의 경우에도 단거리인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의 경우는 문제가 없고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3~4년 이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다.

금년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동안 국제사회의 핵문제 해결 노력의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국제사회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시간만 벌여 준 꼴이 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기에 이르렀다.³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화해협력이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정권의 변화가 긴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보다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金正은의 선행 변화를 강요하기 위한 초강수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는 유엔이 만들어진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과 국제사회는 각각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발효시킨 대북제재법안 또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이번에는 말로 김정은의 돈줄을 말려 그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³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을 향한 제재조치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두둔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안보리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이 앞장서 완전한 이행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줄곧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0mm 신형방사포를 시작으로 스커드, 노동, 무수단,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도 발을 자행하고 있다. 김정은은 직접 핵탄두모형을 꺼내들고 흔들며 남조선 해방, 워싱턴 불바다 등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추가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다. 북한을 달래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라 하더라도 호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있다. 이는 제재의 문턱에 막 들어섰는데 출구로 나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앞으로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는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 여하에 달려 있다. 제재의 효과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한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우리 턱밑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우리는 북한에 핵 인질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가 분명히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북핵 인식과 접근에 대한 반성 필요³⁵

북한의 핵위협이 코앞에 이른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가져왔던 인식과 접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김정은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인식을 바꿔야 할지? 어떤 접근이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북한 체제와 정권이 불안하기에 곧 무너질 것이고, 그렇기에 북한 핵은 위협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곧 무너질 것인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가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장애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북한 핵은 외교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물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화만의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

³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핵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안보전략』, 통권 43, p. 5.

계에 봉착했다. 강력한 제재의 방법이 수반될 때 진정한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우리를 향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북한이 동족을 향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 스스로가 민족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고, 적어도 동족인데 사용할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을 사용한다면 공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북핵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재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서울과 청와대를 향해 언제라도 핵을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북핵은 우리가 맞닥뜨린 위협이다.

넷째, 북한 핵은 국제공조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즉, 핵문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남적화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즉, 우리를 직접 겨냥한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북한이 각종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핵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남북간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회피해 온 것이 우리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금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전에 개성공단의 완전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적절하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선순환 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남북 간 보다 많은 대화와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한다면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이 희석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그동안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하고 총리급회담을 비롯하여 회담 수백 회, 합의한 문건도 수백 건이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1970년대 남북당국간 회담이 개시된 그 시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근본 원인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회담에 호응하기는 했지만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사례가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수억 불의 외화가 유입되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제대로 순기능

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가야 할 급여가 김정은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 통치자금이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의 인식이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대화가 열린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는 대화 재개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끝으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어떤 조치도 적극 취할 수 없다. 그 어떤 조치로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노력하는데 따라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 북한은 독특한 상황이라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김정은정권이 핵을 가지고 망할 것인가? 핵을 포기하고 생존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도하는 변화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변화 강요 필요³⁶

위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인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주 당사자는 우리이며 그런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용한 수단들은 무엇일까?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심리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지난 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도발 당시 우리 군은 11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의 반응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북한 핵을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북 심리전은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비대칭전력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정보와 진실을 확산시켜야 한다. 확성기 뿐 아니라 전광판, 그리고 2000년 6월 중단했던 전단과 물포작전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아울러 TV나 라디오의 경우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송출하는 방안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 제기하여 김정은 정권을 흔들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왕조 정권 유지의 희생양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³⁶ 위의 글, p. 6.

유린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북한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 소식이 북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뿐 아니라 동질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북한 핵무용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선제타격 수단을 확보하여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이를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다.

끝으로, 김정은 통치자금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양자차원의 제재를 통해 안보리제재조치의 구멍을 촘촘하게 메워야 한다. 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문제는 이번 안보리제재 결의에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국들과 협조하여 북한 해외근로자를 인권문제화하여 관련국들로 하여금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김정은의 돈줄을 마르게 해야 한다.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통치자금이 필요하다. 돈줄이 마르게 되면 그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조치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도 되고 있다. 이번에는 말로 북한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핵문제를 해결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내부의 단합이 관건이다.

■ 접수: 5월 2일 ■ 심사: 5월 17일 ■ 채택: 5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부. 『남북합의서』. 서울: 통일부, 2005.

2. 논문

- 문성목.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대안.” 『전략연구』. 제21권, 2014.
———.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전략연구』. 제22권, 2015.
조봉현.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전략』. 통권 45, 2016.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핵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안보전략』. 통권 43, 2016.

3. 기타 자료

- 『노컷뉴스』.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통일뉴스』.
『프론티어타임스』.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KBS』.
『YTN』.

Abstract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Its Foreign Policy

Seong-Mook Moon

The strongest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s continuing unleashed by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and long range missile launch in 2016. This is resulted from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solved by existing resolution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is ahead of upcoming crisis situation to us. In this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nd also analyze its foreign policy a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should be correctly considered.

We cannot verify exact capabi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t can only be assumed that North Korea secured considerable amount of nuclear materials through erstwhile nuclear tests and developed miniaturization and weight reduction of the nuclear warhead.

While in case of long-range missiles, it seems not to seize re-entry technology of the nuclear warhead yet, but to reach a level to load them in the Rodong missiles. As a result, we need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on the assumption that North Korea has secured the capability to directly strike us.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eems to be related to South Korea revolutionary line. Among three revolutionary lines, it is abusing the nuclear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volutionary capabilities. North Korea insists that its nuclear development is just a means of self defense against US hostility against it and in order to re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North Korea-US peace treaty should be signed, US Forces in Korea should be withdrawn, and ROK-US combined training should be discontinued. Nevertheless, US demands denuclearization prior to all other options.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not only with South Korea but also China, Russia, Japan and so on are on the skids.

South Korea is directly connected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 should realize the error of our understanding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o all our best to induce its regime change.

Key Word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Foreign Policy, Sanctions against Pyongyang, Long Range Missile, and Miniaturization of Nuclear Warhead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시열* · 최나빈**

- I. 서론
- II. 남북 저작권 교류상 교섭력 문제
- III. 소비에트 VAAP와 해외 이용자의 대응
- IV. 교섭력 문제의 대응방안
- V. 결론

국문요약

최근의 검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 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 확대에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

으며,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이 갖는 협상상의 지위는 절대적이어서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북측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공세보다는 우선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과도한 경쟁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및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 저작권, 저작권사무국, VAAP, 소비에트, 저작권 이용계약, 교섭력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I. 서론

2010년의 5·24조치 이전까지 남북교역 규모는 약 연 7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¹ 이러한 흐름은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² 채택 이후에 보다 가속화되어 왔다. 남북 간 교역은 주로 북측의 특정 행위가 남북의 상업적 교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남북의 상업적 교역이 북측³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⁴ 즉, 북측의 비우호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일방적으로 남북 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분야는 1988년 7월 19일 월북작가 작품들의 해금조치 이후 서적, 음반,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들을 북측으로부터 남측에 반입 및 활용하고 있다.⁵ 특히 2004년 북측의 내각 산하에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어 저작권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총괄하게 되고, 남측 역시 2005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북측의 저작물을 위탁·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점차 북측 저작물을 남측 내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인 북측은 사실상 국가기관인 저작권사무국에 의하여 저작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측에서 저작권 행사의 주체는 창작자 개인이 원칙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허락계약 등의 주체

¹ 사실상 남북교역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5·24조치 이후의 남북교역은 그 규모가 2011년 1,622만 달러, 2012년 991만 달러에 불과하여 사실상 거의 모두 중단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석,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32~33.

² 정식명칭은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1991년 12월 13일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하여 1992년 2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외에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년), 「6·15 남북공동선언」(2000),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합의 성과를 문화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남북 문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영정,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원칙과 방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2015. 6. 12), pp. 4~6.

³ 남측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를 지칭하는 공식명칭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남측’으로, 후자를 ‘북측’으로 약칭하여 기술한다.

⁴ 이석, 『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실증적 평가와 시사점』(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57~68.

⁵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2009), p. 247.

가 된다. 이와 같은 남북 간 저작권 거래 주체의 불일치는 현실에서 양 주체간 교섭력⁶의 차이를 초래하며, 남측의 이용자들은 북측과의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측의 저작물을 남측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먼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시 발생하는 교섭력 차이 문제를 법적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전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련된 사례를 살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여, 우리가 북측과의 저작물 교류 시 교섭력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⁸

II. 남북 저작권 교류상 교섭력 문제

1. 북측 저작권법상 권리행사 주체

가. 저작권의 귀속

북측 저작권법은 그 체계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민법의 특별법인 남측의 저작권법과 달리 북측의 민법은 공법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⁹ 저작권법을 과연 민법의 하위 법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북측의 저작권법이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¹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남측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법 적용의 최고 지도원리이자 초헌법적 규범인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이념이 저작권법의 해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¹¹ 출판·공연·방송이 금지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불인정(북측 저작권법 제6조), 저작권 보호기간을 발표시점부터 개시하도록 한다는 점(동법 제23조), 저작물이

⁶ 이때 교섭력은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⁷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제11집 (2002), p. 107.

⁸ 다만,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북측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3831호에 의하여 제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⁹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북측에서 민법은 본질상 계획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에 관한 규범 역시 계획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분과』 (2012. 6. 27~28), p. 115.

¹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2001. 4. 5. 최고인민회의의 채택) 제1조.

¹¹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p. 105.

용료를 국가에 의한 가격제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동법 제31조), 저작재산권의 국외양도는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점(동법 제21조) 등은 북측의 저작권법이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법제도로써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¹² 북측의 법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하, ‘소비에트’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체계가 별도의 법률로 존재하였으나, 점차 국가에 의한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가 상당히 저하되어,¹³ 1961년 저작권법 개정 시 민법전에 저작권에 관한 장(章)을 됴으로써 저작권법을 민법에 편입시킨 바 있었다.¹⁴ 이러한 점이 일정 부분 북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북측 저작권법은 일정부분 사권(私權)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¹⁵ 등을 고려하면 성격상 민법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체계하에 북측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며(북측 저작권법 제13조),¹⁷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에 귀속한다고 명시(동법 제16조 전단)하여 권리의 개인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⁸ 한편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기업·기업소·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업·기업소·단체가 저작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후단).

그런데 북측 저작권법은 사회주의적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창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출판·발행·공연·방송·상영·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는다(북측 저작권법 제6조).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출판·발행 등이 불허되는 것이라 하

¹²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78;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7호 (2015), p. 196 등.

¹³ 김상호, “소련 저작권 제도의 해설 -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계간저작권』, 1990년 가을호 (1990), p. 70.

¹⁴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79.

¹⁵ 물론 일부 사권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보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국가적 이익과 일치될 때 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¹⁶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p. 115.

¹⁷ 이러한 개념은 저작자를 창작자 중심으로 보지 않고 저작권을 승계한 저작권자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개인과 단체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례를 염두한 것을 이유로 본다. 박중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1호 (2011), p. 95.

¹⁸ 사회주의 헌법 제24조에 의하면, 북측에서의 개인소유는 개인적이고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다.

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여부와는 구분되는 남측 저작권법의 경우와 구분된다.¹⁹ 둘째, 저작권의 대상을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으로 과학성·객관성 및 현실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8조). 이와 같이 저작물에 권리를 부여함에 따른 높은 제한은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을 저작물의 보호 대상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²⁰

북측의 저작권 소유체계에 대한 평가는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는 북측 저작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인 창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며, 집체창작만이 아니라 개인 명의의 작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²¹ 즉, 사유재산으로써 저작권의 개인 소유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측에서의 창작은 개인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적인 창작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²²에 소속된 정맹원인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창작자는 될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저작권자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일부 개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극히 드문 것으로 본다.²³ 사건으로는 창작활동에 있어서 소위 ‘집체창작’²⁴이라는 개념하에 저작물을 만드는 북측의 특성과 저작권의 보호를 사인의 권리보호적 관점보다는 체제와 혁명과업을 위한 관점에서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자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우리가 접하는 단계에서 개인 창작물로 보이는 작품들이 존재하긴 하더라도 북측의 내부적 권리관

¹⁹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

²⁰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205.

²¹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90.

²² 소속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이 있으며 북측의 모든 작가 및 예술인들은 반드시 문예총과 그 소속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²³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77;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205;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 234.

²⁴ 집체창작이란, 다른 모든 부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체적 지혜의 의거하면,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할 수 있는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성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북측의 노동당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을 많이 창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 시 집체창작조는 함께 모여 구성 및 구상을 하며 그것을 해당 참가 인원의 수대로 나누어서 창작시켜 초고를 만들고, 이를 집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저작물을 완성시킨다.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p. 234~235.

계상 진정한 개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 등의 이름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저작권은 국가소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권리주체의 저작권 행사

북측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개작·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북측 저작권법 제26조).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가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동법 제29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요금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동법 제31조).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저작물이용요금은 당사자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한다는 것과 저작물이용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일종의 표준계약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진다는 특징이 있다.²⁵ 먼저 저작물 이용요금을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는 것은 저작물이용계약을 사인간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보기보다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소비에트 등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그리고 저작권의 개념을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북측 저작권법의 태도로 볼 때²⁷ 거래의 내용을 국가가 정한다는 점은 그 내용을 저작권사업의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한정할 것임이 앞서서와 같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²⁵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94.

²⁶ 박중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 97.

²⁷ 조수신, “남북한문화교류상의 저작권협력문제에 관한 일고찰 - 출판·음반·영상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00 봄철 정기 학술 발표대회』 (2000), p. 356.

다. 저작권 관리규정과 저작권사무국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와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저작권보호정책 집행을 위한 기본담보라 한다(동법 제41조).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북측 저작권법 제42조). 북측에서 저작권에 대한 업무는 정무원 문화예술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및 과학기술지도기관은 내각인 정무원 문화예술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및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으로 작용하며(동법 제45조), 이들은 내각이 승인 시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동법 제43조).

이러한 체계하에서 북측은 저작권사업을 효과적으로 지도 및 통제하기 위하여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및 과학기술지도기관은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북측 저작권법 제43조 및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해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 시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동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04년 4월부터 저작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²⁸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출판지도국 판권처에서 저작권사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3년 베른협약 가입 이후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저작권 업무를 담당할 국가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저작권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인 저작권사무국을 내각 산하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²⁹ 저작권사무국은 북측의 저작권사업 전담 행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³⁰

저작권사무국은 외국 출판사가 북측 출판사 등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심의 및 승인하고, 저작권 분쟁을 중재 또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북측의 저작권이 외국에서 침해, 훼손되는 사례들을 감시 및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³¹ 남측을 포함한 대내외적으로 북측의 모든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있다.³²

²⁸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2009), p. 127.

²⁹ 위의 글, p. 127.

³⁰ 위의 글, p. 140.

³¹ 한지영, “북한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2008), p. 103.

³² 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2008. 7), p. 31. 아울러, 2005년 3월 21일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하여 남측 통일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

이러한 저작권사무국의 설립은 복측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당사자는 물론 저작권 승계자와 관련된 문제, 공동 저작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 주체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여 남북이 합법적인 저작권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³³

2. 남측 저작권법상 권리행사 주체

가. 저작권의 귀속 및 행사

남측의 저작권법 역시 민법의 영향을 받는다. 민법은 3대 원칙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으로 3대 원칙을 보완하고 있다.³⁴ 이러한 민법의 체계 하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 규정(남측 저작권법 제2조 제2호)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동법 제10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동법 제10조 제2항)고 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그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저작물이 성립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다만 업무상저작물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인 종업원이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 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 그 사용자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성질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보통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

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라고 통지한 사항은 결국 남북 저작권거래에 있어서 북측의 유일한 협상창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통일부 2005. 4. 19일자 보도자료(남북 저작권 교류 절차에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반영) 참조.

³³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p. 122.

³⁴ 광운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I)』, 제8판 (서울: 박영사, 2012), pp. 37~46.

사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게 할 수 있다.

즉, 남측의 저작권법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 소유를 기초로 하고, 정당한 저작권 거래는 저작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민법의 수정된 3대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남측 저작권법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³⁵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는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자와 그 위탁을 받는 저작권관리단체 사이의 법률행위와 그 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에 행해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그 위탁의 내용이 저작권 이용의 대리, 중개 또는 신탁행위의 형태로 행해지며,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저작권관리단체 사이에 그 관리단체가 징수하는 당해 저작권의 이용료 중 권리자에게 지급된 분배금액과 관리단체가 얻는 보수액이 결정되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저작권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는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하여 이용자는 그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관리단체는 저작권 이용에 대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태의 계약을 피하여야 한다.³⁶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1986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916호로 이루어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남측 저작권법 제78조). 이에 근거하여 198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업을 허가받아 시작한 이후 현재 12개의 신탁단체³⁷가 존재하며, 600여 곳의 대리중개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하여는 남측 저작권법 제105조 내지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의 대상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³⁵ 이해완,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2012), p. 748.

³⁶ 위의 책, p. 748.

³⁷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언론재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있으며,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해당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이들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의미하며, 저작권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³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 대리중개의 대상 역시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해당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이들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해당 권리를 가진자를 위하여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다. 남북 저작권 교류 체계 현황

남측 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수행하는 곳으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⁴⁰과 그 산하의 ‘(주)남북저작권센터’⁴¹가 있다. 북측의 저작권 사무국은 2005년 남측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 희망자와 북측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저작권 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북측 저작물이 남측에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산하 ‘(주)남북저작권센터’를 통하여 교류되고 있다.⁴²

다만,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남측에서 북측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저작권료⁴³가 북측으로 전달될 수 없어 남측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주)남북저작권센터가 2014년 현재 위임받

³⁸ 포괄적 대리에 관한 규정은 2007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당시 신설된 사항으로써, 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신고의 대상인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대상에서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포괄적 대리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법률상 문구 자체만을 볼 때는 포괄적 대리가 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중개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으나 이는 대리중개를 신고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고, 이를 신탁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근거가 부족하여 포괄적 대리업이 허가의 대상인지 혹은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2007년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창작과 권리』, 제54호 (2009), p. 101.

³⁹ 이해완, 『저작권법』, p. 759.

⁴⁰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제426호.

⁴¹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제468호.

⁴² 남북 간 저작권 교류체계의 자세한 현황 및 구조는,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pp. 105~112 참조.

⁴³ 한 예로 홍석중 작가의 소설인 “입적정”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남측에서 출판한 것에 대해 15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았다.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11일(“남-북, 첫 저작권 계약 맺었다.”).

은 북측 작가의 저작권은 2009년에 맺은 10명이 전부이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추가적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⁴⁴

3. 교섭주체의 불균형 문제

북측에서 남측과의 저작권 거래는 저작권자(창작자 개인인 공민 혹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및 그 산하단체가 된다.)의 이용허락과 함께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저작권사무국의 역할 및 성격에 따라 이러한 체계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갖는다. 저작권사무국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북측에서 저작권사무국에 관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처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소개’하거나,⁴⁵ ‘북한 내의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장악·관리하는 국가기관’⁴⁶ 등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은 저작권사무국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개인인 저작권자의 의미가 남측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다소 의문이 있다. 일단 북측의 저작권법이 형식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사적소유 및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고는 보이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이 과연 창작자 개인의 재산으로서 기능 및 인식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남측에 유통되는 북측 저작물에 저작권자로 보이는 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작한 사람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북측 정부,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사무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북측노래 ‘반갑습니다’가 남측 영화 ‘간 큰 가족’에 삽입됨에 따라 해당 곡의 작곡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작곡가가 “당(조선노동당)이 생활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뭐 하러 남조선 괴뢰정부에 내 노래를 팝네까? 일 없습네다.”⁴⁷라고 답하였던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는 한 예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저작물이 국가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인에게 창작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북측의 저작권법 체계 및 대외적 현상 등으로 인하여 오해할 수 있으나, 실상은 저작권사무국이 권리행사의 실질적

⁴⁴ 『동아일보』, 2014년 6월 18일(“재발간 백석 시집, 저작권 계약 맺고 先인세까지 냈지만…”).

⁴⁵ 『조선중앙TV』 보도내용, 2008년 12월 7일.

⁴⁶ 『조선신보』 보도내용, 2009년 11월 29일.

⁴⁷ 『오마이뉴스』, 2005년 10월 14일(“왜 내 노래를 남조선 괴뢰에 팝네까?,”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51014115413669>).

인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권능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통제된다는 점, 이용허락 비용이 정해져있다는 점, 국가나 산하단체에 권리가 사실상 독점되어 있다는 점⁴⁸ 또한 내용상 저작권집중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⁴⁹ 등의 사실은 각 저작권자 개인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저작권사무국이 사실상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독점적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⁵⁰

반면, 남측의 경우에는 북측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권리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된다. 즉, 저작권 계약은 철저히 사인간의 영역으로서 국가의 개입이 미치지 않으며, 북측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연히 저작권자 개인(민간)이 계약의 주체가 된다.

결국 저작권 계약(특히 북측 저작물의 남측 내 이용을 위한 허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은 사실상 국가가 협상주체로 역할을 하는 반면, 남측은 이용자 개인이 협상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구도는 교섭(협상)에 있어서 이용자인 개인에게 매우 불리한 지위를 가져온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남북의 상황에서 현재의 저작권 교류 구도 즉, 국가와 개인으로 대립되는 계약당사자 구도는 북측의 비우호적 행위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활성화 저해 요소 발생에 취약하게 된다. 이에 남측 이용자들이 북측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권을 얻기 위해 상호 과당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때에는 북측 당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북측 당국과의 관계에서 잘못 보일 것을 두려워 자신들의 의도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⁴⁸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 255.

⁴⁹ 조수신,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북한실태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논문집』, 제5권 (서울: 통일부, 2001), p. 221.

⁵⁰ 저작권사무국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남측에서 북측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대외 창구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는 ‘조선목란비디오’,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등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이다. 남측의 저작물 이용자는 북측의 이러한 기관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측 중개인들이 제3국인 일본의 ‘서해무역’이나 중국의 ‘심양고려민족문화연구원’과 같은 중개상사를 통하여 북측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창구가 매우 복잡해지고 이로 인한 계약당사자 확정의 어려움, 높은 저작물 이용료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김명기,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pp. 83~84.

등⁵¹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시 교섭력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⁵² 또한 남북 간 교역 등 관계구축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이므로 결국에는 양 체계의 법제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장의 틀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계약들은 제도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어려움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⁵³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는 아니며, 구조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법체계를 채택하는 국가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체계를 채택하는 국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소비에트에서도 저작권 단체(이하, ‘VAAP’라 한다.)⁵⁴가 타 국가의 구성원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타 국가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교섭상의 우위를 발휘하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⁵⁵ 교섭력 차이에 대한 문제가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과 사회주의 체제로서 공통점이 많은 소비에트의 VAAP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⁵⁶ 남북간 교섭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⁵¹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107.

⁵² 이 문제에 관하여 남측에서는 일부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으나 북측의 경우에도 계약의 주체가 국가 자체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기관인 사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저작권 계약은 사인간 해결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을 가진 바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 사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안)』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pp. 41~42.

⁵³ 물론, 이는 남북의 제도통합이 남측의 시장경제제도와 등가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일반적인 전제에 따른 것이다. 남북간 경제제도의 통합에 관하여는 이석,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pp. 35~37 참조.

⁵⁴ VAAP(Vsesoiuznoe agentstvo po avtorskim pravam; Всесоюз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авторским правам, ВААП).

⁵⁵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p. 107.

⁵⁶ 최경수,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 『방송연구』 (2001), p. 96.

III. 소비에트 VAAP와 해외 이용자의 대응

1. 소비에트 저작권법상 VAAP

가. 소비에트 저작권법 개괄

소비에트에서 저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는 1961년의 소비에트 민법의 기본 원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대륙법적 개념을 채택하여 단순히 재산권 권리 자체보다 저작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⁵⁷ 이러한 개념적 배경하에서 소비에트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1991년 소비에트 해체를 전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1991년 소비에트 해체 이전까지의 저작권법을 배경으로 VAAP를 살펴본다. 특히 UCC 가입 전의 VOUAP와 달리 국제적 체제를 포함하는 VAAP 체계가 현재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의 모델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70년대 소비에트의 저작권 관련 제도적 구조를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

1925년의 제정과 1928년의 2차 개정 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소비에트 저작권법⁵⁸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종업원에 의하여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를 창작한 종업원이 저작권을 소유한다.⁵⁹ 즉,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소비에트 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과 같은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⁰ 또한 인격권의 보호도 이루어진다. 셋째,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는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된 창작적인 작품만이 가능하며,⁶¹ 그 보호기간은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짧게 인정되었다.⁶² 넷째, 저작권 부여가 가능한 작품은 소비에트 내 시민의 작품과 소비에트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외국 작가의 작

⁵⁷ Igor Pozhitkov, "Author's right and neighbouring right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Entertainment Law Review*, 5(4) (1994), pp. 124~125.

⁵⁸ 소비에트 저작권법 형성의 연혁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William Scott Goldman, "Berne-ing the Soviet Copyright Codes: Will the U.S.S.R. Alter Its Copyright Laws to Comply with the Berne Convention?,"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8 No. 3, Article 4, pp. 399~401 참조.

⁵⁹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with Soviet Authors: The Role of VAAP,"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 421, 1991, p. 438.

⁶⁰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raeger Publishers, 1978), p. 53.

⁶¹ *Ibid.*, p. 53.

⁶² *Ibid.*, p. 60.

품으로 제한되었으며, 만일 미출간된 경우에는 소비에트 영토에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었다. 다만, 1973년부터는 해외에서 처음 출판된 해외 저작자의 작품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되었다. 다섯째,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용대상 목록에 한정되어 인정되어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저작권의 이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저작자들의 수입을 통제하였다. 여섯째, 소비에트 저작권법은 1973년까지 번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973년부터는 번역의 자유로운 허용이 폐지된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고립화된 형태의 체제를 유지하던 소비에트는 1973년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함으로써 그 고립을 종료하였으며, 페레스트로이카⁶³는 저작자들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에트 저작권 체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국가에 의한 일률적인 저작권 이용료 적용을 감소시켰고, 저작권의 해외거래에 대한 국가의 독점 폐지를 가져왔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대폭 개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1991년 통과되었으나, 개정법의 발효 이전 소비에트가 해체되었다.

나. VAAP의 설립배경 및 목적

소비에트 내 저작권 관리 조직의 형태는 1930년대 초부터 1973년까지 작가연합, 작곡가연합, 예술가연합 등의 개별적인 저작권 관리 조직들로 구성⁶⁴된 상태였다. 1973년 소비에트가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면서 저작권에 관한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외국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싱의 필요가 대두되면서 1973년 9월 20일에 VAAP를 설립하였다. UCC 가입 전의 소비에트는 외국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외국의 소비에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로열티 역시 받지 않았다. 그런데 UCC 가입으로 인하여 외국 저작물 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자국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점이 VAAP의 설립 이유라 볼 수 있다.⁶⁵ 즉, UCC 가입국으로서 서구에서의 소비

⁶³ 1985년 4월에 선언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 (검색일: 2016. 2. 19.)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5817>.

⁶⁴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UNESCO, Paris, 20 August, 1985), p. 2.

⁶⁵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NEW MATTER* (Winter, 1993), p. 4.

에트 작가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소비에트에서 해외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⁶⁶하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소비에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조직이라는 의의를 갖는다.⁶⁷

VAAP의 설립 근거로는 소비에트 내각 법령 제588조(a Decree of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No. 588)⁶⁸에 기관의 기능 및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⁶⁹ 이에 따르면 VAAP는 14개 전문적인 연합들과 정부 위원회들에 의해 설립되고, 비정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⁷⁰ VAAP의 ‘비정부적인’ 성격은 소비에트 코멘테이터(Soviet Commentators)들에 의해 승인되었는데,⁷¹ 그들은 VAAP의 ‘비정부적인’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1973년 9월 20일 기관의 헌장 및 위상을 선정하기 위한 스폰서 회의⁷²를 거쳐 VAAP가 설립되었다.

다만, 전시, 극작, 작곡, 예술, 건축, 저널리스트, 시네마토그래피 등의 연합 조직과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소비에트 해외 거래부, 소비에트 문화부, 과학 기술 정부 위원회 및 각종 출판사와 영화제작사들이 스폰서로 참여하여⁷³ 공식적으로는 비정부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표방하지만, 그 실질은 기존의 공적인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으로 볼 수 있다.⁷⁴

VAAP는 기본적으로 VUOAP가 수행하던 저작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역할을 수행하고, 여기에 더하여 외국과의 저작권 유통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소비에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모든 출판업자 등은 소비에트의 저작자 혹은 출판사와 직접 접촉할 수 없으며 VAAP를 통해서만 라이선스 계약

⁶⁶ Ю. Г. Матвее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ВЕНЦИИ ПО АВТОРСКОМУ ПРАВУ*, 2e éd,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87), p. 160.

⁶⁷ Corien Prins, “Emil Zola receives an answer: the Soviet Union is to join the Berne Conventio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3(7) (1991), p. 6.

⁶⁸ the council of ministers은 구소련 각료회의로 내각에 해당하며 동 법령은 1973년 8월 16일에 제정되었다.

⁶⁹ 해당 법령을 통해 VAAP는 1973년 8월 16일로 모든 저작권 에이전시 연합(On the All-Union Agency on Copyrights)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이 법령 전문은 출판되지 않았고 발췌본이 1973년 12월 26일 이즈베스티야(Izvestia)라는 신문에 게재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 423 참조.

⁷⁰ Elena Muravina, *Ibid.*, p. 4.

⁷¹ Elena Muravina, *Ibid.*, p. 4; Dozortsev, “VAAP in the Mechanism of the Copyright,” *11 Soviet State And The Law* (1984), pp. 97~98.

⁷²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 126.

⁷³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3; Ю. Г. Матвее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ВЕНЦИИ ПО АВТОРСКОМУ ПРАВУ*, p. 160.

⁷⁴ Michael A. Newcity, *Ibid.*, p. 127; Evgeni Guerassimov, *Ibid.*, p. 4.

을 체결할 수 있었다. 특히 로열티에 있어서도 이를 지급하고 받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다만 TV, 라디오, 뉴스 등과 관련된 경우 VAAP의 독점권 밖에 있었다. 그리고 VAAP는 검열을 통하여 사회주의에 적합한 저작물만 출판을 허락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업무에 더하여 VAAP는 국가기관으로서⁷⁵ 세금을 받아 소비에트 정부에 전달하고 사상규제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업무는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즉, 형태는 민간기구의 외관을 갖고 있으나⁷⁶ 실제의 업무는 정부기구의 것과 유사한 점이 특색이다. 이후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추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체계가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 VAAP의 독점은 1989년 폐지되었다.⁷⁷

2. VAAP의 기능

첫째, 이용료의 징수, 분배 및 지불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저작물 이용자 기관의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저작자로부터 지불된 적정 비율의 이용료 추산, 저작자로부터 지불된 송금액을 관리하였다. VAAP가 설립되기 전에는 개별적인 저작권관리단체들이 이를 수행하였으나, VAAP의 설립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소비에트 내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저작자와 그 승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⁷⁸

둘째, 저작권 해외 무역 중개 기능을 갖는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외국과의 무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허가된 기관의 독점으로 이루어진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VAAP가 외국과의 독점적 거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비에트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단체나 개인은 VAAP와 직접 계약(model contract)을 체결하여야 소비에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계약 체계는 소련 정부의 독점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트 저작자

⁷⁵ 외관은 민간기구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으나 역할의 본질은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점도 상당하였다.

⁷⁶ 소비에트 정부는 VAAP의 에이전시 활동에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VAAP 역시 소비에트 정부에 헌신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법적 지위 등이 민간기구의 외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Evgeni Guerassimov, *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5.

⁷⁷ Copyright law of Russia (검색일: 2016. 2. 19.)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_law_of_Russia>.

⁷⁸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7.

에게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거래 효과를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VAAP는 직접 혹은 중개를 통해 체결된 저작권 수출입 계약으로 인한 이용료를 수령 및 지불하였으며, 소비에트 및 해외 저작자와 승계자로부터 지불된 이용료에서 수수료의 공제,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아 소비에트 소득세 부과 기능도 담당하여 세금의 징수기능까지 갖고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수입은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⁷⁹

셋째, 국제 조약 가입 및 해외 저작권 기관 간 상호 계약 체결 기능을 갖는다. 소비에트가 국제적인 저작권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VAAP는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개별국가와 협상하여 조약의 체결 등을 수행하였다. 이에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VAAP를 통하여 소비에트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상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VAAP는 이들 국가들과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절차, 정보교환 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들 국가 내 저작권 단체들과 비공식적 협약 (work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⁸⁰

넷째,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VAAP는 저작권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는데, VAAP 본부에는 20명의 변호사가 상주하여 유선 및 대면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는 저작자들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VAAP를 통해 신청하는 이유가 되었다. VAAP 내 변호사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 이들은 법정을 가지 않고도 유선상으로도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률 서비스의 효용이 큰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분쟁의 대부분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소비에트 저작권법의 입법 및 관련 연구의 수행도 이루어졌다.⁸¹

그 외에도 VAAP는 국제도서전람회 참여, 음악 및 영화 페스티벌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에트 내 저작자들의 저작물을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의 저작권 협의체 및 에이전시 등과 교류함으로써 소비에트 저작자들의 작품이 해외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VAAP는 저작권관리단체의 하나로서 CISAC, BIEM, INTERGU, ALAT, WIPO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⁸²

⁷⁹ *Ibid.*, p. 9.

⁸⁰ 이때 오스트리아가 유일한 서구 국가로서 조약체결에 참여하였다.

⁸¹ Evgeni Guerassimov,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p. 11~13.

⁸² *Ibid.*, p. 16.

3. VAAP를 통한 저작권 거래의 특징

VAAP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소비에트 저작물을 해외에서 사용하고자 하거나 소비에트에서 해외의 저작물을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VAAP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소비에트의 저작물에 관여될 때는 반드시 VAAP의 통제와 독점의 영향에 놓이게 된다.⁸³ 따라서 해외 출판사 등이 소비에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VAAP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외 출판사 및 저작권자 등과 비교할 때 VAAP의 이러한 역할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에트 헌법에 외국과의 무역은 특별히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에 의하여만 독점적으로 가능하며, 해외 출판사 등과 저작권을 거래하는 행위 역시 이러한 무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규범을 어길 시에는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였다.⁸⁴ 결국 해외 출판사 등이 소비에트의 저작물을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VAAP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법규상 해외 출판사 등과 소비에트의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VAAP가 배제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 개별적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 저작물의 해외 유통 및 해외 저작물의 소비에트 내에서의 유통 등에 대한 VAAP의 독점은 점차 강해졌으며, 만약 VAAP와 해외 출판사 등의 협상 결과 소비에트 저작물의 이용조건 등이 불합리하더라도 해외 출판사 등은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협상과정에서 VAAP가 일단 특정 해외 출판사 등을 거절 시, 그 출판사 등은 향후 소비에트에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에트 저작물을 해외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VAAP가 유일한 합법적인 통로로 작용하므로 VAAP는 해외 출판사 등으로부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소비에트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 다수의 출판사 등이 경쟁을 하게 되어 VAAP 입장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더욱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VAAP의 상당한 지위는 해외 출판사 등이 서로 연대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지 않는 한 소비에트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건 및 수익을 이끌어낼 수 밖에 없었다.⁸⁵ 아울러 VAAP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⁸³ Lana C. Fleishman, "The Empire Strikes Back: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Motion Picture Industry on Russian Copyright Law," *26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189 (Winter, 1993), p. 210.

⁸⁴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 130.

⁸⁵ *Ibid.*, p. 131.

것이 협상을 통한 교섭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⁸⁶

다른 특징으로는 VAAP의 독점적인 권리행사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외 출판사 등이 소비에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소비에트 내에 자신의 저작물을 유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反) 소비에트적인 내용을 반드시 소비에트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했다.⁸⁷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검열은 소비에트 저작권 거래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⁸⁸ 저작물에 대한 검열은 소비에트 영토 내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196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출판된 소비에트 저작물에 대해서도 검열의 영향이 미치기도 할 정도였다.⁸⁹ 그런데 소비에트 국적의 솔제니친(Solzhenitsyn)이 VAAP의 허락없이 자신의 소설을 출판하기 위해 독일의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프랑스에서 출판한 사례⁹⁰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소비에트 정부의 외국과의 무역에 대한 독점은 제한된다고 하면서 독일법에 의하여 그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⁹¹ 이 판결 이후 VAAP의 허락없이 체결된 저작물 이용계약의 파기권은 소비에트 영토내로 한정되었으며, 해외를 중심으로 점차 VAAP의 허락을 우회하는 저작권 이용계약의 체결이 증가하여⁹² 검열의 의미는 점차 축소되었다.

4. 시사점

폐쇄적이던 VUOAP 시대 이후, UCC 가입 이후의 VAAP의 설립배경과 기능, 기본적인 저작권법 체계 등을 볼 때, 소비에트의 당시 VAAP 체계는 북측의 저작

⁸⁶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 436.

⁸⁷ J. Jinenett Robert, "Adherence of the U.S.S.R.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fenses under U.S. Law to Possible Soviet Attempts at Achieving International Censorship,"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8: Iss. 1, Article 5 (1974), p. 84.

⁸⁸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 437.

⁸⁹ J. Jinenett Robert, "Adherence of the U.S.S.R.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fenses under U.S. Law to Possible Soviet Attempts at Achieving International Censorship," p. 84.

⁹⁰ Bruce Colfi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ploitation of creative rights: the struggle for expression by dissident authors," *European International Property Review*, 9(1) (1987), pp. 19~21.

⁹¹ Hermann Luchterhand Verlag GmbH v. Albert Langen, IZR 40/73.

⁹² Elena Muravi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p. 439~440.

권사무국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사무국에 관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VAAP의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소비에트는 UCC 가입, 북측은 베른협약 가입 이후의 저작권 거래는 형식상 우리와 동일하게 일단 사인간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에트 및 북측의 경우에는 저작권 거래의 독점적 권리가 사실상 국가기구에 부여됨으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사인(私人)인 해외 당사자에 비해 매우 높은 교섭상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에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에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외의 이용자가 VAAP의 교섭상의 지위에 적절히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간 협력하여 연합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즉, 거래 등의 계약을 독점하고 그 내용 등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VAAP에 의하여 해외의 각 이용자 간 지나친 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나름의 자구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 대한 남측의 저작물 이용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측 역시 저작물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이용조건 등이 저작권사무국에 의하여 통제 및 설정이 되므로, 남측의 이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해지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소비에트의 VAAP 사례에서와 같이 남측 내에서 북측의 특정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 간 경쟁하는 구도를 갖게 되거나, 시장 내 합리적인 이용가격 및 조건을 넘어서는 부당함을 발생시킨다. 그 결과 반사적으로 북측 저작권사무국 측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며, 반대로 남측의 저작물 이용 시장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VAAP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측과의 저작권 교류 관계에서도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을 통제 및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함으로써 일정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그 역할은 국가에 의한 작용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IV. 교섭력 문제의 대응방안

1.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북측과의 저작권 거래는 표면적으로는 북의 저작권사무국과 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저작

권사무국은 국가기관으로서 저작권 관련 계약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저작권대리중개만을 업무의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북측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협의할 수 있는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역할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다양한 이용자 간 권익을 조율할 권한은 없으며, 각 개별적 이용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대리하는 것에 한정될 뿐이다. 결국 국가기관인 북의 저작권사무국과 저작권 이용에 대한 교섭의 실질을 남측에서는 사실상 각각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건 등의 제시로 인한 어려움 보다, 특정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수의 남측 내 이용자들 간의 경쟁이 우리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북측의 교섭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⁹³

결국 협상의 대상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양쪽의 체계상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 남측 내 이용자들 간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에트 VAAP와 해외 출판사들 사이에서 출판사들이 공동대응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북측 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간 협의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번 거래할 때마다 이러한 협의기구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저작물 이용을 위한 대북 교류를 담당하는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두고 남측 내 이용자 간 사전적인 조율 및 협의, 그리고 교섭시에는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다만, 한정된 재화인 특정한 북측 저작물을 두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전적 협의와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측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북측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그 저작물이 남측 내 최초로 출판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동일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다른 이용자의 유무를 확인 및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관련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⁹³ Michael A. Newcity,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p. 131.

있는 것이다. 한편, 북측 저작물의 남측 내 최초 출판 등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선례를 활용하여 조건 등을 정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2.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남북 간 저작물 교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랫동안 제시되어왔던 것이 남북이 공동으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저작권공동기구의 설립이었다.⁹⁴ 이를 통해서 저작물을 서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공동기구의 역할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관리 및 이용허락 등의 업무 이외에 남북간 저작권 교류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개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저작권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저작물 및 저작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남북당사자 사이의 직접 계약 및 표준계약서를 통한 저작권계약 대행’, ‘계약의 이행감독’, ‘계약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의 분쟁해결 대행기능’, ‘저작권 교육과 홍보’, ‘북측에 저작권전문가의 파견 및 저작권전문가 양성’, ‘무역관세 절감’, ‘저작자의 사실 확인’, ‘저작권 보호기간 선정’, ‘자료의 수집·전시 및 인적교류’, ‘저작권관련 직통전화 운영’ 등의 업무가 제시된다.⁹⁵

둘째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정보의 제공’, ‘이용허락 계약을 통한 권리처리’, ‘저작권 교육과 홍보 지원’ 등의 업무가 제시된다.⁹⁶ 그런데 실제적인 업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이러한 입장별로 명확하게 업무가 제시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집중관리업무에 한정된 업무를 범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것으로 한정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동기구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⁹⁴ 최경수, “북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 pp. 32~34; 허인,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 『남북저작권법 관련 주요 법적 문제 제1차 전문가회의』 (2013. 6. 19), p. 33; 박영정, 『남북 문화교류채널의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p. 95~96 등.

⁹⁵ 김상호,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p. 73;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pp. 257~258.

⁹⁶ 최경수,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 pp. 96~97.

할 것이다.

사유재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남북과 사유재산 존재의 부정을 전제로 하는 북측의 서로 상이한 이념하에 있는 각각의 집중관리제도를 단일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민간기구와 국가기구, 개인의 권리 유통권한과 개인의 권리 유통권한 미부여, 거래의 활성화 목적과 통제의 목적 등과 같이 남북 양측의 환경은 매우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의 연결고리를 찾아 서로간의 법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즉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교섭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공동기구는 북측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북에서 남으로의 이용허락 혹은 남에서 북으로의 이용허락 모두 동일한 기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이때 거래의 중요한 항목인 이용허락의 조건 및 가격 등은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 내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당성을 배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동기구 설립은 소비에트의 경우 1:n의 구조라 저작권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두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남북의 경우에는 1:1의 구조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용이할 수 있다.

다만, 남북이 서로 정치·경제 및 법률의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부당성’에 대한 개념과 그 기준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북측은 사인간의 재산관계를 민법으로 다루는 전통적인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사회주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관리활동과 결부된 경제관계들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⁹⁷ 특히 부당함이라는 개념의 이면에는 이익이라는 요소가 전제되는 것인데, 북측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⁹⁸ 이는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도 연결되는데 북측 민법상 부당이득제도가 개인소유재산의 보호보다는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생각해 볼 수 있다.⁹⁹ 결국 부당한 계약의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양측의 이러한 개념적 전제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⁹⁷ 신영호 외 6, 『북한민법 주석』 (서울: 법무부, 2014), p. 9.

⁹⁸ 위의 책, p. 117.

⁹⁹ 위의 책, p. 1173.

3.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

북측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북측 저작권법 제2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요금은 가격제정기관에 의하여 정하도록 명시(동법 제31조)하고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북측은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시 이용료가 사실상 국가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그 계약의 내용 역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북측의 대외경제계약법 역시 제10조에서 계약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섭 상대방이 제안한 조건 등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연대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남북이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거래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많은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은 특정한 표준계약서가 포괄하는 범위나 광범위한데 비하여 그 구체성 및 개별성이 낮아 사실상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¹⁰⁰ 이에 남북 간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충분히 유형화하여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교섭력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¹⁰⁰ 『일간대한뉴스』, 2015년 10월 22일(“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도입… 실효성은 미지수”); 『연합뉴스』, 2013년 7월 31일(“방송가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표준계약서, 실효성 있나”) 등 참조.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확대를 통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북측의 독점적 저작권 교류창구로 인한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을 들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례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제3국을 통한 저작권 거래 등이 많이 이루어지며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한 저작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 물론 저작권사무국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의 경색과 화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이 갖는 협상상의 지위는 절대적이어서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북측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공세보다는 우선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과도한 경쟁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및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소비에트의 VAAP는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해외 출판사들과의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우월성을 누렸으나, 결국 시장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독점적 지위의 감소가 이루어진 바 있다는 점이다. 북측의 저작권사무국 역시 소비에트 VAAP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물론 VAAP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던 저작권 수요가 상당하였다는 점이 전제되므로 해외 특히, 남측에 북측 저작물의 이용 요구가 확장되고 북측의 공민인 저작권자가 사유재산으로써의 저작권을 인식하여 그 시장이 나타난다면, 현재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한 독점적 저작권 교류의 흐름 역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이때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각각의 정부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교섭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저작권 교류는 현재 체계상 다소 불균형한 것이 현실이다. 북측의 저작물을 남측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측의 저작물을 북측에서 보호하기 위한 논의 등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교섭력 문제 역시 북측의 저작권을 제도적으로 보

호하고 그 체계 위에서 북측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긴 하나, 저작권자의 법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저작권법의 의의를 고려할 때 우리의 저작권도 북측에서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저작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3월 22일 ■ 심사: 5월 11일 ■ 채택: 5월 3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I)제8판』. 서울: 박영사, 2012
- 김명기. 『남북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2
- 김상호.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 박영정. 『남북 문화교류채널의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신영호. 외 6. 『북한민법 주석』. 서울: 법무부, 2014
- 이 석.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_____. 『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실증적 평가와 시사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_____.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이해완.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2012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남북 사이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안)』.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최은석·허인.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서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2014.
- Newcity, Michael A.. *Copyright Law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8

2. 논문

-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제11집, 2002.
- _____. “소련 저작권 제도의 해설 -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계간저작권』. 1990년 가을호, 1990.
- 박영정. “남북문화합의서 체결 추진 원칙과 방향.”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

- 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2015. 6. 12.
-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1호, 2011.
-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분과, 2012.
-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2권 3호, 2009.
-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창작과 권리』. 제54호, 2009.
- 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
- 조수선. “남북한 문화교류상의 저작권협력문제에 관한 일고찰 - 출판·음반·영상물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00 봄철 정기 학술 발표대회』. 2000.
- _____.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북한실태 2001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논문집』. 제5권, 통일부, 2001.
- 제성호. “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중심.”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 최경수. “남북 방송교류를 위한 저작권 문제 점검.” 『방송연구』. 2001.
- _____. “북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
- 최상필.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7호, 2015.
-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
- 한지영. “북한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2008.
- 허 인.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 남북저작권법 관련 주요 법적 문제 제1차 전문가회의, 2013. 6. 19.
- Boguslavskii, Mark M.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Soviet approach.”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38(1), 1989.
- _____. *The Soviet Union, in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1984
- Colfin, Bru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ploitation of creative rights: the struggle for expression by dissident author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9(1), 1987.
- Cramer, Allan P.. “International Copyright and the Soviet Union.” *DUKE LAW JOURNAL*, Vol. 531, 1965.
- Dozortsev. “VAAP in the Mechanism of the Copyright.” 11 *Soviet State And The Law*, 1984.
- Elst, Michael. “New Developments in the copyright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t 1.”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5(3), 1993.
- Fleishman, Lana C.. “The Empire Strikes Back: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Motion Picture Industry on Russian Copyright Law.” 26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189, 1993.

- Frenkel, William G., Sperber Jeffrey, "From Borscht Bits: Transfers of Technology and Industrial Property to the Soviet Union." 4 *DePaul Business Law Journal* 3, Fall/Winter, 1991.
- Goldman, William. "Berne-ing the Soviet Copyright Codes: Will the U.S.S.R. Alter Its Copyright Laws to Comply with the Berne Convention?."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8 No. 3, Article 4, 1990.
- Guerrassimov, Evgeni. "On the copyright agency of the USSR." UNESCO, Paris, 20 August, 1985.
- Jinenett, Robert J.. "Adherence of the U.S.S.R.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Defenses under U.S. Law to Possible Soviet Attempts at Achieving International Censorship."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8 Iss. 1, Article 5, 1974.
- Muravina, Elena. "Copyright Transactions in Russia PART I. The VAAP REA: 1973~1991." Spring, *NEW MATTER* 1993.
- _____. "The Structure of the Russian Entertainment Industry." *WHITTIER LAW REVIEW*, Vol 20, 1999.
- Pozhitkov Igor. "Author's right and neighbouring right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Entertainment Law Review*, 5(4), 1994.
- Princs Corien. "Emil Zola receives an answer: the Soviet Union is to join the Berne Conventio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13(7), 1991.
- Tiefeobrun Susan. "Pirac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 Comparison." 46 *Buffalo Law Review* 1, WINTER, 1998.
- Vermeer Monica B. "A New Rea in Russian Copyright Las: Protecting Computer Software in the Post-Soviet Russia Federation." 5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147, Spring, 1995.
- Матвеев ю. г.,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ВЕНЦИИ ПО АВТОРСКОМУ ПРАВУ, 2е éd,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8
- Богуславский м.м., Участие СССР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хране авторских прав,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74

A Study on Measures to Secure Bargaining Power for Balanced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Yeol Kim and Na-Bin Choi

With the recently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change of copyrights was not an exception in the matters influenced by such friction.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expand continuously in the long term in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hared their culture and history with each other except since their division.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 works of North Korea will be actively utilized in South Korea where a free market is guaranteed. However, as North Korea's window for copyright exchange is exclusively operated,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at exceeds market acceptance standards may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seen in the case of the USSR, a socialist state structurally has a higher bargaining power in copyright exchanges in the socialist system. South Korea, also, will not be free from such structure, and the Copyright Office of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have an absolute bargaining status in the current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us, users in South Korea, who use works of North Korea, need to respond appropriately. Accordingly, this study determined that users in South Korea shall not resort to offenses through direct bargaining with North Korea but negotiate for copyright exchange based on their reasonable decision an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do not excessively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preparation of a joint trading system for users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joint copyright organization, and an agreement on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Key Words: North Korea, copyright, the Copyright Office of North Korea, VAAP, Soviet, Contract for using copyright, Bargaining Power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이 자 영** · 김 현 아***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인지(고정관념), 정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행동(사회적 거리감)으로 구분하고, 심리적 변인(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의 편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업군인의 수용성과 통일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지적 편견인 고정관념, 정서적 편견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행동적 편견인 사회적 거리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은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거리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둘째, 직업군인의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에서 수용성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 모두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군인의 편견, 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9363).

**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I. 서론

현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그들이 원할 시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일반 병사, 부사관, 장교 등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실제 그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병역면제 처분이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그들은 군복무에서 제한되어 왔다.¹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4대 의무 중 하나인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군복무를 원하거나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한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²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군복무 추진과 관련된 연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³

특히 2013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중 제18조(특별임용)에서,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직위나 경력에 대한 인정은 일반 사업주에게 권장하고 있었으나, 이는 군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특별임용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다양한 국가 및 사업장에서 북한출신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⁴ 군은 이를 제도로 도입하기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통일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편입된 인민군 출신자 또는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이 군 입대를 할 경우, 그들과 남한 출신 군인 간의 적응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것이며, 군의 통합에 대한 의구심, 저항, 불만 등이 남북한출신 장병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즉, 가장 적대적이

¹ 오주영·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공익과 인권』, 제13권 통권 (2013), pp. 288~289.

²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 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1), p. 242.

³ 위의 글, p. 242~285; 오주영, 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p. 287~324; 최선애,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군사사회복지학』, 제3권 1호 (2010), pp. 93~113.

⁴ 손기웅, “통일한국의 군 통합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6권 1호 (1997), pp. 294~295.

었던 집단,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었던 남북한 군인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군 조직 내 갈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⁵ 이러한 갈등의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들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고 치우친 생각, 정서 그리고 행동 등을 포함하는 편견은 흔히 흑인,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을 대할 때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4명 중 1명(25.3%)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차별 이유는 말투, 생활방식,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된 이유였다.⁶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한 2000년대 이후 김혜숙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⁷을 살펴보면, 이전 연구들⁸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연민의 감정이나 호감도는 높지만, 결혼, 친구 등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가정자녀나 이주노동자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⁹ 편견은 군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로 남한 주민 500명 중 38.8%가 북한주민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24.2%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¹⁰ 따라서 북한을 적이라고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군인의 경우, 일반 집단에 비해 북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또한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구성원의 단결이 중요한 집단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심해져서 군대 내 내부갈등이 증가한다면, 군의 전투력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¹¹ 따라서 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를 할 경우 또는 통일을

⁵ 위의 글, pp. 294~295.

⁶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920 & cID=10201&pID=10200> (검색일: 2016.4.25).

⁷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4호 (2007), pp. 96~97;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2011), p. 69.

⁸ 정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 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2권, 여름호 (1998), p. 427.

⁹ 양계민·정진경,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¹⁰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인식-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5권 2호 (2009), p. 128.

¹¹ 최선애,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p. 95.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편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성격,¹² 현실적 이해갈등 정도,¹³ 민족정체성,¹⁴ 주관적 안녕감,¹⁵ 보편주의가치¹⁶ 등 다양한 요인들이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대부분 다문화집단이나 장애인집단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결과일 뿐 아니라 설문 응답자 또한 일반인으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특성을 고려하여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체성, 권위주의적 성격, 통일에 대한 인식, 수용성 등이 군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고, 계급에 따른 명령체계가 확실한 조직이기 때문에,¹⁷ 사회정체성이나 권위주의적 성격, 수용성 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통일인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사료되거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군인 중에서도 직업군인인 부사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부사관은 첨단 전투장비가 개발되고, 저출산 사회가 되면서 군의 핵심인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교와 병사와의 관계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군인이 될 경우 그들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인

¹² 서영석·이정림·차주환, “성역할 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1호 (2006), p. 177; Altemeyer, B.,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p. 53.

¹³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2호 (2009), p. 71; Coenders, M., Lunners, M., & Scheepers, P.,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2003), <http://eumc.int>.

¹⁴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71;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72; De Figueiredo, R. J. P., & Elkins, Z.,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1 (2003), p. 178.

¹⁵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과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1호 (2010), p. 122.

¹⁶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99.

¹⁷ 최현주·이자영, “직업군인(부사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3권 6호 (2012), p. 2778.

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군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개입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에 대해 아직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못한 군의 준비를 촉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군복무를 할 경우 군대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남한출신 군인의 적응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증가시킴으로써 군의 조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군의 전투력 향상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직업군인의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인지, 정서, 행동)간의 관계에서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은 매개변인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과 편견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사회적 인종적 범주에 기초해서 타인이나 상황, 집단 등에 대해 가지게 되는 태도, 의견을 말한다.¹⁸ Allport에 의한 편견의 고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개인이 한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갖게 되는 좋고, 싫음의 태도로 인지적 차원의 고정관념과 부정적 감정과 차별적 행동을 포함 한다.¹⁹ 편견의 구성요소는 태도의 3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인지적 측면을 고정관념으로, 감정의 측면은 ‘좋다’, ‘혐오 한다’ 와 같은 편견의 근원으로, 편견의 행동적 요소는 차별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²⁰ Campbell에

¹⁸ Sears, D. O., Freedman, L., & Peplau, L. A.,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pp. 12~13.

¹⁹ 임나영,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대한 초등교사의 태도 분석-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 11.

의하면, 행동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비해 태도는 훨씬 추상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오류로 인해 태도와 행동의 괴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태도가 강한 사람의 경우는 태도에 부응하는 행동이 나타나지만 태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수 있다.²¹ 따라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고정관념뿐 아니라 이들의 정서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²

한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개인의 생각, 행동 등을 보고 개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부정적 속성에 근거해서 개인을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적대감과 갈등을 야기하며, 이는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성한다.²³ 편견을 당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간적 모욕과 무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피나 배제, 그리고 직장 채용에서도 불이익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존감과 정체성이 낮아진다.²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편견 및 차별대우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²⁵ 규율 및 동료관계로 인한 조직적응의 어려움²⁶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시기가 장기화되어 질수록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²⁷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²⁸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을 수용으로 혼용해서 보거나,²⁹ 일반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

²⁰ 한덕용·성한기·강해자·이경성·최훈석·박군석·김금미·장은영,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p. 323.

²¹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3, 3판 8쇄), pp. 228~229.

²²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71.

²³ 김혜은,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12), p. 13; 위의 책, pp. 12~13.

²⁴ Major, B., & O'Brien, L. T.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6, (2005) p. 394; Steele, Spencer & Aronson, (2002) p. 393.

²⁵ 조정아·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p. 38.

²⁶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81; 조정아·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p. 38.

²⁷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특집호 (2005), pp. 107~109.

²⁸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p. 81.

²⁹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pp. 107~109.

성, 다문화가정 자녀,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비교³⁰함으로써 집단 간 갈등이 예상되는 특정 집단의 편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연구³¹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는 방법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군인의 편견적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먼저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희생적이고, 호감이 간다는 등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공격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하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그리고 이러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입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나 친척 중에 실향민이 있다고 한 사람보다 없다고 한 사람들이 북한 및 북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양가감정이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결혼할 의사를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식이 적은 학생일수록 더 부정적이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생들은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³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그들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³⁵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입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³⁰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62;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67.

³¹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71.

³²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1』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pp. 27~30.

³³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pp. 167~184.

³⁴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p. 70~71.

³⁵ 김혜은,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p. 13.

2.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그동안 편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견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편견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권위적 태도 또한 편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에게는 순종적이지만,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소수 집단을 배척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으며, 그 결과 소수집단에 편견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³⁶ 그 외에 자아존중감, 사회적 안녕감,³⁷ 대인관계³⁸ 그리고 개인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동기³⁹ 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보고되었다.

2010년 6월 국방부가 육·해·공군장병 500명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여론조사 의견에 ‘우리사회의 다양한 인종·민족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라는 조사항목에 장병 75.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다문화수용에 대해서는 69.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장병다수의 마음과 태도가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다문화장병의 범주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해 놓고 있어서, 군대생활은 다문화사회 학습의 기회가 되고 전역 후에는 다문화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⁰ 하지만 지금까지 군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편견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서비스 뿐 아니라 남한사회 전체의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⁴¹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편견과 나쁜 태도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수용하고 생활화하는 다문화주의는 편견과 차별감소에 효과적이다.⁴² 최근의 긴장된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은 군인들에게 현실적인 위협 상황이고 이들의 수용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³⁶ Elms, A. C., & Milgram, 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bedience and defiance toward authoritative command,"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Vol. 2 (1966), p. 285.

³⁷ Crocker, J., & Major, B.,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Vol. 96 (1989), p. 615.

³⁸ Kaiser, C. R., & Miller, C. T.,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7 (2001), p. 258.

³⁹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p. 96~97.

⁴⁰ 이정호, "군 인적자원 구성 다문화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다문화인식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⁴¹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교육자료 (2003).

⁴²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pp. 527~528.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인의 편견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⁴³ 특히 편견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 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⁴⁴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수용성과 편견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수용성이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학생 및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편견적 태도와 행동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체성을 들 수 있다. 자기 정체성 중 사회정체성은 개인 정체성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집단 간 차별과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집단정체감이 높아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높은 사람들이 집단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으면 외집단, 소수집단에 편견이 높다고 보고되었다.⁴⁵ 같은 맥락에서 단일민족의식이 높을수록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소수집단의 구성원인 외국인과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족적 배제주의와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그러나 같은 직장 내 친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거나 같은 작업장 내에 있을 경우, 더 친밀한 접촉을 할 때는 낮은 종족적 배제주의와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가 정체성을 근거 이론을 통해 질적 분석 한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북한출신 한국 국적자’, ‘탈북한(脫北韓) 한국 국적자’, ‘탈 국가적 개인주의자’ 로

⁴³ 김금미·안상수,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 19권 3호 (2014), pp. 315~338; 정석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홍유진,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⁴⁴ 정명희·이주희,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연구』, 제7권 2호 (2014), pp. 81~105; 박영주·이주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제24권 통권 24호 (2013), pp. 285~310.

⁴⁵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1999), p. 141.

⁴⁶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pp. 70~71.

⁴⁷ 김이선·황정미·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2007), p. 21.

구분 되었다.⁴⁸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남한주민의 종족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이 혼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과 충돌하게 되면서 조직 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통일을 원하는 열망이 높고⁴⁹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도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을 구축할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⁵⁰ 통일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독일이 군 통합에 있어서 독일연방군이 가장 힘쓰는 부분이 군대 내 내적 통합으로 서로 적대적이었던 동서독출신 장병 간에 동질성 회복이었고, 독일이 통일연방군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간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통일연방군에 편입된 동독인민군 간부출신에 대한 교육이었다.⁵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군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편견해소 방안에 대한 모색은 군대 내 인적통합 뿐 아니라 통일 후 군 통합 모델정립을 위해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직업군인 총 243명(32.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총 243명 중 남성은 222명(91.4%)이었으며, 여성은 21명(8.6%)으로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33세 였으며, 계급은 하사 30명(12.3%), 중사 119명(49.0%), 상사 69명(28.4%), 원사 25명(10.3%)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표 1>에 제시하였다.

⁴⁸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pp. 27~29.

⁴⁹ 정기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pp. 427~448.

⁵⁰ 전미영,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추진계획,” 『단일·다문화를 넘어선 공동체 모색: 민족공동체와 사회통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p. 28.

⁵¹ 손기웅, 『통일독일의 군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 296.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남성	여성
하사	24명(9.9%)	6명(2.5%)
중사	107명(44.0%)	12명(4.9%)
상사	66명(27.2%)	3명(4.3%)
원사	25명(10.3%)	0명(0.0%)
총계	222명(91.4%)	21명(8.6%)

2. 연구도구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파악한 양계민의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3가지 요소로 측정하였다. 먼저 편견의 인지적 측면은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유능성, 도덕성, 성실성, 공격성, 신뢰성, 공손함)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측정하였으며, 문항 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값은 .780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은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총 9문항(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연민정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Cronbach's α 값은 .746으로 나타났다. 편견의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 지낼 것인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친밀,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gardus⁵²가 제작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 근거해서 김혜숙 등⁵³이 수정하여 개발한 척도로 '북한이탈주민이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이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83이었다.

⁵² Bogardus, E. 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1925), p. 307.

⁵³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62.

나. 수용성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것을 수용성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황운경⁵⁴이 사용한 수용성 척도를 선정하였다. 이 척도는 보편적 권리 차원, 집합적 위협인지차원, 개방성 차원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22개 문항으로 보편적 권리 차원 5문항, 집합적 위협인지차원 5문항 그리고 개방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여러 인종,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가 있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황운경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0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4였다.

다. 권위주의

Adorno 등⁵⁵이 개발한 척도로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성찰성, 미신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을 기초 총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35개 문항이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를 들 수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민경환⁵⁶에서의 Cronbach α 값은 .85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0으로 나타났다.

라. 사회정체성

조직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영석⁵⁷이 개발한 사회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정체성 척도는 조직과의 동일시 뿐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⁵⁴ 황운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대전광역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25.

⁵⁵ Adorno, T. W., Frenkel-Brun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0), p 228.

⁵⁶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2호 (1989), pp. 151~152.

⁵⁷ 한영석, “합병기업에서 지위, 사회정체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 95.

연대감을 포함한 척도로 집단자존심, 집단동일시, 집단몰입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우리 부대의 군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외부 사람이 우리 부대의 군인을 비판하면 나에게 대한 모욕처럼 느낀다” 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926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 통일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김병조⁵⁸가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일인식에 대한 문항은 “남북한 간에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많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등을 묻는 내용들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92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권위주의)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음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직업군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권위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한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을 준거변인으로 한 후 심리적 변인(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이 독립변인과 준거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간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⁵⁹

⁵⁸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인식 간의 관계 분석-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p 83.

⁵⁹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p. 1179.

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①권위주의(독립변인)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 ②권위주의(독립변인)와 수용성(매개변인)간의 관계, ③권위주의(독립변인)와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매개변인)을 추가한 후, 준거변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

직업군인의 연령, 계급, 심리적 변인(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권위주의)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상관을 분석한 후,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관련 변인들의 상관분석

변인	1	2	3	4	5	6	7	8
1. 연령								
2. 계급	.81**							
3. 수용성	.15**	.21**						
4. 권위주의	-.02**	.07**	-.38**					
5. 사회정체성	.03**	.09**	.18**	.02**				
6. 통일인식	.22**	.21**	.46**	-.11**	.17**			
7. 고정관념	-.11**	-.09**	-.56**	.26**	-.16**	-.39**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05**	-.08**	-.53**	.22**	-.25**	-.40**	.57**	
9. 사회적 거리감	-.05**	-.03**	-.40**	.21**	.08**	-.32**	.36**	.46**
평균(SD)	33.3 (7.15)	2.40 (.85)	3.66 (.46)	2.75 (.43)	4.04 (.68)	3.67 (.97)	2.86 (.40)	2.76 (.49)

** $p < .01$.

2.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연령과 계급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중 고정관념에 3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230)=20.298, p<.001$). 고정관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성($\beta=-.447, p<.001$)과 통일 인식($\beta=-.169,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성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고정관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N=24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고정관념	연령	-.006	.005	-.113	-1.218
	계급	.057	.044	.123	1.311
	수용성	-.387	.058	-.447	-6.691***
	권위주의	.060	.054	.06	1.119
	사회정체성	-.036	.032	-.063	-1.148
	통일인식	-.069	.025	-.169	-2.769**
$R^2=.329, F=20.298^{***}$					

*** $p<.001$, ** $p<.01$.

다음으로 직업군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32%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230)=19.221, p<.001$). 심리적 변인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성($\beta=-.391, p<.001$)과 사회정체성($\beta=-.151, p<.01$) 그리고 통일 인식($\beta=-.206,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성과 사회정체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 (N=24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연령	.003	.006	.041	.437
	계급	.009	.055	.016	.166
	수용성	-.420	.072	-.391	-5.800***
	권위주의	.058	.067	.052	.868
	사회정체성	-.108	.040	-.151	-2.723**
	통일인식	-.104	.031	-.206	-3.337**
$R^2=.317, F=19.221^{***}$					

*** $p < .001$, ** $p < .01$.

마지막으로 직업군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중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직업군인들의 심리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직업군인의 편견 중 사회적 거리감에 20%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230)=10.666, p < .001$). 심리적 변인 중 사회적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성($\beta = -.331, p < .001$)과 사회정체성($\beta = .160, p < .01$), 통일 인식($\beta = -.199,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성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정체성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N=243)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사회적 거리감	연령	-.008	.015	-.051	-.507
	계급	.141	.131	.111	1.081
	수용성	-.781	.172	-.331	-4.590***
	권위주의	.122	.160	.050	1.005
	사회정체성	.252	.095	.160	2.664**
	통일인식	-.220	.074	-.199	-2.970**
$R^2=.197, F=10.666^{***}$					

*** $p < .001$, ** $p < .01$.

3.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에서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의 매개효과

직업군인의 대표적 특성인 권위주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⁶⁰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변인들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분석 단계 1), 둘째, 독립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분석 단계 2),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정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였다(분석 단계3).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연령과 계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간의 관계에서 수용성, 사회정체성 그리고 통일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와 매개변인인 수용성,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권위주의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8, p < .01$). 즉, 권위주의가 높을수록 수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사회정체성($\beta = .022, n.s.$)과 통일인식($\beta = -.112, n.s.$)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정체성과 통일인식은 매개효과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와 준거변인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beta = .264, p < .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beta = .231, p < .001$)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beta = .205, p < .01$)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독립변인을 권위주의, 준거변인을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으로

⁶⁰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p. 1179.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한 후, 심리적 변인 중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수용성 변인을 추가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용성은 고정관념($\beta = -.540, p < .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beta = -.520, p < .001$)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beta = -.388,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주의가 고정관념($\beta = .048, n.s.$),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beta = .023, n.s.$)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beta = .050, n.s.$)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효과 검증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수용성은 권위주의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완전매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Sobel(1982) 검증은 매개효과가 0보다 큰 지 여부를 Z검증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b_1 \times b_2}{\sqrt{b_1^2 \times Se_2^2 + b_2^2 \times Se_1^2}}$$

이 때, b_1 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그리고 b_2 는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비표준화된 계수를 말한다. Sobel 검증 결과 수용성은 권위주의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완전매개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수용성 변인을 통한 설명량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관념 23% 증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22%증가, 사회적 거리감 12%증가).

<표 6>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예언변인	B	SE	β	R ²	t	F	준거변인
연령	-.005	.006	-.099	.075***	-.914	7.372***	고정관념
계급	-.018	.050	-.038		-.350		
권위주의	.239	.057	.264		4.168***		
연령	-.007	.005	-.126	.307***	-1.348	27.185***	고정관념
계급	.053	.044	.113		1.186		
권위주의	.044	.054	.048		.807		
수용성	-.021	.002	-.540		-8.900***		

*** $p < .001$.

<표 7>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과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예언변인	B	SE	β	R ²	t	F	준거변인
연령	.004	.008	.061	.048***	.559	4.94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계급	-.088	.063	-.152		-1.388		
권위주의	.259	.072	.231		3.595***		
연령	.002	.007	.035	.263***	.361	22.10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계급	-.004	.057	-.007		-.073		
권위주의	.026	.069	.023		.375		
수용성	-.025	.003	-.520		-8.320***		

*** $p < .001$.

<표 8>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예언변인	B	SE	β	R ²	t	F	준거변인
연령	-.012	.017	-.078	.035***	-.712	3.839***	사회적 거리감
계급	.029	.140	.023		.210		
권위주의	.505	.159	.205		3.170**		
연령	-.015	.016	-.098	.153***	-.950	11.656***	사회적 거리감
계급	.167	.134	.131		1.250		
권위주의	.123	.163	.050		.755		
수용성	-.042	.007	-.388		-5.788***		

*** $p < .001$, ** $p < .01$.

<표 9>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의 관계에서 수용성의 매개효과분석

변수 간 경로	sobel test (Z값)
권위주의 → 수용성 → 고정관념	5.48***
권위주의 → 수용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5.09***
권위주의 → 수용성 → 사회적 거리감	4.39***

*** $p < .001$.

V.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심리적 변인들(수용성, 권위주의, 사회정체성, 통일인식) 중 수용성과 통일인식은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 장병들의 다문화장병에 대한 수용적 태도⁶¹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북한 및 통일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 및 북한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⁶²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통일을 원하는 열망이 높다는 연구결과⁶³를 지지해주었다. 이는 최근 다양한 언론매체나 학회에서 강조하는 남북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얼마든지 군 조직문화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본 연구결과는 군 내 다문화수용성 증진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외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집단동일시가 강한 사람들(즉, 사회정체성이나 집단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집단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더욱 내집단 편애와 상대적 외집단 비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⁶⁴와 관련 지워볼 수 있겠다. 즉,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대상이 한국 군인으로서 정체성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또 다른 해석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외집단으로 지각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민족적 차원에서 내집단으로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후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다음으로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접촉이 집단적 위협(이득 위협 혹은 정체성 위협)을 줄이고, 사회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외집단을 접촉할 때의 불

⁶¹ 이정호, “군 인적자원 구성 다문화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다문화인식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p. 54.

⁶²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pp. 173~175.

⁶³ 정기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pp. 427~448.

⁶⁴ Crocker, J., Luhtanen, S. R.,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1990), pp. 60~67.

안을 줄인다는 관련 연구⁶⁵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즉, 군인의 사회정체성은 일반 남한주민과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언론매체의 방영, 다문화 및 통일교육 등은 오히려 “우리의식”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보다 우호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군에 입대한 남부출신들이 인종 간 단합이 요구되는 군대의 규범을 앗을 때 흑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⁶⁶ 군대 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수용에 대한 규범적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직업군인의 사회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군의 사회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볼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이때 남북한 주민이 하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범주화(Re-categorization) 방법을 응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군대 내 다문화 통합을 위한 사전 교육들이 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변화에만 초점을 둔다면 군대 내 다문화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추후에 군대 내 북한이탈주민 장병들이 함께 복무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군대 내의 현실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나 VTR 자료, 역할연기 등과 같은 다양한 다문화 수용 및 통일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의 권위주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이는 권위주의와 편견 간의 관계에서 제3의 매개변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직업군인의 권위주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간의 관계에서 수용성은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 모두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권위주의 성격이 편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⁶⁷를 일부 지지해준다. 본 연구의 차이점은 직업군인의 권위주의는 수용성을 매개로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부사관이라는 군인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특성이

⁶⁵ 김혜숙 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p. 80.

⁶⁶ Watson, (1950);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p. 502 재인용.

⁶⁷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p. 494 재인용.

높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⁶⁸가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적 특성이 강하고 수용성이 높은 집단(예: 대안학교 교사)과 권위주의적 특성이 강한 집단(예: 보호담당관)을 비교하여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개인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편견이 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입장과는 다른 이론적 함의가 있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편견이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입장⁶⁹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개입과정에서 군 조직이라는 “우리”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그들”로의 범주화가 고정관념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되지는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견해나 태도와 달리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행동적 편견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 접촉 시 긴장과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⁷⁰에 비추어볼 때, 직업군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변인임을 입증해주었다. 이를 통해 추후 군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실적 갈등을 감소하기 위한 편견해소 방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군인들의 북한이탈주민이 편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착하고,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군의 화합과 최상의 전투력을 기대한다면, 군인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군 다문화 대비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문화 군대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 교육은 대 국민화합 뿐 아니라, 군 제대 후 성숙한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발판이 될 것이다. 셋째, 군내 인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군

⁶⁸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pp. 107~109.

⁶⁹ Taifel, H.,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1982), pp. 1~39.

⁷⁰ 김현아·김규식,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갭의 내적 요인으로서 장애인식과 태도: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상담학회지』, 제27권 1호 (2016), p. 127.

내 이질적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바, 군내 인적통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휘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출신 군인의 배치 및 동료관계 촉진을 위해 군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 후 군 통합 모델 수립을 통한 국방정책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장병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군인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장병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통일 후 군 통합의 예비 실험장으로서의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 후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군 통합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군인들 중 직업군인인 부사관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병사나 장교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병사나 장교를 포함하여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견에 대한 측정을 자기보고식 평가와 같은 명시적 측정을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거나, 반응시간을 이용한 암묵적 측정, 행위자의 행동관찰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다.

■ 접수: 4월 29일 ■ 심사: 5월 25일 ■ 채택: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2007.
- 김혜은.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2012.
- 손기웅. 『통일독일의 군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양계민·정진경.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전미영. “통일이후 민족공동체 추진계획,” 『단일·다문화를 넘어선 공동체 모색: 민족공동체와 사회통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1.
-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1』.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3.
-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Adorno, T. W., Frenkel-Brun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0)

Sears, D. O., Freedman, L., & Peplau, L. A.,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5).

2. 논문

-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 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1.
- 김금미·안상수.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 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9권 3호, 2014.
-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 김현아·김규식.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갭의 내적 요인으로서 장애인식과 태도: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상담학회지』. 제27권 1호, 2016.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2호, 2011.
- 김혜숙.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4호, 2007.

- 박은숙.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영주·이주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제24권, 통권 24호, 2013.
- 민경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2호, 1989.
- 서영석·이정림·차주환.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 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1호, 2006.
- 손기웅, 통일한국의 군 통합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6권 1호, 1997.
-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인식-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5권 2호, 2009
- 양계민.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2호, 2009.
- _____.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과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4권 1호, 2010.
-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특집호, 2005.
- 오주영·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제13권, 2013.
- 이정호. “군 인적자원 구성 다문화대비 정신교육 방향연구-다문화인식과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임나영.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대한 초등교사의 태도 분석-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 정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 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2권, 여름호, 1998.
- 정명희·이주희.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연구』. 제7권 2호, 2014.
- 정석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조정아·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최선애. “다문화 군대를 대비한 민과 군의 준비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군사회복지학』. 제3권 1호, 2010.
- 최현주·이자영. “직업군인(부사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3권 6호, 2012.

- 한영석. “합병기업에서 지위, 사회정체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홍유진.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황운경.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대전광역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Altemeyer, B.,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 Bogardus, E. S.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1925.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1999.
- Crocker, J., & Major, B.,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Vol. 96, 1989.
- De Figueiredo, R. J. P., & Elkins, Z.,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1, 2003.
- Elms, A. C., & Milgram, 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bedience and defiance toward authoritative command.”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ersonality*, Vol. 2, 1966.
- Kaiser, C. R., & Miller, C. T., “Stop complaining! The social costs of making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7, 2001.
- Major, B., & O'Brien, L. T.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6, (2005) p. 394; Steele, Spencer & Aronson, 2002.
- Taifel, H.,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1982.

3. 기타자료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교육자료. 2003.
- Coenders, M., Lunnens, M., & Scheepers, P.,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V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2003. <http://eumc.int>.

Abstract

The Effect of Military’s Psychological Factors on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Refugee

Ja-Young Lee & Hyun-Ah Kim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variables, namely receptivity, authoritarianism, social identity, and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on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which are categorized into cognitive(stereotypes), emotional(feeling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and behavioral(social distance) aspects. For this purpose, 243 soldiers were asked to complete th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ceptivity and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showed influence on soldiers’ cognitive stereotypical attitudes, affected emotional and behavioral stereotyp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refugee. Social identity showed negative effects on emotional stereotypical attitudes and positive effects on behavioral stereotypical attitudes(social distance). Second, receptivity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cognitive/emotional stereotypes and social distance. Lastly, the findings were discussed with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Military’s Stereotypical Attitudes, Receptivity, Authoritarianism, Social Identity,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송철호* · 강문영** · 신용태***

- | | |
|------------|----------------|
| I. 서론 | IV. 연구 모형 및 가설 |
| II. 북한이탈주민 | V. 실증분석 |
| III. 선행 연구 | VI. 결론 및 시사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활용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활용특성과 기능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총 22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활용특성 측면의 자기효능감, 상대적 이점, 주관적 규범을 설정하였고,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특성으로 유비쿼터스 접속성, 상황기반 제공성을 설정하였으며 이 변수들의 개별

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기능의 특성과 활용면에서의 특성에 대한 변수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힘으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한 의미를 도출해 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법·제도적으로 지원 규정과 기관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스마트폰 활용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박사
**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부터 국내입국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2년부터 입국 숫자가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2009년에는 1년 동안 입국자가 약 3,000명까지 기록하였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에 2만 명을 넘어, 2015년 10월 기준, 누계 28,496명으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전국 각지로 분산되어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생존현장을 누비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낯선 문화를 접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들에 대한 활용 및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재감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그 중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이 충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나 활용법을 알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관광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여 관광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하고, 관광 기회를 차츰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는데 있어 유발되는 내·외적 제약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좀 더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남한 적응도를 증가시키고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규명하는 등 대부분이 문화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주변의 많은 관심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폰 등 IT기기들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통일부를 주축으로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을 통일대비 차원에서 연계, 남북 간 융합에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하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국내입국 초기의 사회적응, 지역배정 후 지역사회 적응, 정착 및 지원 등 진행 단계별로 하나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등 정부(지역) 유관기관과 민간기관의 공조하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현재의 정책이 입국 초기 정착과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부적응 문제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착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대감의 상실과 고립감 등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을 빠져나와 이탈한 사람으로 시대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며 통상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탈북자, 귀순자, 자유 북한인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최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이전에는 귀순자란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¹

2.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947명이었으나 2006년엔 2,028명으로 2배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2,914명으로 3배를 넘어섰다가 2012년에는 1,502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1998년에 12% 뿐이었던 여성비율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속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70% 이상 차지하면서 남성의 비율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¹ 통일부 『통일백서』 (2015).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구분	남(명)	여(명)	합계(남+여)	여성비율(%)
1998년	831	116	947	12
2001년	565	478	1,043	46
2002년	510	632	1,142	55
2003년	474	811	1,285	63
2004년	626	1,272	1,898	67
2005년	424	960	1,385	69
2006년	515	1,513	2,028	75
2007년	573	1,981	2,554	78
2008년	608	2,195	2,803	78
2009년	662	2,252	2,914	77
2010년	591	1,811	2,402	75
2011년	795	1,911	2,706	71
2012년	404	1,098	1,502	73
2013년	369	1,145	1,514	78
2014년	305	1,092	1,397	78
합계	8,252	19,267	27,519	70

자료: 통일부 <www.unikorea.go.kr> (2014년 1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데 8,288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대 7,916명으로 28%, 40대는 4,635명으로 16%, 10대가 3,364명으로 12% 순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가 57%로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

나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누계 (명)	1,215	3,364	7,916	8,288	4,635	1,498	1,202	28,118
비율 (%)	4	12	28	29	16	5	4	100

자료: 통일부 <www.unikorea.go.kr> (2015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입국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했고 둘째, 북한이탈 여성의 입국이 증가했으며 셋째, 가족단위 입국 등으로 인해 연령층이 유아, 청소년, 노령자 등으로 다양화 되면서 피부양자와 피교육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넷째,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개인당 평균 3년 11개월 정도로 장기화되었고 다섯째, 해외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결혼의 성격을 띠는 입국자의 증가추세를 보였고 끝으로, 초기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은 점차 줄면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목적의 탈북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2, 3}

남북하나재단에서 1997~201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12,777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그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은 하류층(37.9%), 중·하류층(35.4%), 중간층(23.1%), 중·상류층(2.6%), 상류층(0.7%)으로 중·하류층과 하류층을 하류층으로 재구분하면 73.2%가 하류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는 대다수가 긍정적(68.5%)이었으며 차후 생활수준은 현재보다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 활용을 위해서 직장 및 고정수입에 대한 보장 또한 필수적인 사안인데 월 임금 100만원 미만이 45.5%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월 임금이 200만원 이상은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향후 받고 싶은 지원의 순위는 의료지원(간병자원봉사 파견, 병비 지원 등) 39.0%, 경제적 지원(생활비보조) 37.8%, 교육지원(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관련) 35.5%, 취업지원(취업알선 등) 30.0%, 주택문제관련 지원 20.5%등으로 희망하고 있어,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스마트폰관련 교육 등 정책을 실시한다면 충분히 참여 및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이탈주민 정보형태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상적 정보요구를 살펴보면, 그들은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요구가 정보의 추구로 고스란히 이어지는지, 아니면 어떠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중도에 추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요구단계에서 그치고 추구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요구와 정보수요, 정보이용과의 관계를 다룬 전통적 연구들에서는 정보요

²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³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기회의 대두와 효율적 정보 활용』 (2003).

구가 발생하면 그 요구에 기반 하여 수요가 발생하고 그 수요에 기반 하여 정보이용으로 이어진다는 기본 가설을 깔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패러다임은 여러 연구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제환·구정화⁴는 정보 요구가 발생하면 그 요구가 정보이용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정보 수요자를 둘러싼 개인적, 환경적,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변형 또는 왜곡된 정보이용 행태가 취해져 왔기 때문에, 정보의 요구와 이용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Wilson⁵은 자신의 정보행태모델(Information Behavior Model)에서 정보요구 상황에서 정보추구 행태로 이어지는 중간에 심리적 성향, 인구학적 배경, 사회적 역할 또는 대인적 변수, 환경적 변수, 정보원의 특징 등과 같은 개입변수를 포함시켜 이러한 개입변수들이 정보행태를 강화하거나 혹은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Ⅲ. 선행 연구

1.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관한 선행연구

정보기술에 대해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실제 정보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각된 유용성을 “한 개인이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한 개인에 있어 업무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각된 유용성은 업무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특정 기술을 적용하여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이다. 반면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자가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큰 노력 없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도 영향을 준다. 사용자는 기술에 대해 사용하기 쉽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기술이 유용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주변 조건이 동일하면 사용자는 사용하기가 손쉬운 기술이 더 유용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사용자의 시스템 행위의도가 실제시스템 사용을 결정

⁴ 이제환·구정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요구’분석을 위한 실험적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화회지』 제30권 2호 (1999), pp. 93~121.

⁵ Wilson T. D.,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55, No. 3 (1999), pp. 249~270.

하며, 사용자의 시스템 행위 의도는 다시 사용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보고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제시하였다. Davis는 사용자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사용하여 이에 형성된 태도가 행동의도를 매개변수로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초기 기술수용모형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수용의도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합리적 행위이론과 기술수용모형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태도 변수가 포함된 초기의 기술수용모형에서 태도 변수의 매개적 역할이 미약하며,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함께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태도변수를 생략한 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뒤따랐다.⁷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자기효능 이론(Self-efficacy Theory), 혁신이론(Innovation Research), 비용-효익 연구(Cost-benefit Research) 등의 이론들은 기술수용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Davis⁸의 TAM이 공표된 이후 정보기술 수용 부문에서 일부 연구논문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기술수용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추가적인 연관성들을 제시하였다.^{9, 10, 11, 12} 사용에 대한 행위 의도의 영향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므로 모형의 근간을 유지하고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선행요인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에 대해 유용성과 지각된

⁶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1989), pp. 319~340.

⁷ Venkatesh V. & Davis F. D.,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46, No. 2 (2000), pp. 186~204.

⁸ Davis F. D., *Ibid.*, pp. 319~340.

⁹ Adams D. A., Nelson R. R. & Todd P. A.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and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 Replication," *MIS Quarterly*, Vol. 16, No. 2 (1992), pp. 227~247.

¹⁰ Gefen D. & Straub D. W.,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se of E-mail: An Extension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MIS Quarterly*, Vol. 21, No. 4 (1997), pp. 389~400.

¹¹ Igbaria M. & Livari I.,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omputer Usage," *Omega*, Vol. 23, No. 6 (1995), pp. 587~605.

¹² Straub D., Limayem M. & Karahanna-Evaristo E., "Measuring System Usage: Implications for IS Theory Testing," *Management Science*, Vol. 41, No. 8 (1995), pp. 1328~1342.

용이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기술수용과 관련하여 내적인 신념, 태도, 의도에 대한 외적인 요인의 영향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수용모형의 근본적 존재 목적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기술수용모형이 현실적이며 강력한 근거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변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수용모형은 MIS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확장되었다. 이 연구자들에 의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연구는 내적인 신념요소인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변수들에 대해 주안점을 두며 두 변수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Igbaria & Livari¹⁴는 컴퓨터 사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효율성지각이 컴퓨터의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컴퓨터에 대한 사용경험과 회사의 지원 개념을 포함한 확장 기술수용모형을 검증했다. 그 결과 자아효율성 인식은 컴퓨터의 사용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용이성 개념에는 상당히 강력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지각된 유용성에는 지각된 용이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enkatesh & Davis¹⁵는 자신감 및 객관적 사용가능성을 포함,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선행 요인들의 모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신감은 사용자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기존연구들이 기술수용모형의 사용 용이성 및 유용성이란 변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두 변수가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의도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Gefen et al.¹⁶의 연구에서는 구매자가 마지막으로 구매를 경험한 벤더에 대해 지속적인 구매 의사는 신뢰와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 및 유용성 모두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¹³ Legris P., Ingham J. & Collette P., "Why do People Use Information Technology? Critical Review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0, No. 3 (2003), pp. 191~204.

¹⁴ Igbaria M. & Livari I.,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omputer Usage," pp. 587~605.

¹⁵ Venkatesh V. & Davis F. D., "A Model of Antecedents of Perceived Ease of Use: Development and Test," *Decision Sciences*, Vol. 27, No. 3 (1996), pp. 451~481.

¹⁶ Gefen D., Straub D. W. & Boudreau M. 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No. 7 (2000), pp. 1~70.

2.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성취와 연관되어,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믿음으로써, 본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 하겠다. 개인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행 수준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¹⁷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며, 행동에 대한 이행가능성 판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능력 수준을 어느 정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결과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하여 보다 큰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줬다.¹⁸

3. 주관적 규범에 관한 선행연구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족 및 친구 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합리적 행동이론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 연구에서는, 규범적 영향에 대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타 중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유하는 도덕성에 대한 느낌, 또는 어떤 행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 등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¹⁹ 이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규범적 영향의 정도가 크면 각 개인은 그에 따른 행동 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jzen²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의도에 미치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특히, 아시아지역 사회에서 더 강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로 주관적 규범은 정보 수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¹⁷ Bandura A. & Shunk D, H.,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mixi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81), pp. 586~598.

¹⁸ *Ibid.*, pp. 586~598.

¹⁹ Bogozzi R. P.,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A Test of Some Ke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81), pp. 607~627.

²⁰ Ajzen I., "From Intention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I. Kuhl & J. Beckmann(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Springer* (1985), pp. 11~39.

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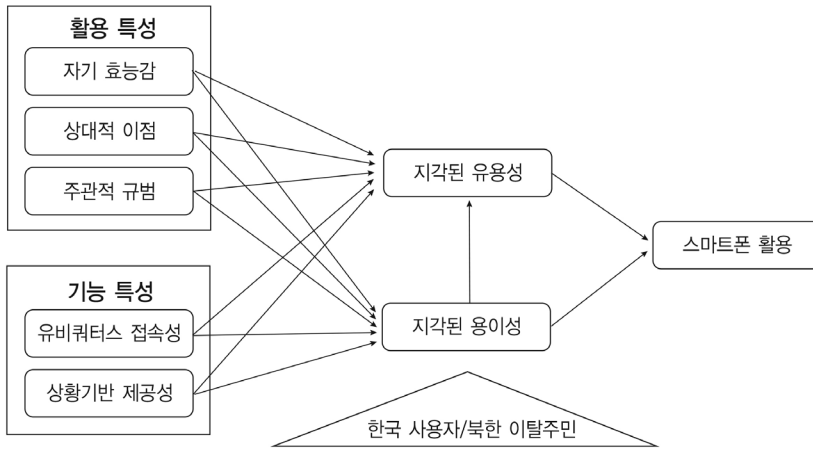
본 연구는 Davis²¹의 정보기술 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기술수용모형은 초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조직 내에 도입할 때 이용을 활성화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IPTV, DMB 등과 같은 각종 뉴미디어 기술들이 시장에 출시될 때 사회적으로 수용을 활성화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도 적용되는 등 다양한 정보기술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두루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기술수용모형이 여러 기술 분야의 후속연구에 적용되면서, 연구자들은 각 기술별로 용이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주게 될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기의 기술수용모형을 토대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을 사용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활용특성인 자기 효능감, 상대적 이점, 주관적 규범과 기능 특성인 유비쿼터스 접속성, 상황기반 제공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의 특징은 그간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스마트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적합하게 가급적 단순화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 및 기능 특성으로 구분하여 스마트폰 기반 정보수용에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개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을 가장 중요한 활용요인으로 부각하면서 한계를 보인 바 있어,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²¹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pp. 319~340.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가. 사용자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가설

관련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며 동시에 열심히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목표를 세우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고 인내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²²

상대적 이점은 혁신(새롭다고 인식하는 아이디어, 제품 등)이 과거의 제품 또는 서비스보다 낫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새로운 혁신이 얼마나 과거의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가에 대해 수용자가 느끼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용해온 제품이나 서비스 보다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되기도 한다. 잠재적인 수용자에게 상대적 이점이 있는 혁신은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게 해 주는 사례도 있다. 혁신의 본질은 상대적 이점의 어떤 형태가 수용자들에게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 편리함, 사회적 지위, 만족감 등이 그 중요함의 척도가 된다.²³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

²²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 man and Company, 1997).

²³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 (Free Press, 2003).

람들이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개인이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각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압력 또는 사회적 영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²⁴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사용자 특성(활용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사용자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기 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상대적 이점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용자 특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자기 효능감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상대적 이점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시스템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에 대한 가설

유비쿼터스 접속성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 받거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로 정의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들에게 다른 매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전달해 줌으로써,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용의 타당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는 이 제시한 즉시 접속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모바일 특성 중 편재성, 이동성, 즉시 접속성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25, 26, 27, 28, 29}

상황기반 제공성은 개개인이 처한 시간, 위치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

²⁴ Fishbein M. & Ajzen I. *Beliefs,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²⁵ 김호영,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2001).

²⁶ 김진우, “국내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의 현황과 추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제19권 1호 (2001), pp. 35~45.

²⁷ 이태민·전종근, “유비쿼터스 접속성과 상황기반 제공성이 모바일 상거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3권 제4호 (2004), pp. 1043~1071.

²⁸ 노미진·김호열, “모바일 특성이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2007).

²⁹ 최현라, “모바일 특성 하에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산 업경제연구』 제17권 4호 (2004), pp. 1399~1420.

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는 Durlacher³¹ 등이 제안한 모바일 특성 중 개인화와 위치 확인성이 반영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혹은 특정 정보나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특성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 접속성과 개인이 처한 시간, 위치와 같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상황기반 제공성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용·구매시점 촉진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용시점 촉진활동은 수용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및 장소에 잠재 이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진하게 된다고 한다.^{32, 33, 34}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시스템 특성(기능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시스템 특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유비쿼터스 접속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상황기반 제공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시스템 특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유비쿼터스 접속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상황기반 제공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과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가설

Davis³⁵는 정보기술이 자신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따라 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지각된 용이성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데 정신적·신체적 노력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각된 유용성은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이 효율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들

³⁰ 이태민,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고객관계 구축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제9권 1호 (2004), pp. 61~96.

³¹ Durlacher, *UMTSReport* (2001).

³² Leeds D., “Accountability is In-store for Markets in 94,” *Brand week*, Vol. 14 (1994), p. 17.

³³ Quelch J. & Kristine C. B., “Better Marketing at the Point of Purchas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1, No. 6, (1983), pp. 162~169.

³⁴ Shimp T. A., *Advertising Promotion* (Dryden Press, 2000).

³⁵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pp. 319~340.

이 주어진 시스템이 유용하다고는 믿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이 사용하기에 너무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든다면 그 시스템의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할수록 더 유용한 것으로 지각되며, 더 유용한 것으로 지각될수록 사용자의 태도나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따라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의 지각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는데 먼저, 사용경험이 적은 집단은 수용대상을 피상적(도구적 믿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경험자에 비해 편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으며, 고경험자의 경우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평가함으로써 유용성의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³⁶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관한 연구를 좀 더 살펴보면,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의 평가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7, 38} CRM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⁹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얼마나 정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는 사용자의 긍정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 활용 수준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러한 기대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스마트폰 활용이란 ‘개인이 정보취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말한다. 평소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문제는 정보 활용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⁴⁰ 따라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의 인식 정도가 스마트폰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³⁶ Castaneda J. A., Munoz-Levia F. & Luque T., “Web Acceptance Model: Moderating Effects of User Experience,”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4, (2007), pp. 384~396.

³⁷ Venkatesh V. & Davis F. D., “A Model of Antecedents of Perceived Ease of Use: Development and Test,” *Decision Sciences*, Vol. 27, No. 3 (1996), pp. 451~481.

³⁸ 오창규·장활식, “의사결정 상황을 반영한 기술수용모델의 평가,” 『경영학연구』 제33권 3호, (2004), pp. 839~863.

³⁹ Avlonitis G. J. & Panagopoulous N. 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RM Technology Acceptance in the Sales For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4, (2005), pp. 355~368.

⁴⁰ 이복자·명승환, “노인의 정보 활용 실태를 통해 본 지역정보화사업의 쟁점: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3호 (2010), pp. 239~259.

H5: 지각된 유용성은 스마트폰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지각된 용이성은 스마트폰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변수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참고 문헌
자기 효능감	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다.	Bandura(1977),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0)
	나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잘 이해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능숙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수집에 자신감이 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상대적 이점	나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Roger(2003)
	나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든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노력이 적게 든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방식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주관적 규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ishbein & Ajzen(1975)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찬성한다.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나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많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스마트폰 정보 수집에 대해 나에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많다.	
유비쿼터스 접속성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김호영, 김진우(2002), 이태민(2004), 이태민·전종근(2004)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에 즉시 접속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나는 이동하는 과정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변수	측정항목	참고 문헌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적게 든다.	Bandura(1977), 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이 적게 든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 (의사소통, 정보 검색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유용하다.	
지각된 용이성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을 쉽게 배웠다.	Davis(1989), Venkatesh & Davis(2000), Adams et al.(1992)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은 쉽게 이해된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것은 전반적으로 쉽다.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쉽게 대처 할 수 있다.	Taylor& Todd(1995), Davis(1989)
	나는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나는 교육/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나는 음악 영화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나는 게임 등 오락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나는 전자상거래 등 쇼핑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V. 실증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설정하였고 표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답 자들과 면대면(face-to-face) 형식의 설문 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 약 2주간 회수된 설문지 108부를 취합하여 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과 신뢰성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 227부의 설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표 4>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표 4>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자	81	35.7
	여자	146	64.3
연령	20세 미만	11	4.8
	20대	19	8.4
	30대	59	26.0
	40대	77	33.9
	50대 이상	61	26.9
직업	학생	22	9.7
	공무원	5	2.2
	회사원	54	23.8
	전문직	7	3.1
	사무/기술직	8	3.5
	교육자	2	0.9
	자영업	8	3.5
	주부	63	27.8
기타	58	25.6	
수입	100만원 미만	111	48.9
	100~200만원 미만	92	40.5
	200~300만원 미만	24	10.6
	300만원 이상	0	0
학력	고교 졸업이하	166	73.1
	대학교 재학	25	11.0
	대학교 졸업	34	15.0
	대학원 재학	1	0.4
	대학원 졸업	1	0.4

북한이탈주민을 기준으로 첫째, 응답자의 성별로 알아보면 남성은 81명으로 전체의 35.7%, 여성은 146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였다. 둘째, 응답자 연령대는 40대가 77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20세 미만이 11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준다. 셋째,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 주부가 6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응답자의 평균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111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다섯째, 응답자의 학력으로 볼 때 고교 졸업이하가 166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반복측정 신뢰성(Test-retest Reliability), 대안항목 신뢰성(Alternative-form Reliability)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활용하여 0.7 이상일 경우 척도에 신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타당성은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기준 타당성(Criterion Related Validity),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을 측정도구가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인 구성개념 타당성을 채택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분석은 문항이나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문항이나 변수들을 묶어주어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고 관측 변수들의 내재된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탐색하여 요인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에 의한 직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들 가운데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value)은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41, 42, 43}

⁴¹ Nu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1978).

⁴²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2013).

<표 5> 탐색적 요인분석(독립변수)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성분					Cronbach's α
		1	2	3	4	5	
상황기반 제공성	E5	.825	.326	.178	.268	.078	0.956
	E4	.812	.311	.186	.279	.141	
	E3	.763	.213	.312	.185	.357	
	E2	.746	.226	.309	.195	.340	
	E1	.714	.207	.296	.202	.389	
자기 효능감	A3	.289	.822	.174	.275	.174	0.940
	A2	.249	.808	.208	.236	.235	
	A4	.340	.777	.219	.282	.185	
	A1	.214	.745	.273	.151	.264	
	A5	.145	.685	.235	.240	.261	
상대적 이점	B3	.269	.199	.752	.325	.234	0.926
	B2	.223	.219	.752	.296	.234	
	B4	.299	.205	.724	.245	.265	
	B1	.172	.289	.712	.298	.186	
	B5	.338	.299	.607	.276	.241	
주관적 규범	C4	.189	.231	.256	.796	.117	0.921
	C5	.142	.186	.195	.795	.185	
	C2	.321	.288	.302	.720	.199	
	C1	.296	.208	.346	.673	.199	
	C3	.205	.294	.276	.669	.252	
유비쿼터스 접속성	D2	.314	.299	.344	.234	.702	0.940
	D4	.420	.332	.253	.242	.648	
	D5	.333	.441	.202	.255	.635	
	D1	.133	.264	.426	.292	.633	
	D3	.424	.356	.325	.241	.624	

⁴³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amos 22.0』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0).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활용의 첫 번째 항목 H1과 두 번째 항목 H2가 기준 요인 적재량이 다르게 적재되어 이들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나타났으며 모두 Cronbach's Alpha 값이 0.7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성분			Cronbach's α
		1	2	3	
지각된 유용성	F1	.824	.328	.178	0.937
	F3	.821	.289	.204	
	F4	.812	.278	.230	
	F5	.811	.325	.220	
	F2	.792	.330	.213	
지각된 용이성	G2	.358	.844	.235	0.952
	G3	.283	.820	.342	
	G5	.321	.811	.285	
	G1	.372	.791	.229	
	G4	.444	.697	.341	
스마트폰 활용	H4	.184	.247	.856	0.812
	H5	.264	.349	.742	
	H3	.447	.453	.543	

4.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2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측정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는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반면에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의 문헌 연구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 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잠재변수	관측 변수	비표준 λ	S.E.	C.R.	표준화 λ	표준화 λ^2	오차 분산	개념 신뢰성	AVE
자기 효능감	A5	0.82	0.053	15.398	0.765	0.585	0.415	0.920	0.743
	A4	1			0.922	0.850	0.150		
	A2	0.923	0.039	23.482	0.919	0.845	0.155		
	A1	0.781	0.043	18.239	0.831	0.691	0.309		
상대적 이점	B4	0.882	0.056	15.734	0.847	0.717	0.283	0.873	0.697
	B2	1			0.850	0.723	0.278		
	B1	0.889	0.061	14.568	0.806	0.650	0.350		
주관적 규범	C4	0.927	0.056	16.497	0.796	0.634	0.366	0.914	0.728
	C3	0.909	0.051	17.662	0.823	0.677	0.323		
	C2	1			0.928	0.861	0.139		
	C1	0.947	0.049	19.409	0.859	0.738	0.262		
유비쿼터스 접속성	D5	0.978	0.047	20.822	0.872	0.760	0.240	0.923	0.752
	D4	0.938	0.042	22.523	0.897	0.805	0.195		
	D3	1			0.926	0.857	0.143		
	D1	0.749	0.048	15.561	0.765	0.585	0.415		
상황기반 제공성	E3	0.979	0.039	25.253	0.925	0.856	0.144	0.948	0.859
	E2	1			0.933	0.870	0.130		
	E1	0.981	0.039	25.071	0.923	0.852	0.148		
지각된 유용성	F4	0.916	0.053	17.404	0.846	0.716	0.284	0.922	0.746
	F3	0.923	0.054	16.996	0.835	0.697	0.303		
	F2	1			0.880	0.774	0.226		
	F1	0.913	0.047	19.464	0.893	0.797	0.203		
지각된 용이성	G5	1			0.896	0.803	0.197	0.938	0.792
	G4	0.896	0.047	19.242	0.869	0.755	0.245		
	G2	0.984	0.044	22.255	0.924	0.854	0.146		
	G1	0.954	0.05	19.268	0.870	0.757	0.243		
스마트폰 활용	H5	1			0.735	0.540	0.460	0.807	0.585
	H4	0.801	0.082	9.806	0.679	0.461	0.539		
	H3	0.943	0.076	12.427	0.868	0.753	0.247		

방법론에 따라 다른 항목들과의 높은 잔차 분산을 갖는 항목들을 제거함으로써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지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권고수준을 만족시키므로, 전반적으로 측정모형이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4, 45, 46} 다음은 적합도 지수들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각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Fornell & Larcker⁴⁷은 신뢰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첫째,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주는 영향인 λ^2 은 0.5 이상, 둘째, 합성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이라고 지칭되는 개념 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은 0.7 이상, 셋째, 추출된 분산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당성 검증의 기준은 첫째, λ 값이 유의해야 하며(C.R. > 1.96), 둘째, λ 값이 0.7 이상, 셋째, 두 잠재요인의 AVE1과 AVE2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하여 <표 7>과 같은 결과 값이 나왔다.

5. 판별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결과, 대부분이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스마트폰 활용의 네 번째 문항 H4의 λ^2 값이 0.5이상에 미치지 못하나 그 잠재변수의 개념신뢰성과 추출된 분산평균값(AVE)이 기준에 적합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타당성 검증 결과, λ 값이 유의하였고 <표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두 잠재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AVE값이 더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중 모든 문항들은 각각의 요인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각 문항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문항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⁴⁴ Anderson J. & Gerbing W.,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age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27, No. 1, (1988), pp. 5~24.

⁴⁵ Hair J., Anderson R., Tatham R. & Black W.,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 Hall International, 1998).

⁴⁶ Gefen D., Straub D. W. & Boudreau M. 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No. 7 (2000), pp. 1~70.

⁴⁷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1981), pp. 39~50.

<표 8> 판별타당성 분석

	자기 효능감	상대적 이점	주관적 규범	유비쿼터스 접속성	상황기반 제공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스마트폰 활용
자기 효능감	0.743							
상대적 이점	0.501	0.697						
주관적 규범	0.517	0.640	0.728					
유비쿼터 스 접속성	0.651	0.656	0.558	0.752				
상황기반 제공성	0.472	0.563	0.493	0.717	0.859			
지각된 유용성	0.483	0.792	0.563	0.773	0.687	0.746		
지각된 용이성	0.771	0.534	0.490	0.664	0.560	0.598	0.792	
스마트폰 활용	0.543	0.500	0.520	0.651	0.508	0.593	0.717	0.585

6.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 22.0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을 검증하였다. 완전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비록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를 얻기는 어려우며, 모형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각 적합지수는 전부 임계치 기준을 만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임계치 기준	이론적 근거	
절대 적합지수	모형 전반적 적합도	X2(p)	630.622	p < 0.05 (표본크기에 민감)	Muthe & Kaplan(1985)
			P=0.000		
		X2/df	1.781	1.0 ≤ x2/df ≤ 2.0 - 3.0	Carmines & McIver(1981)
		RMSEA	0.059	≤ 0.08	Browne & Cudeck(1993)
	RMR	0.078	≤ 0.08	Hair et al.(1998)	
	모형 설명력	GFI	0.843	≥ 0.8 - 0.9	Joreskog & Sorbom(1984)
		AGFI	0.807	≥ 0.8 - 0.9	Hair et al.(1998)
PGFI		0.686	≥ 0.5 - 0.6	Mulaik et al.(1989)	
충분 적합지수	독립모형 v.s. 연구모형	NFI	0.911	≥ 0.9	Bentler & Bonett(1980)
		IFI	0.959	≥ 0.9	Bollen(1989)
		TLI(NNFI)	0.952	≥ 0.9	Bentler & Bonett(1980)
		CFI	0.958	≥ 0.9	Bentler(1990)
간면 적합지수	모형 복잡성 고려	PNFI	0.794	≥ 0.5 - 0.6	James et al.(1982)
		PCFI	0.836	≥ 0.5 - 0.6	James et al.(1982)

7.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 22.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표 10>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첫째, 지각된 용이성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C.R.=7.535/P=0.000)과 상황기반 제공성(C.R.=2.242/P=0.025)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 이점(C.R.=0.761/P=0.447), 주관적 규범(C.R.=0.061/P=0.951), 유비쿼터스 접속성(C.R.=1.132/P=0.257)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자기 효능감($\beta=0.613$)이 미치는 영향이 상황기반 제공성($\beta=0.175$)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경로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eta	S.E.	C.R.	P값	결과
지각된 용이성	자기 효능감	0.613	0.095	7.535	***	채택
	상대적 이점	0.068	0.123	0.761	0.447	기각
	주관적 규범	0.005	0.089	0.061	0.951	기각
	유비쿼터스 접속성	0.123	0.119	1.132	0.257	기각
	상황기반 제공성	0.175	0.083	2.242	0.025	채택
지각된 유용성	자기 효능감	0.249	0.087	2.617	0.009	채택
	상대적 이점	0.482	0.099	5.314	***	채택
	주관적 규범	0.001	0.067	0.010	0.992	기각
	유비쿼터스 접속성	0.408	0.091	3.887	***	채택
	상황기반 제공성	0.147	0.064	1.920	0.055	기각
	지각된 용이성	0.196	0.074	2.083	0.037	채택
스마트폰 활용	지각된 유용성	0.303	0.093	3.715	***	채택
	지각된 용이성	0.614	0.076	7.265	***	채택

Note: *significant at .05(p<0.05), **significant at .01(p<0.01), ***significant at .001(p<0.001).

둘째,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C.R.=2.617/P=0.009), 상대적 이점(C.R.=5.314/P=0.000), 유비쿼터스 접속성(C.R.=3.887/P=0.000), 지각된 용이성(C.R.=2.083/P=0.037)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상대적 이점($\beta=0.482$)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규범(C.R.=0.010/P=0.992)과 상황기반 제공성(C.R.=1.920/P=0.055)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는 지각된 유용성(C.R.=3.715/P=0.000)과 지각된 용이성(C.R.=7.265/P=0.000)이 전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용이성($\beta=0.614$)이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유용성($\beta=0.303$)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다.

VI.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한 후 이런 요인들과 스마트폰 활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스마트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앞으로의 스마트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효능감과 상황기반 제공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 이점, 주관적 규범 및 유비쿼터스 접속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자기 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이 상황기반 제공성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이 크며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본인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스마트폰이 기타 모바일 디바이스에 비해 활용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고, 주위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 효능감, 상대적 이점, 유비쿼터스 접속성,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규범과 상황기반 제공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상대적 이점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스스로의 노력 및 능력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믿음, 스마트폰이 타 모바일 디바이스에 비해 뛰어나다는 인식,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에 대한 만족감, 누구나 쉽게 터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쉬운 사용법 등 요인들로 인해 스마트폰은 유용하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 및 기대하거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꼭 유용한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모두 스마트폰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용이성이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유용성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스마트폰이 사용하기 쉽고 또 유용하여, 사용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종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한 신념과 기대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취득,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함, 스마트폰 자체의 쉬운 사용법 등 4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일반국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새로운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 관점에 대한 연구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상을 연구함으로써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모바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스마트폰 활용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한 예측만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학술적인 측면에 이어 실무적인 측면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기효능감과 상대적 이점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스마트폰 활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문제를 타인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밝혀진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 정착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강화해야겠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인 스마트폰 활용능력과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실제 활용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 392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전반적인 IT교육과 병행하여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각 지역 하나센터에서 지역 적응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초기집중교육을 2주 60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 ‘스마트폰 대중화 사회’인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고 기대 수준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효과적인 활용 및 소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활용교육이 뒷받침된 후에는 스마트폰 내에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반에 걸쳐 그 과정과 현재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정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의 능동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손쉬운 인터페이스 체계를 갖춘 맞춤형 전용 앱 등을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게 하고, 정착지원 또는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관련 정책에 반영할 만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스마트환경을 통해 직접 받는 등 스마트폰을 좀 더 실질적으로 접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 설문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의 약 50%(227명 중 111명)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고, 약 80%가 월 수입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스마트폰에 대해 스스로의 노력 및 능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주요 긍정적 요인으로 나왔고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인식하는 것이 증명된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수적인데, 효과적인 지원분야가 바로 스마트폰과 연관된 지원 사업일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 하나재단)의 역할이 필

요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착지원법 제30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 자활, 교육 연구, 상호이해 및 통합 등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하나원을 수료한 정착초기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TV, 전기밥솥 등의 가전 제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조기에 한국사회와 동질성을 느낄 수 있고 공동체 형성에도 적극성을 떨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고 통일 후 북한주민과 우리 국민 간의 이질성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넷째, 이번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중 20여명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NK지식인연대)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100배 즐기기’란 교육(15.9월)을 받은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예상 밖으로 스마트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인 사진 저장, 정보 찾기, 음악을 다운 받는 것 등도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조차도 상대적으로 잘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깨지는 등 40대, 50대 연령층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직업에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게임을 하는 데만 사용할 뿐 정보를 습득 또는 관련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다. 50대 이상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초적 IT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빈약했으며 문자 보내기도 익숙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단지 통화용도로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번 논문을 위한 설문을 실시할 때 질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런 경우, 별도로 주석을 달거나 또는 추가적인 구두 설명을 통해, 문맥을 이해시킨 다음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북한이탈주민 계층이 스마트폰 활용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20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스마트폰 기능 조작뿐만 아니라 정보 습득, 정보 활용, SNS 참여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주변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등 상당히 능숙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계층적인 차이가 있고 언어의 뜻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의 기회,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스마트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 효능감, 상대적 이점, 주관적 규범, 유비쿼터스 접속성, 상황기반 제공성 등 5가지로 추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5가지 요인으로 스마트폰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하여 한층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스마트폰 활용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탈북 초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이미 국내에 정착하여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마친 북한이탈주민간의 스마트폰 활용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해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각 요인들을 기준으로 T-Test 분석을 진행하여 요인 자체에 대한 차이는 파악할 수 있었으나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요인과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경로에 대한 차이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분석을 이용하여 각 경로의 차이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까지 국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동 의도나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관계로, 전반적인 이론적 토대가 풍부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보편화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겠다.

■ 접수: 4월 29일 ■ 심사: 5월 22일 ■ 채택: 6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amos 22.0』.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0.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앤엠북스, 2013.
- 통일부. 『통일백서』. 2015.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5.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기회의 대두와 효율적 정보 활용』. 2003.
-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 man and Company, 1997).
- Durlacher, *UMTSReport* 2001.
- Fishbein M. & Ajzen I. *Beliefs,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 Hair J., Anderson R., Tatham R. & Black W.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 Hall International, 1998.
- Nu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1978.
-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 Free Press, 2003.
- Shimp T. A. *Advertising Promotion*. Dryden Press, 2000.

2. 논문

- 김진우. “국내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의 현황과 추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제19권 1호, 2001.
- 김호영.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2001.
- 노미진·김호열. “모바일 특성이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2007.
- 오창규·장활식. “의사결정 상황을 반영한 기술수용모델의 평가.” 『경영학연구』. 제33권 3호, 2004.
- 이복자·명승환. “노인의 정보 활용 실태를 통해 본 지역정보화사업의 쟁점: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3호, 2010.
- 이제환·구정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요구’분석을 위한 실험적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학회지』. 제30권 2호, 1999.
- 이태민.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고객관계 구축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제9권 1호, 2004.
- 이태민·전종근. “유비쿼터스 접속성과 상황기반 제공성이 모바일 상거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3권 4호, 2004.
- 최혁라. “모바일 특성 하에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7권 4호, 2004.

- Adams D. A., Nelson R. R. & Todd P. A. "Perceived Usefulness, Ease of Use, and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 Replication." *MIS Quarterly*, Vol. 16, No. 2. 1992.
- Ajzen I. "From Intention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I. Kuhl & J. Beckmann(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Springer* 1985.
- Anderson J. & Gerbing W.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age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27, No. 1. 1988.
- Avlonitis G. J. & Panagopoulous N. 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RM Technology Acceptance in the Sales For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4, 2005.
- Bandura A. & Shunk D, H.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mixi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81.
- Bogozzi R. P.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A Test of Some Ke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81.
- Castaneda J. A., Munoz-Levia F. & Luque T. "Web Acceptance Model: Moderating Effects of User Experience."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4. 2007.
-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Vol. 13, No. 3. 1989.
-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1981.
- Gefen D. & Straub D. W.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se of E-mail: An Extension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MIS Quarterly*, Vol. 21, No. 4. 1997.
- Gefen D., Straub D. W. & Boudreau M. 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4, No. 7. 2000.
- Igbaria M. & Livari I.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omputer Usage." *Omega*, Vol. 23, No. 6. 1995.
- Leeds D. "Accountability is In-store for Markets in 94." *Brand week*, Vol. 14. 1994.
- Legris P., Ingham J. & Collette P. "Why do People Use Information Technology? Critical Review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 Management*, Vol. 40, No. 3. 2003.
- Quelch J. & Kristine C. B. "Better Marketing at the Point of Purchas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1, No. 6. 1983.
- Straub D., Limayem M. & Karahanna-Evaristo E. "Measuring System Usage:

- Implications for IS Theory Testing.” *Management Science*, Vol. 41, No. 8. 1995.
- Wilson T. D.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55, No. 3. 1999.
- Venkatesh V. & Davis F. D.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 46, No. 2. 2000.
- Venkatesh V. & Davis F. D. “A Model of Antecedents of Perceived Ease of Use: Development and Test.” *Decision Sciences*, Vol. 27, No. 3. 1996.

3. 기타자료

통일부. <www.unikorea.go.kr>.

_____. 『북한이탈주민정책 자료(www.unikorea.go.kr)』.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Smartphone Uti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Chul-Ho Song, Moon-Young Kang and Yong-Tae Shi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smart phones which is still unsatisfactory and to seek a policy plan under a situation like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ing rapidly in a smart way. To mak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 had set up a research model emphasizing an application characteristic and a functional characteristic. And I had collected data by doing a survey targeting 227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hypothesis had been verified by analyz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the result of the test, I set up the independent variable causing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Smart-information such as Self-efficacy, Relative Advantage and Subjective Norm, and had created Ubiquitous Connectivity and Contextual Offer as a smart phone's characteristic function. Also having found out the independent influence of those variables.

As a positive research had been conducted on North Korean defectors, this finding is meaningful. Futhermore it has given a valuable result by examining closely characteristic of smartphones' function and finding out what kind of effects they have on. It also suggests that more legislation and organization in order to stimulate North Korean defectors' use of smartphones in government supporting policies.

Being a little bit unsatisfied with that the model was insufficient to the standard on the subject of smartphone using analysis and the collection of sample data was in a single moment.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martphone Utilization

통일한국의 정부관료체제 구축방안*

이 준 호** · 양 현 모***

- | | |
|-------------------------|--------------------|
| I. 서론 | IV. 실무공무원 인식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통일 이후 관료체제 구축방안 |
| III. 통일독일의 관료체제 구축 사례분석 | VI. 결론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독일통일과 유사하게 남한 정부를 중심으로 북한이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남북통일 이후 통일정부의 관료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독일 통일사례분석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는 북한관료들의 검증을 포함한 인력 흡수,

재임용과 복직문제, 신규인력의 충원 방식, 교육·훈련 방식, 남북 관료 간의 급여체계, 행정문화 통합 방안 등 단일한 관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해결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주제어: 통일한국, 관료체제, 관료검증, 재임용, 인력 충원

I. 서론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약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의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통일을 강조하였지만, 통일을 위한 실질적 정책추진과 통일준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어떤 시기에는 정치적 수사로만 ‘통일’을 강조하였지 실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은 부재하였으며, 통일준비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통일준비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되어

* 이 논문은 KIPA연구보고서 2015-17의 『통일한국 관료시스템 구축방안』을 수정·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임.

**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점진적인 통일을 기본전제로 하여 통일과정을 논의하는 데에 주력하여 온 반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급진적 통일에 대한 대비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경우도 독일 통일과정과 같이 남한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흡수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급진적으로 남북통일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통일정부 조직체제와 관료체제의 정비이다. 그래야만 통일정부를 중심으로 북한까지 확장된 영토에 대한 통치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체제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일정부의 관료체제를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¹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통일독일과 유사하게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이 편입되는 통일 상황을 기본전제로 하여, 통일 이후 통일정부의 관료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남북한 통일 이후 통합된 관료체제의 구축에 대한 방법,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여, 남북통일 이후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및 재임용, 교육과 배치 그리고 처우, 새로운 행정문화 구축 등 관료체제 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체제통합을 이루어낸 독일통일 사례분석과 현재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부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병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료체제(Bureaucratic System)의 의의

관료(bureaucrat)는 정부관료제를 구성하는 직업공무원이며, 국가 및 지방행정

¹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것으로 박해욱(2002)의 연구는 북한이 사회주의 행정에서 민주주의 행정으로 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력이전방법, 북한관료들에 대한 해고 및 숙청, 공무원제 도입,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통일국가의 정부관료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전반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며, 한부영 외(2009)의 연구는 점진적 통합프로세스를 전제로 지방공무원의 인력통합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박해욱, “통일 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력통합의 모색,” 『한국행정연구』, 제11권 제4호 (2002), pp. 176~207; 한부영·김병국,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을 담당하는 정부의 인적 구성 요소이다. 관료들은 정책과정에서 정치시스템과의 연계선상으로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대통령과 장관 및 정무직 리더들을 제외한 직업관료들로 구성되어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국정관리를 수행한다. 현대국가의 행정은 기능적 측면에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부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²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관료제를 유지시키는 전문화된 관료들은 어느 시대 또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국가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핵심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는 복잡하게 일어나는 국내외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창의적·분석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관료를 요청하고 있다. 즉, 이전보다 행정관료의 새로운 식견과 전문성 그리고 소명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제의 발전은 관료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높은 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들을 아무런 인사원칙도 없이 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시키지 못한다면, 관료들에게 상황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적절한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조화로운 관료문화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도 관료들의 능력발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의 채용 및 임용, 교육훈련, 보수, 관료문화 등의 인사관리 구성 요소가 중요하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 연관성을 갖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³

2. 통일한국 관료체제 구축의 구성요소와 분석틀

정부조직의 관료체제 구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누구를 관료로 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셋째, 어떤 능력을 가진 관료에게 어떤 직위나 직무를 맡길 것인가 넷째, 관료들의 계급체계 또는 공직분류체계는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다섯째, 그러한 직위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배양하고 교육할 것인가 등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관료체제는 각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각 정부체제가 처한 역사적 배경,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현실적 필요성 등에 따

² 이종수 외,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14), p. 34.

³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3), pp. 157~163.

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의 관료체제는 서로 상이한 남북한 관료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관료체제 구축은 통일에 대한 이념, 통일을 전후한 남북한 환경과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각 구성 요소별로 구축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일 한국 관료체제의 기본 전제는 남한의 기존 관료체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기존 정부관료제 특성이나 관료들의 특성과 능력, 북한실정에 적합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청 등을 감안한다면, 관료체제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인사원리와 제도, 관리기술과 같은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통일 후 통일 한국의 공공정책과 행정을 담당할 관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축은 단순하게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 남한의 관료체제에 적합한 북한 출신 관료들을 선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수행하여야 할 통합과제 및 공공행정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체제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어느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전체를 포괄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관료의 인사원리와 제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관료의 검증과 채용, 적재적소에 배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보수 및 복지후생까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체계적인 구축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한국 관료체제 구축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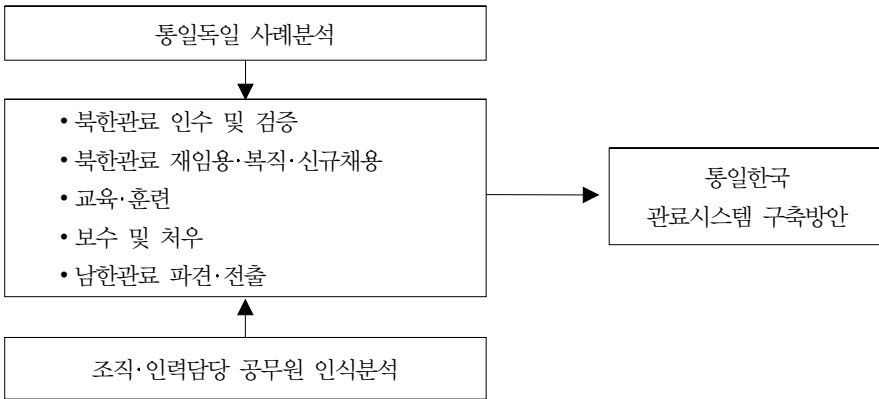
첫째, 북한 관료체제에서는 사실상의 해체 수준을 밟고 난 후 관료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재임용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둘째, 검증작업을 통과하지 못한 관료들을 대체하거나 새롭게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해 북한지역에서도 신규채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임용자와 신규로 채용된 자들에 대해 직무지식과 기술, 소양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키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 보수체계와 처우의 문제인데, 남북한 관료 간의 지역 환경과 직무여건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 관료들의 북한 파견이나 진출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료체제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적 기반을 기초로 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우리에게 분단국가

통일의 범례가 되고 있는 독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가 얻을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남한 관료체제의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용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통일 한국 관료체제의 구성요인 체계와 과정으로 구성되는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Ⅲ. 통일독일의 관료체제 구축 사례분석

1. 통일독일 관료체제 구축방향

독일 통일이 동독 체제의 붕괴 및 이에 따른 서독 체제로의 편입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 후 사회 각 분야의 체제구축 과정은 당연히 구서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통일 후 관료체제 구축도 다른 분야의 체제구축과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은 분단 후 40여 년간 유지·발전시켜 왔던 고유의 관료체제를 포기하고 구서독 관료체제를 받아들였다. 관료의 역할과 임무도 구동독 체제에서 구서독 체제로 변해야 했으며, 관료의 채용과 임용방법, 교육훈련 방법 등도 모두 구서독 체제로 바뀌어야만 했다.

통일 전 일차적으로 동독 고위관료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퇴 과정을 거친 뒤 통일정부에 인계되었다. 물론 구동독 시절 당과 당 외곽단체, 기업소 등에 간부로 재직하면서 ‘관료’에 속해 있었던 다수의 인력들은 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

다. 이들은 구동독 시절에는 국가간부로서 관료에 포함되었지만 구동독이 몰락하면서 소속해있던 단체 및 기관들이 해체되면서 퇴직하였다.

종합하면 통일 후 인수된 관료들은 통일 당시 존속해 있던 구동독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통일 후에도 공직에 재임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정부가 이들 모두를 재임용할 수는 없었다. 일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검증에 합격한 일부 인력에 한해 공직에 재임용 하였으며, 나머지는 퇴임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구동독 관료의 인수와 재임용 절차에 대한 내용은 통일조약에 규정되어 있었다.

2. 통일독일 관료체제의 과정 및 내용

가. 구동독 관료 인수 및 검증

(1) 인수

독일 통일과 함께 구동독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모든 관료들은 통일정부에 인수되었다. 구동독에서 통일독일로 인수된 자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국가와의 고용관계가 일단 유지되었다. 1990년 통일 직전 동독정부가 서독정부에 통보한 동독 관료의 수는 2,125,054명이었다.⁴

인수된 구동독 관료 수는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당시 구서독 지역에서 근무하던 관료 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⁵ 이 인력 모두를 통일독일의 관료로 재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구동독 체제 지지 세력이었기 때문에 통일정부가 이들 모두를 통일독일의 관료로 재임용할 수는 없었다.

실제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동독 관료의 특징을 보면, 서독에서 강조되어온 법률에 기초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기타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도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독의 공직자의 능력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도와 출신성분 그리고 사회적 성분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의 관료체제에서는 관료의 정치화가 만연되어

⁴ 통일정부는 통일과 함께 구동독으로부터 인수한 약 210만 명의 인력은 입법·사법·행정부에 소속된 모든 인력이었으며, 여기에는 약 17만 명의 인민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해욱, “통일 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력통합의 모색,” p. 192.

⁵ 1990년 통일 당시 서독 공직자(공무원과 공공계약직원)의 수는 약 492만 명으로, 인구 6,000만 명의 약 8.2%에 해당된다. 인구의 13%가 관료인 동독보다는 서독 공직자의 수는 적은 편이었다.

있었으며 관료의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구동독 출신 관료 모두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여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는 이들을 대체할 인력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들을 모두 해고할 경우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체제구축 과정에서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정부는 이들 구동독 출신 관료들에 대해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걸쳐 일부 인력을 재임용하고 나머지 인력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2) 인수된 관료에 대한 검증

인수된 구동독 관료들을 검증해서 재임용 또는 해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은 통일조약의 특별규정이었다. 통일조약 특별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구동독 관료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 1> 구동독 관료 해고 사유

구동독 관료 검증에 관한 특별규정 내용

-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 개인의 자질이 하고 있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기관의 행정 수요가 부족한 경우
- 근무하던 기관이 폐쇄될 경우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독일 연방하원양케이트위원회 보고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9), p. 74.

통일조약은 별도로 구동독 시절 인권 유린 범죄에 가담한 자, 구동독 정보기관인 국가보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Stasi) 또는 국가보안청(Amt für Nationale Sicherheit)⁶에 활동했던 자는 그 경력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임하도록 규정하였다.⁷

⁶ 이들 기관은 구동독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었다. 통일 이후 이들 기관이 구동독 시민에 대한 도청, 압살 등 인권탄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으며, 수많은 관료들이 이 기관 활동에 참가하였던 이유로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통일 정부의 숙청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다수의 정보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세탁·위장하여 통일 이후 다른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⁷ 통일부, 『독일통일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2013), p. 200.

검증 작업은 구동독 각 주별로 추진되었는데,⁸ 검증을 위한 추진체계는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독립된 인사위원회(Personalrat)를 각 분야별로 설치하였으며, 담당 부처에서도 인사위원회의 활동과 별개로 구동독 관료의 과거사 검증기관과 협력하여 인사위원회의 검증작업을 도왔다.⁹

각 주의 인사검증 책임자들은 인사기록카드를 보충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검증 대상자에게 응답하도록 했다. 이 설문지의 내용은 상세해서 교육 및 전문 지식, 과거의 직업 및 직책 등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국가보위부의 연루 사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활동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응답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설문에서는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했는지, 구동독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1989년 동독 시민혁명의 참여 여부와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도 답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¹⁰

나. 재임용·복직·신규채용

어려운 검증 절차를 통과해 각 주 인사위원회 또는 기타 검증기관으로부터 통일독일의 관료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는 재임용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바로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우선 ‘시보공무원(Probebeamte)’으로 임용이 되어 2~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근무하여야 했다.

검증과 함께 통일 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공직에서 물러난 구동독 주민들의 복직 신청도 있었다. 복직 신청자들은 구동독 시절 공직에 있다가 1989년 시민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퇴직했던 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 예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구동독 시절 근무 중 서방으로의 해외여행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사들이 통일 후 복직 신청을 했다.¹¹ 그러나 이들의 복직 신청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검증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밖에 신규채용도 추진되었다. 각 주정부는 구동독 지역은 물론 구서독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료 신규채용을 시작했다. 통일정부는

⁸ 독일은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⁹ 브란덴부르크의 경우 검증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경찰노조위원장은 특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찰관을 검증하였으나, 다른 주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우선 검증을 받은 후 검증에 통과할 경우 다른 사람 검증작업에 참여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실태 보고서(Ⅲ): 독일 연방하위양케이트위원회 보고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9), p. 120.

¹⁰ 위의 책, p. 77.

¹¹ 위의 책, p. 102.

구동독으로부터 인수된 관료들의 검증 및 재임용도 중요하지만, 빠른 행정통합과 구동독 지역의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 물론 이들 신규채용 합격자 역시 구서독 지역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합격 후 교육 및 시보공무원 기간을 거쳐야 했다. 채용시험 방법과 과정은 구서독 관료 채용시험과 동일했으며, 특히 구동독 지역 출신이 구서독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다. 교육·훈련

검증 과정을 통과해 시보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새로운 체제의 공직자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단 검증 과정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민주국가의 관료로서 그 자질이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구동독 국가간부에게는 국가의 ‘공복’으로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보다는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심 등이 요구되었으며, 교육훈련도 마르크스 사상과 정치력 향상 등에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통일 후 민주주의 행정체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실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교육내용은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헌법, 행정법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재정과 세제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¹²

구동독 출신 관료 교육 및 훈련에 있어 일차적인 역할은 연방정부가 담당하였다. 연방정부는 연방행정아카데미(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연방민방위아카데미(Bundesakademie für zivile Verteidigung), 연방재무아카데미(Bundesfinanzakademie) 등 소속 교육기관들을 통해 구동독 출신 관료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방행정아카데미는 독일 연방 차원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으로 통일 전부터 독일 공직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통일 후에도 구동독 관료 교육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¹³

¹² 박해육, “통일 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력통합의 모색,” pp. 195~196.

¹³ 통일부, 『독일통일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p. 83.

라. 보수 및 처우

구동독 출신 관료들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어 통과한 관료들이 나타나고, 신규채용을 통해 새로운 관료들이 배출되면서 구동독 지역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의 후생복지 특히, 적정 보수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래 국가 내 모든 지역의 관료 급여는 동일 직급일 경우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동서독 지역 간에 물가 및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통일정부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1991년 1월부터 구동독 지역 관료들에게는 구서독 동일 직급 관료의 60%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시행하였다. 물론 이 보수 수준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며 매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회복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다.

마. 관료의 파견·전출

독일 통일과 함께 구서독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관료들이 구동독 지역으로 파견·전출되었다. 구서독 관료의 구동독 지역 파견은 통일 전인 1990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통일이 가시화되면서 동독의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 정부는 동독 체제의 안정과 정상적인 통일과정을 위해 서독으로부터 행정인력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¹⁴ 당시 동서독은 통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동독은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주권국가였기 때문에 서독에서 행정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¹⁵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으로의 인력 지원은 결과적으로는 관료통합과 체제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한편 구동독 지역으로 이주한 구서독 인력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으로 인해 구동독 인력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으며, 구동서독 인력 간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¹⁴ 구동독으로의 인력 지원을 촉진시키려는 조치도 뒤따랐다. 통일정부는 파견·전출을 희망하는 인력들에게 주거지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 추가 지출액을 보상해주시기로 약속하였으며, 근무평가 시 신연방주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높게 평가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위의 책, p. 89.

¹⁵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5), p. 115.

3. 통일독일의 사례의 시사점

관료체제의 비교에 있어 북한과 동독의 상황이 다르며, 한국과 서독의 상황 또한 동일하지 않다. 이 밖에 통일과 관련된 환경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 관료체제 구축과정이 반드시 독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남북통일 이후 관료체제 구축은 독일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독일 통일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며 또한 좋은 사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관료체제 구축 사례 연구는 한반도 관료체제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전제와 같이 한반도 통일이 독일과 비슷한 방법으로 현실화된다면 남북의 관료체제 구축도 독일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독일 사례의 분석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 이후 남북한 관료체제 구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통일 이후 북한 출신 관료들의 수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약 이들을 모두 인수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재임용 또는 해고할 것인가?
- 북한 출신 관료의 과거 행적(북한주민 인권 유린 행적 등)은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어느 수준에서 재임용 또는 해고를 결정할 것인가?
- 해고된 북한 출신 관료들의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재임용된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통일 후 북한지역의 젊은이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 통일 이후 북한 출신 관료들의 보수 등 후생복지 수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통일 후 남한 공무원을 북한지역으로 파견·전출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인가?
- 만약 공무원 파견·전출이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IV. 실무공무원 인식분석

1. 조사 설계

통일 한국 관료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일 한국 관료체제 구축의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조직·인력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관료인력체제 관리의 유관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공무원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 인력관리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통일전담부처인 통일부, 북한공무원 검증과 유관부처인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7개 부처로 구성되었고, 지방정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두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의 인식분석에서 의도하는 바는 일반적인 견해 보다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분야 업무담당자이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남성 88명(72.1%)과 여성 34명(27.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속기간은 21년 이상이 34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이 28명(23.0%), 1~5년이 23명(18.9%), 11~15년이 22명(18.0%), 16~20년이 15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체로 근무 경력이 많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본 설문조사에서 경험에 입각한 보다 적실성 있는 응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급별 분포는 고위공무원단 1명(0.8%), 과장급(3~4급) 27명(22.1%), 계장급(4~5급) 36명(29.5%), 6급 이하 55명(45.1%)으로 나타났는데, 책임자급과 실무자들 간 적절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소속은 먼저 국가직에서 통일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통일부가 가장 많은 20명(16.4%)이고, 다음으로는 관료체제 관리기구인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가 각각 15명(12.3%), 14명(11.5%), 재정담당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법제담당 기관인 법제처가 동일하게 각 12명(9.8%), 법무부가 7명(5.7%), 국민권익위원회가 2명(1.6%)으로 총 82명(67.2%)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직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도 동일하게 각 20명(16.4%)으로 총 40명(32.8%)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설문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명	비율(%)	
성별	남	88	72.1	
	여	34	27.9	
근속기간	1~5년	23	18.9	
	6~10년	28	23.0	
	11~15년	22	18.0	
	16~20년	15	12.3	
	21년 이상	34	27.9	
직급	고위공무원단	1	0.8	
	과장급 관리자(3~4급)	27	22.1	
	계장급 관리자(4~5급)	36	29.5	
	일반관리직(6급 이하)	55	45.1	
	기타	3	2.5	
소속기관 합계	국가직	통일부	20	16.4
		행정자치부	15	12.3
		인사혁신처	14	11.5
		기획재정부	12	9.8
		법제처	12	9.8
		법무부	7	5.7
		국민권익위원회	2	1.6
	소 계	82	67.2	
	지방직	서울특별시	20	16.4
		울산광역시	20	16.4
		소 계	40	32.8
	총 계		122	100.0

* 매 측정항목의 백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기 때문에 합계에서는 100%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표)에서도 동일함.

2. 분석 결과

가. 북한관료 인수 및 검증

북한 정부로부터 인수한 북한관료들은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인수된 인원을 일괄 퇴직하게 한 후,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현직을 부여한 후 다시 검증을 거쳐 재임용하는 방법으로, 62명(50.8%)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하위관료는 원칙적으로 재임용하고, 중·상급 관료는 검증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자가 38명(31.1%)이었고, 인수된 인원을 일단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검증을 거쳐 사퇴 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자는 19명(15.6%)으로 나타났다.

<표 3> 북한관료 검증방식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인수된 인원을 일단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검증을 거쳐 사퇴나 재임용 여부를 결정	13	6	19
	10.7%	4.9%	15.6%
인수된 인원을 일괄 퇴직하게 한 후, 기초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현직을 부여한 후 다시 검증을 거쳐 재임용	40	22	62
	32.8%	18.0%	50.8%
직급별로 구분하여 하위관료는 원칙적으로 재임용하고, 중상급 관료는 검증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	28	10	38
	23.0%	8.2%	31.1%
기타	1	2	3
	0.8%	1.6%	2.5%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북한 출신 관료들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기관의 구성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로 61명(50.0%)이 응답하였고, 현재의 인사혁신처에 북한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한 자는 41명(33.6%)이었다. 다음으로는 총리실 소속의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가 16명(13.1%)이었으며 국회 소속의 인사위원회설치 의견과 고위직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인사위원회에서, 하위직은 인사혁신처의 인사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인사위원회는 강력한 리더십에, 인사혁신처에 북한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전문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표 4>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기관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현재의 인사혁신처에 북한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22	19	41
	18.0%	15.6%	33.6%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인사위원회의 설치	46	15	61
	37.7%	12.3%	50.0%
총리실 소속의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	12	4	16
	9.8%	3.3%	13.1%
기타	2	2	4
	1.6%	1.6%	3.3%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북한 출신 관료들의 과거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 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5>와 같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동료나 주민들의 객관적 증언을 통해서가 42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독일에서 이용하였던 구체적인 질문지를 통한 방법으로 40명(32.8%)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검찰이나 국정원 등 기관의 정보수집을 통해서가 26명(21.3%)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을 통해서 3명으로 비교적 효과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이러한 방법들을 혼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1명(9.0%)으로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방법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통일독일과 같이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27	13	40
	22.1%	10.7%	32.8%
동료나 주민들의 객관적 증언을 통하여	29	13	42
	23.8%	10.7%	34.4%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을 통해서	3	0	3
	2.5%	0%	2.5%
검찰과 국정원 등의 정보수집을 통해서	16	10	26
	13.1%	8.2%	21.3%
기타	7	4	11
	5.7%	3.3%	9.0%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북한 출신 관료의 업무능력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복수 응답 형식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 종합시험(종합적 검토)라고 응답한 수가 104명(75.8%)으로 가장 많았고, 면접시험이 20명(15.2%), 인사기록카드 검토가 9명(6.2%), 필기시험 2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북한 출신 관료들의 업무능력 검증방법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필기시험	2	0	2
	1.4%	0%	1.4%
면접시험	11	9	20
	9.0%	6.2%	15.2%
종합시험(종합적 검토)	68	36	104
	51.0%	24.8%	75.8%
인사기록카드 검토	7	2	9
	4.8%	1.4%	6.2%
기타	1	1	2
	0.7%	0.7%	1.4%
합계	97	48	145
	66.9%	33.1%	100.0%

나.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복직·신규채용에 관한 문제

북한 체제에서 파면되었거나 숙청되었던 관료들을 통일 후 복권·복직시키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복직 심사와 함께 재임용 심사를 같이하여 선별적으로 복권·복직시킨다는 의견이 99명(81.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단 복직시키고 다시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 또는 퇴직을 결정한다는 의견이 3명(4.1%), 복권은 시키되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11명(9.0%)로 나타났으며, 복권 및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7명(5.7%), 무조건 복권·복직시킨다는 의견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표 7> 북한관료 복권·복직문제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무조건 복권·복직시킴	0	0	0
	0%	0%	0%
일단 복직시키고 다시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 또는 퇴직 결정	2	3	3
	1.6%	2.5%	4.1%
복직 심사와 함께 재임용 심사를 같이하여 선별적으로 복권·복직	70	29	99
	57.4%	23.8%	81.1%
복권시키되 복직시키지는 않음	9	2	11
	7.4%	1.6%	9.0%
복권·복직시키지 않음	1	6	7
	0.8%	4.9%	5.7%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통일 한국의 관료체제 구축에는 북한의 기존 관료들의 재임용과 별도로 새로운 체제를 발전시켜나갈 북한 지역 젊은 인재들의 충원도 필요한데, 이러한 신규인력의 채용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이 끝나고 난 후,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의견이 7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북한관료들에 대한 검증과 병행해서 하자는 의견이 30명(24.60%)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통일 초기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은 18명(14.8%)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8> 북한지역 젊은 인재 충원의 적절시기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통일 초기부터	11	7	18
	9.0%	5.7%	14.8%
북한관료들에 대한 검증과정과 병행하여	22	8	30
	18.0%	6.6%	24.6%
북한관료들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이 끝나고 난 후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49	25	74
	40.2%	20.5%	60.7%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다.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통일 한국에서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많은 교육·훈련 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어떻게 설치·운영할 지에 관하여 질문에 대해 기존의 교육·훈련기관과는 별도로 북한관료 전문교육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68명(55.7%)이었고, 현재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확대 개편·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47명(38.5%), 대학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자는 의견이 4명(3.3%),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맡기자는 의견이 2명(1.6%) 있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에 비해 현재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크게 나타났다.

<표 9>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교육기관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현재의 중앙공무원교육원 확대 개편·운영	32	15	47
	26.2%	12.3%	38.5%
별도의 북한관료 전문교육원 설립·운영	45	23	68
	36.9%	18.9%	55.7%
대학기관에 위탁교육	2	2	4
	1.6%	1.6%	3.3%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	2	0	2
	1.6%	0%	1.6%
기타	1	0	1
	0.8%	0%	0.8%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라.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 및 처우문제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의 보수는 남한관료들과 대비하여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경제력 차이와 물가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3명(68.0%), 남한과 완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2명(18.0%), 남북지역 경제력 차이만큼 차별적으로 지급(북한 지역 출신의 보수를 낮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0명(8.2%), 북한관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제력 차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4.1%)으로 나타났다.

<표 10>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남북지역 경제력 차이만큼 차별적으로 지급	5	5	10
	4.1%	4.1%	8.2%
경제력 차이와 물가를 고려하여 지급	59	24	83
	48.4%	19.7%	68.0%
북한관료들의 사기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	3	2	5
	2.5%	1.6%	4.1%
남한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	13	9	22
	10.7%	7.4%	18.0%
기타	2	0	2
	1.6%	0%	1.6%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마. 남한관료의 파견·전출문제

북한 지역에 파견 또는 전출되는 남한관료들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남북 행정통합의 준비작업이 92명(75.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북한관료들에 대한 행정제도 및 업무처리방식 이전이 16명(13.1%), 남한 행정시스템의 북한 적용이 7명(5.7%)으로 나타났으며, 북한관료들에 대한 감시·감독에 1명(0.8%)의 응답자가 있었다.

<표 11> 북한지역 파견·전출될 남한관료의 역할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남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작업	62	30	92
	50.8	24.6	75.4
북한지역 주요 정책 수립	5	1	6
	4.1%	0.8%	4.9%
북한관료들에 대한 행정제도 및 업무처리 방식 이전	11	5	16
	9.0%	4.1%	13.1%
남한 행정시스템의 북한 적용	3	4	7
	2.5%	3.3%	5.7%
북한관료들에 대한 감독 및 지도	1	0	1
	0.8%	0%	0.8%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북한지역에 파견되는 남한관료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급여, 북한지역 생활비 지급 외 금전적 추가 보상과 함께 인사 평가에 가점 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81명(66.4%)이었고, 급여·북한지역 생활비 지급 외 금전적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한 인원은 31명(25.4%), 인사평가의 가점 부여와 급여 및 북한지역 생활비 지급이 각각 5명(4.1%)으로 나타났다.

<표 12> 북한지역 파견·전출 남한관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구 분	신분		합계
	국가직	지방직	
급여와 북한지역 생활비 지급	2	3	5
	1.6%	2.5%	4.1%
급여, 북한지역 생활비 지급 외 금전적 추가 보상	25	6	31
	20.5%	4.9%	25.4%
인사평가의 가점 부여	2	3	5
	1.6%	2.5%	4.1%
급여, 북한지역 생활비 지급 외 금전적 추가 보상과 함께 인사 평가에 가점부여	53	28	81
	43.4%	23.0%	66.4%
합계	82	40	122
	67.2%	32.8%	100.0%

3.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가.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인수 및 검증문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출신 관료들을 새로운 통일 한국 관료체제에서 인수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공무원집단 모두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와 같이 검증을 거쳐 선별적으로 인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집단에서 모두 북한 출신 관료들을 인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증하여 선별화된 인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을 위한 검증방식에 대해서는 기초심사를 거쳐 임시

적으로 현직을 부여한 후 다시 검증과정을 거쳐 재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직급별로 이원화하여 하위직은 원칙적으로 재임용하고 중·상위 직은 검증을 거쳐 재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 검증기관은 강력한 리더십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의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방법에 대해서는 동료나 주민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통해서와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 대등한 비율을 보였는데,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북한 출신 관료들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어느 한 가지 방식 보다는 필기, 면접, 인사기록카드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복직·신규채용에 대한 문제

북한 출신 관료들의 복직 및 재임용시의 북한 출신 관료들의 보임기준은 능력 검증 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적성에 맞는 기관으로 보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 지역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적절한 충원 시기는 북한 출신 관료들의 검증과 재임용이 끝나고 난 후 인력 수요를 고려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공무원들은 실용적이고 실무적 차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교육기관은 별도의 북한관료 전문교육원 설립에 가장 많은 동의를 보였고,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교육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업무능력이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념적 동조와 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직자로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라.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와 처우문제

통일독일이 그랬듯이 북한관료들에 대한 급여 수준은 경제력 차이와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관료들에 대한 남한관료들의 복지·후생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해 과반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해서도 남한관료들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 공직자 간 처우의 불평등은 조직의 안정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남한관료의 파견·전출문제

통일과정에서 남한관료들의 북한 지역 파견·전출의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북한지역 파견·전출 공무원들은 통일을 전·후로 나눌 때 통일 전에는 남북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임무가 가장 중요하지만, 통일 후에는 북한관료들에 대한 행정제도 및 업무처리방식과 같은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지역에 파견·전출되는 공무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보상의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급여와 북한지역 생활비와 같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인사평가에서의 가점부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파격적인 인센티브제의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V. 통일 이후 관료체제 구축방안

본 연구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 통일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체제 구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계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통일 한국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 및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중요 부분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일 한국의 관료체제 구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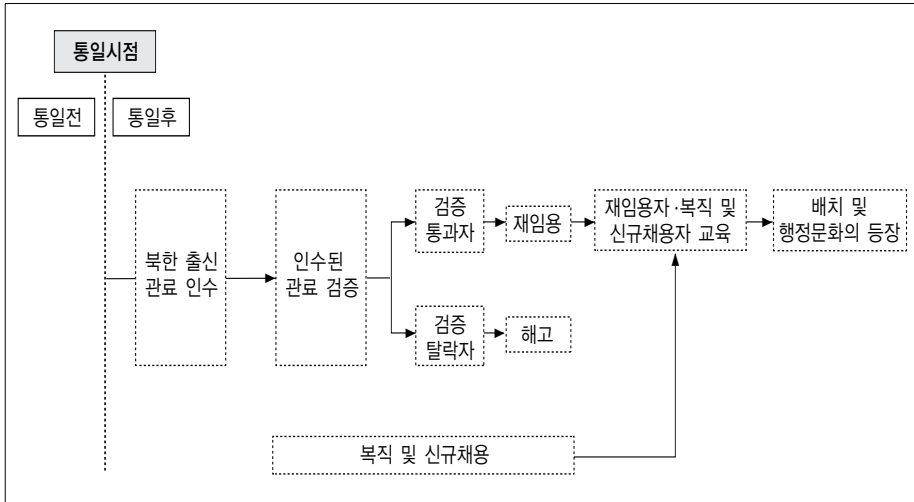
북한 출신 관료들이 인수된 이후에는 이들을 수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일 한국 관료체제 구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검증은 관료 개개인의 자질과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과거 북한정권 시기의 전력 등을 조사하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검증과 재임용은 통일 한국의 정부가 완벽하게 수행하기 극히 어려운 과업이다. 통일 한국 정부는 빠른 관료체제의 구축과 행정개혁을 위해 가능하면 북한에서 인수된 인력 중 많은 인력을 해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한국의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재임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출신 인력에 대한 검증 및 재임용 작업과 동시에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북한정권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해직당한 관료들의 복직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재임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출신 젊은이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통일의 의미에도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후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신규채용의 규모 및 방법 등은 그 시기와 당시 북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가능하면 미리 재임용 인력과 신규로 채용할 전체 인력 규모를 정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임용자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채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 복직, 신규채용 등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이들 인력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무사히 이수한 자들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함께 근무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후에도 이들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해 꾸준히 직무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북한 출신’ 또는 ‘남한 출신’이란 구별과 차별이 없어져 남북한 관료들이 제도적·문화적으로 동화되어야 한다. 즉 행정문화가 통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통일 후 관료체제 구축 과정



2. 통일한국 관료체제 구축방안

가.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및 검증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북한지역 관료들의 규모는 군인을 제외하고 약 150만 명으로 추측되지만, 이 인력규모는 정확하지는 않다. 아직까지 북한관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체제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이 통일정부에 인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일이 되면 통일 정부는 조기 퇴진하게 되는 일부 인력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북한 출신 관료들은 모두 인수하여야 할 것이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난 후에는 이들을 검증하고 재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인수 인력의 재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지역 출신 인력을 모두 해임한 후 적합한 검증절차를 통해 다시 재임용하는 방법과, 인수된 모든 인력을 일단 수용하고 잠정적으로 배치하여 검증을 통해 일부 인력을 재임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인수 인력을 해고하고 재검증을 통해 다시 임용하는 것은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된 인력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에 해고하는 것은 북한 출신 인력들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인력은 평양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료들이다. 통일이 되면 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자연스럽게 폐지가 될 것이고 이들의 소속기관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경우 지방행정기관보다 중앙행정기관의 인력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해임하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이들의 신분을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며, 남한 중앙행정기관의 북한으로의 이전, 통일된 북한지역의 특별행정기관 등의 설립이 대책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나. 인력의 재임용·복직·신규채용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되고 잠정적으로 배치되면 이들에 대한 검증과 재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재임용의 경우 대상자의 경력, 과거 이력, 인성 등에 대해 검증하여 이를 통과한 자에 대해 개인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근무처에 배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북한관료로 재직할 때 주민탄압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자, 부정부패 행위를 한 자는 무조건적으로 재임용서 탈락시킨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검증결과가 개인의 공식 생활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되므로 방법 및 절차, 검증지표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임용 여부에 관해 최종결정 시에는 각 부처의 기관장 및 조직의 여러 외부 인사들을 포함시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및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인권탄압으로 인해 해임이 되지 아니한 일반 인력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실업수당 및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 그 외 가족의료비,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 후에 재검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문제점은 북한 정권 당시에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임된 인력들이 통일 후에 통일 한국의 관료로 복직을 신청할 경우이다. 이 경우, 적합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해임된 자들에 대해서는 복직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잘못, 업무능력의 부족 및 부정부패 관여 등의 이유로 해임당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재임용이나 복직에 관한 작업에 못지않게 통일 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신규채용이다. 북한지역 내에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통일로 인해 혼잡한 북한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식의 세대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채용을 통해 시험 등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으

나 통일 직후에 이러한 방법 및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별채용’이나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지역할당제’, 각 학교나 기관 등에서 추천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을 인턴으로 임무수행 시킨 뒤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 인턴제’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신규채용의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지역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 및 복직작업도 실시되기 때문에 정부가 신규채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시기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 검증 작업이 일단 완료된 후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인사혁신처 같은 인사담당 부처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⁶

다. 교육훈련

북한지역 출신 관료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당과 수령 중심의 사상교육 및 정치적인 교육으로 훈련받기 때문에 통일 한국에서 재임용되거나 복직, 신규채용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통일 한국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유민주주의와 법 체제, 시장경제체제 등에 관한 기본교육과 배치된 업무에서 필요로 되는 전문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통일 한국의 행정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크게 교육시설과 교육 전문인력 양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 전문 인력양성의 경우 현재에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 후의 행정통합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목적의 명확성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 등

¹⁶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 기관인 국가보위부자료 조사위원회(가우크(Gauck)위원회)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검증 대상자들의 과거 경력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복직의 경우에도 구동독 시절에 억울하게 퇴직당한 자들이 신청하였는데 이 역시 검증을 통해 선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북한지역 출신 관료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에 대해 정부·민간 영역에서 많이 양성해야 한다. 더불어 교수요원의 양성과 함께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및 방법 등의 개발 역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

라. 북한 출신 관료의 보수 및 처우

통일 후의 관료체제 구축에 있어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보수이다. 보수는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인력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관료들에 대한 보수의 적용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북한지역 출신 관료들에 대한 연금 지급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독일 역시 보수나 처우 등에 관련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통일 이후 동서독 관료 간 동일 직급이면 동일 급여가 원칙이었지만, 동서독의 지역 간 경제적 차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이에 물가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구동독 지역 관료들에게 구서독 지역 관료들 보수의 60% 수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점점 구동독 지역의 경제가 안정되고 물가가 상승됨에 따라 보수 수준을 높여나갔다.

우리의 경우도 처음에도 북한의 경제상황, 물가 등을 고려하여 남북 간 차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그 수준은 통일 당시 통일국가의 경제사정,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통일한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남북한 관료들 간에 보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마. 남한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전출

통일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전 동독체제의 붕괴로 인해 서독 관료들이 동독 지역으로 파견·전출되었다. 이들의 경우 동독 정부의 요청 하에 통일에 대비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통일 전의 구성 인력들은 대개 퇴직 관료나 퇴직 변호사 등으로 자문 역할을 이행하였으며, 통일 후에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직에 있는 관료들도 파견되었다. 이러한 인력 지원은 구동독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으며, 이에 따른 관료들에 대한 대우 및 보수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하였다. 이로 인해 행정인력의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한관료들의 북한지역 파견 및 진출은 통일 전후의 남북한 체제통합 및 북한의 재건을 위해 인력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통일이 된 후 즉시 남한에서 선발된 관료들이 북한지역으로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북한지역 내의 여러 행정기관에서 체제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들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파견·전출된 인력들에 대하여 신변보호, 치안, 인센티브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발을 할 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가능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보수나 권한의 차이로 인해 북한지역 출신관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VI. 결론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들 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자 번영을 추구하는 길이다. 또한 약 7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남북 분단체제 하에서 전쟁이라는 불안감을 없애고 평화를 이룩함으로써 진정한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국민들의 염원 및 국가의 일시적인 정책으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의지와 국가의 모든 능력을 집약해서 추진할 과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생각하여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일 이후의 관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재건과 남북 행정통합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양 지역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차적인 부분에는 국가 즉,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통일 한국 정부는 과거에 비해 효율적·효과적이어야 하며, 통일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체제에서 근무했던 관료들을 인수하여 통일 한국의 직업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통일정부는 남북의 관료를 통합하여 단일의 관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 북한관료의 인수, 검증, 재임용, 복직, 신규채용, 교육훈련, 보수체계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 접수: 5월 2일 ■ 심사: 5월 16일 ■ 채택: 5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4.
- 박응격.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정부 인력관리의 과제와 대책』.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5.
- 박형중·전현준·박영자·윤철기.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북한행정론』. 경기: 지구문화사, 2012.
- 양현모. 『독일통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행정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997.
- _____.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 _____.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4.
- 이종수 외.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14.
- 정재각·심익섭·이승철.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 서울: 대영문화사, 2013.
- 최진욱. 『북한의 인사행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 통일부.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독일통일 총서2, 행정분야 통합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2013.
-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 실태 보고서(III): 독일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보고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9.
- 한부영·김병국.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Ahn, Jiho. *Vergleichsstudie über die Verwaltung zwischen der BRD und der DDR: Zusammenhang zwischen Verwaltungssystem und Mentalität von Verwaltungstätigen*. Diss. Berlin, 2010.

König, Klaus/Meßmann, Volker. *Organisation-undPersonalprobleme der Verwaltungstransformation in Deutschland*. Baden-Baden, 1995.

Loverd, R. A. and Pavlak, T. J. Analyz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merican civil service, Rabin, Jack et al.(eds.). *Handbook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Inc, 1995.

Robbins, S. P. *Organizational Behavior(3rd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6.

2. 논문

- 박해육. “통일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력통합의 모색.” 『한국행정연구』. 제11권 제4호, 2002.
- 최진욱. “북한의 인사행정제도 원칙, 기준, 운영실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2.

Abstract

A Study of Establishing the Government's Bureaucratic System of a Reunified Korea

Jun-Ho Lee and Hyun-Mo Yang

This study propose directions and details for establishing the bureaucratic system after reunification. It anticipat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ureaucratic and suggests its method.

As for the specific details, the study includes methods to absorb and verify North Korean bureaucrats, methods for reappointment, reinstatement, recruitment, methods of education-training, methods for wage levels, and methods of integrating the administrative cultures after reunification.

The study predicts what the reunified bureaucratic system will look like after unification by analyzing studies and implications of Germany's reunification cas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Korea's bureaucratic systems, interviews and surveys from public officials.

Key Words: Reunified Korea, Bureaucratic System, Verification of Bureaucrat, Reappointment, Recruit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7 분단 70년 남북한 통일정책 및 통일담론 평가	허문영 외	13,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중합요약보고서)	전병근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중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글을 주실 분들께】

「통일정책연구」는 통일연구원에서 연 2회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북한의 실태, 한반도의 주변정세, 통일정책에 관한 논문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통일정책연구」 심사위원의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편집방향과 편집기준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집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원고는 반드시 본 연구원의 '원고 집필요령'을 참고하여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서 <http://kinu.jams.or.kr> 회원 가입 후,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지불합니다.

<원고 접수>

※ 원고제출은 <http://kinu.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우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편집위원회

Tel: (02) 2023-8037(간사)

(02) 2023-8000(대표)

Fax: (02) 2023-8298

E-mail: kinups@kinu.or.kr

Homepage: <http://www.kinu.or.kr>

<http://kinu.jams.or.kr>

【원고집필 요령】

1.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정도로 한다.
2. 200단어 정도의 국·영문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s), 영문제목과 영문이름을 반드시 첨부·제출해야 한다.
3. 본문은 순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 속에 기재한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 예에 따른다.

예) II, 2, 나, (2), (나), 2)

5.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쓰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1) 저서:

김 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100.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15.

(2) 논문: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p. 135.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3 (September 1965), pp. 627~640.

(3) 신문:

The Korea Times, May 18, 1999.

『한겨레신문』, 1999년 5월 18일.

(4) 인터넷 자료:

<www.kinu.or.kr/elec_lib/library.html> (검색일: 2002.1.15)

6. 앞에서 인용한 저서·논문을 재차 인용할 경우

(1) 저서: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위의 책, p. 102.

Ibid., p. 22.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니며 앞에서 인용한 경우>

김 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p. 10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 15.

(2) 논문:

<바로 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위의 글, p. 137.

Ibid., p. 629.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니며 앞에서 인용한 경우>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p. 137.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p. 635.

(3) 신문:

위의 신문, 1999년 5월 18일.

Ibid., December 25,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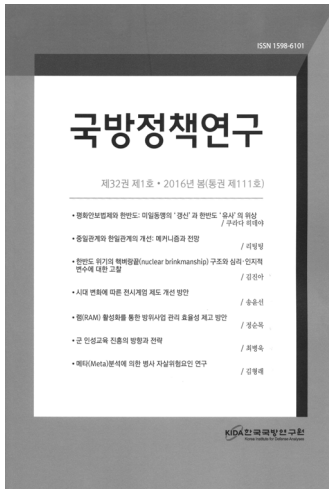
(4) 인터넷 자료:

위의 인터넷 자료

Ibid.

7.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각주와 같다. 출처와 각주가 반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에 따른다.
8.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 2016년

봄(통권 제111호)

- 평화안보법제와 한반도: 미일동맹의 '갱신'과 한반도 '유사'의 위상 / 쿠라다 히데야
-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개선: 메커니즘과 전망 / 리팅팅
- 한반도 위기의 핵벼랑끝(nuclear brinkmanship) 구조와 심리·인지적 변수에 대한 고찰 / 김진아
- 시대 변화에 따른 전시계엄 제도 개선 방안 / 송운선
- 램(RAM) 활성화를 통한 방위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 정순목
- 군 인성교육 진흥의 방향과 전략 / 최병욱
- 메타(Meta)분석에 의한 병사 자살위험요인 연구 / 김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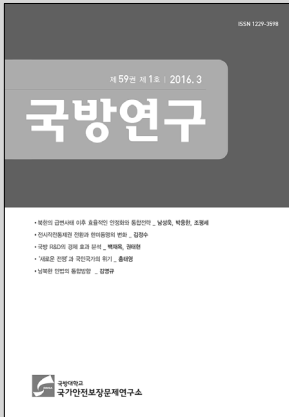
■ 투고를 환영합니다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문학술지로서 2008년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 A.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 B.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 보내실 곳: 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
주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우체국 사서함 250호(우편번호: 130-650)
E-mail: jdps@kida.re.kr 전화: 02)961-1291 팩스: 02)961-1171

국 방 연 구



『국방연구』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연4회 발간하는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국가안보, 남북관계, 통일, 국방 및 군비통제, 주요국과의 관계 및 주요국의 정책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59권 제1호, 2015년 □

-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효율적인 안정화와 통합전략 / 남성욱, 박용한, 조평세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변화 / 김정수
- 국방 R&D의 경제 효과 분석 / 백재욱, 권태현
- ‘새로운 전쟁’과 국민국가의 위기 / 홍태영
-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 김영규

『국방연구』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시사성 및 학술성을 갖춘 논문으로 순수 창작물이 아닐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이 없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150매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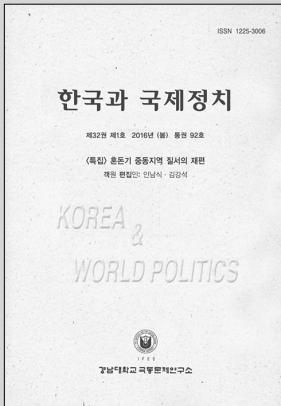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kndu.ac.kr/rinsa> 국방연구 원고모집 공고

보내실곳: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rinsa.jams.or.kr>)으로 제출

전화: (02) 300-4241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학계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기대합니다.

▣ 제32권 제1호, 2016년(봄) 통권 92호 ▣

- 내부 정체성 갈등과 외부 개입의 정치: 중동 민주주의 발전의 근원적 불안정성 고찰 / 김강석
- 『야만의 경영』을 넘어: IS의 이슬람국가와 지하드 / 박현도
-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 황지환
-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 이신화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두 국가 해결론(Two-State Solution)’에 대한 고찰 / 안승훈
-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결정요인과 전개방향 / 유흥태·한인택
- 미국과 러시아의 대(對)중동정책 변화 고찰: 오바마와 푸틴 정부의 지정학적 중동전략을 중심으로 / 인남식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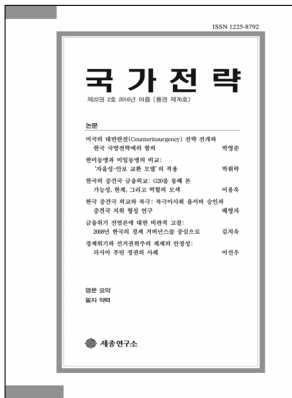
-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2 (김혜경)
이메일 접수: ifes@kyungnam.ac.kr

『국 가 전 략』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정책지향성을 지닌 심사제 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2002년 12월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국가전략』을 보아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제22권 2호 2016년 여름호 (통권 제76호) ▣

【논문】



- 미국의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전략 전개와 한국 국방 전략에의 함의 / 박영준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 박휘락
- 한국의 중견국 금융외교: G20을 통해 본 가능성, 한계, 그리고 역할의 모색 / 이용욱
- 한국 중견국 외교와 북극: 북극이사회 옵서버 승인과 중견국 지위 형성 연구 / 배영자
- 금융위기 전염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8년 한국의 경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김치욱
- 경제위기와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 러시아 푸틴 정권의 사례 / 이선우

『국가전략』 원고 공모

-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내외의 길이로 제출하되, 어떤 경우에도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 요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휴대폰·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4,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For over 20 years, KIN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ISSN 1229-6902) has allowed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information among scholars and experts at home and abroad, sharing knowledge and perspectives on North Korea,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ssu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s of January 1, 2009, the Journal welcomes submission of manuscripts relevant to the issues of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Northeast Asian security,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tc.

Submission of a paper will be held to imply that it contains original unpublished work and is not being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l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are subject to review by relevant experts in the field before they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We provide honorarium for the articles that have been chosen for publication.

American-English should be used as a standard format, manuscripts should be double-spaced and footnoted with a full list of bibliography quoted throughout the footnotes. The length required for articles should be 6,000-10,000 words in 12-font size, using Microsoft Word only. The deadlines for manuscript submission are March 31 for the summer issue and September 30 for the winter issue.

Vol. 25, No. 1 (2016)

Feature Theme:

North Korea's Four Year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and its Prospects

Economic Reform during the First Four Years of Kim Jong-un's Rule:
An Analysis Based on the CRE Model *Rudiger Frank*

North Korean Political Dynamics of the Kim Jong-un Era
Ken E. Ga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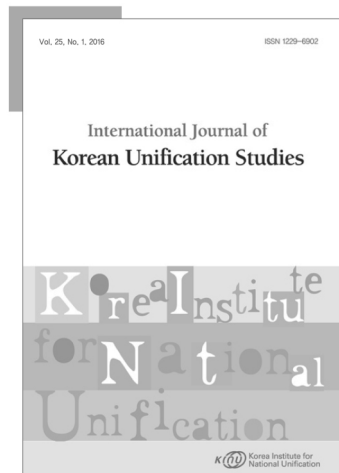
Why Did We Get China Wrong? Reconsidering the Popular
Narrative: China will abandon North Korea *Seong-Hyon Lee*

China's Evolving Nuclear Strategy and its Consistency with the
Chinese Leadership's Perception of Minimum Deterrence
Zafar Khan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the Determinants of its Stabilization
Yong Han Park, Sung Wook Nam, and Yoo Suk Jung

An Uncertain Future for the Russia-DPRK "Rajin-Khasan" Project
Oleg Kiriyanov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 In-depth Study 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s Economic
Clauses and the Economic Reality
In-Ho Song, Hye-Shin Cho, and Euna Lee



Please send your manuscripts or inquiries to the e-mail address listed be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17, Banpo-daero(Banpo-dong) Seocho-gu, Seoul 06578, Korea

(Tel) (82-2) 2023-8038 (Fax) (82-2) 2023-8298

(E-Mail) kinujournal@kinu.or.kr (Webpage) <http://www.kinu.or.kr/eng>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통일연구원 www.kinu.or.kr